Contents

'24년 해양수산사업(도비 보조) 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 3
조 례 ····· 11

해양수산과 소관

1. 수산전문지 보급 ····· 29
2.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활성화사업 ····· 31
3.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촉진 ····· 35
4. 오징어 부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 39
5.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전환) ····· 43
6. 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 지원 ····· 51
7.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 ····· 57
8. 수산물 해외 규격인증 지원 ····· 61
9. 우수 수산물 육성사업(전환) ····· 65
10. 수산물 공동작업장 폐수처리시설 개보수 ····· 69
11. 어서옵쇼 수산물 할인행사(시군보조) ····· 73
12. 어서옵쇼 수산물 할인행사(도직접) ····· 77
13. 죽변항 청정해수 공급시설 지원 ····· 81
14. 수산물 이커머스 지원 ····· 85
15. 로하스 농공단지 해수공급 ····· 88
16. 수산물 방사능 검사 지원 ····· 92
17. 활어위판장 냉각해수 공급시설 설치 ····· 94
18. 현포어촌계 수산물 직거래 판매장 건립 ····· 98
19. 울릉군수협 냉동공장 개보수 공사 지원 ····· 102
20. 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사업(전환) ····· 106
21.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 112
22. 양식장 첨단 기자재 공급 ····· 121
23. 수산재해 예방 및 방제비 지원 ····· 128
24. 연안해조장 조성 ····· 131
25. 마을어장 관리사업 ····· 136
26. 수산종자 매입방류(전환) ····· 143
27. 동해안 해삼양식산업 육성(전환) ····· 147
28. 동해대게 자원회복 사업(전환) ····· 153
29. 내수면 토속어류 보호사업 ····· 159

30. 내수면 어선장비지원사업 ····· 162
31. 마을어장 수산자원지킴이 지원 ····· 168
32. 양식어가 종자대 지원 ····· 175
33. 양식장시설 현대화 사업 ····· 180
34.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 186
35. 마을어장 안전장비 지원 ····· 193
36. 어선장비 지원 ····· 196
37. 어선부력판 설치 지원 ····· 204
38.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 ····· 211
39. 어선(원)보험료 지원 ····· 218
40.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 227
41. 어업용 유류비 지원 ····· 236
42. 해난사고 구조동원 어선지원 ····· 241
43. 대게 불법어업 민간감시선 운영 ····· 247
44. 대게어장 환경정비 ····· 252
45. 외국인선원 숙소 지원 ····· 263
46. 외국인선원 도입비용 지원 ····· 268
47. 연근해어선 상가 유류비 지원 ····· 271
48. 조건불리 도서지역 어선 엔진개방검사 비용 지원 ····· 274
49. 어선 폐선처리 지원 ····· 279
50. 다목적인양기 설치(전환) ····· 286
51. 지방어항시설 ····· 290
52. 소규모어항시설 ····· 296
53. 지방어항 안전시설 및 유지관리지원 ····· 302

독도해양정책과 소관

1.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 311
2.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 318

해양레저관광과 소관

1. 어촌 체험마을 육성 ····· 333
2. 어촌 전통문화 계승 ····· 338

‘24년 해양수산사업(도비 보조) 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세부 사업명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양식장 첨단 기자재 공급사업	3. 사업개요 나. 사업내용 : 내수면·해수면 양식, 정치성 어장 기자재, 어장 표시등, 액화산소 구입비 - 내수면·해수면 양식장 기자재,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 양식물 양승기, 로프, 종자대(우렁쉥이에 한함), 양식어업용 장비 등(인증부표 지원 제외)	3. 사업개요 나. 사업내용 : 내수면·해수면 양식, 정치성 어장 기자재, **자동화장비**, 어장 표시등, 액화산소 구입비 - 내수면·해수면 양식장 기자재,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 **자동화장비(사료혼합기, 사료자동급이기, 수온조절기 등)** 양식물 양승기, 로프, **<삭제>**, 양식어업용 장비 등(인증부표 지원 제외)	○ 양식장 첨단 기자재 공급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됨으로써 지원품목 확대
	라. 지원규모 - 내수면~액화산소~	라. 지원규모 - 내수면~ - **<신설> 자동화장비 : 개소당 1,000천원**	○ 자동화장비 지원을 통한 양식장 첨단 시설 기반 정비 강화
	5. 사업시행 마. 지원대상 - 내수면·해수면 양식장 기자재~	5. 사업시행 마. 지원대상 - 내수면·해수면 양식장 기자재, 양식물 양승기, 로프, 액화산소, **자동화장비** 등 양식기자재~	○ 양식어가 종자대 지원사업 내용과 중복되는 품목(종자대) 지원 내용 삭제

세부 사업명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양식장 첨단 기자재 공급사업	바.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 사업자 선정 이후~ - 당해연도 종자대를 지원 받은 후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지원 제외 - 당해연도 종자대를 지원받은 후 가이식 기간 중 사업권 이전 승계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5년간 지원 제외 7. 설치 및 사업비 정산 다. 종자대는 종자구입 양식 어업인이~	바.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 사업자 선정 이후~ **- <삭제>** **- <삭제>** 7. 설치 및 사업비 정산 **다. <삭제>**	
내수면 어선장비 지원사업	5. 사업시행 다. 우선순위 (1) 본인 명의로 어선 소유기간이 오래된 자, 동일 순위자인 경우 선령이 오래된 어선을 소유한 자로 한다. (2) 시장·군수가 필요시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마.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비 한도는 척당 10백만원으로 하며, 초과되는 금액은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5. 사업시행 다. 우선순위 **(1) <신설> 호우, 태풍 등에 의한 피해로 어선 기관 교체가 필요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2) 본인 명의로 어선 소유기간이 오래된 자, 동일 순위자인 경우 선령이 오래된 어선을 소유한 자로 한다. (3) 시장·군수가 필요시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마.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비 한도는 척당 10백만원으로 하며, 초과되는 금액은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단, 선외기의 사업비 한도는 마력당 15만원으로 한다)**	○ 내수면 호우 피해 발생으로 인한 기관 교체 어선 증가로 인해 한시적으로 피해 어업인 사업자 우선 선정 ○ 어업인 선호도가 높은 어선장비인 선외기 지원을 마력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지원 기준 명확화

세부 사업명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양식장시설 현대화사업	3. 사업개요 나. 사업내용: 저층(수심 15m 이상) 해수 취수라인 시설 및 보수, 냉각기, 이상수온 경보시스템, 비상발전기. 단,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저층해수 취수라인 수심을 13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냉각기의 경우 전기설비·용량증설·공사비는 냉각기 구입비의 30%이하 범위 내 지원 - 비상발전기의 경우 총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저층 해수취수라인 시설(보수)하는 경우 기계실, 전기설비 증설, 고가수조 설치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5. 사업시행 라. 사업추진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예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3. 사업개요 나. 사업내용 : (동일) - 냉각기의 경우 (동일) - 비상발전기의 경우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저층 해수취수라인 ~(동일) 5. 사업시행 라. 사업추진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저층해수취수라인 시설 및 보수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외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예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어업인 수요가 많은 비상발전기 지원확대 ○ 저층해수취수라인 시설 및 보수하려는 어업인을 우선 선정하여, 수산재해 예방 및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기여

세부 사업명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어선장비지원, 어선부력판 설치지원 소형어선안전 관리지원 대게불법 어업민간 감시선운영 어선폐선 처리지원	5. 사업시행 주요내용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폐선을 방치하고 있는 자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감척대상어선(사업대상자 선정)에 설치할 목적으로 사업 신청한 자	5. 사업시행 주요내용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어업 허가 등을 받아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 ○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삭제)**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감척대상 어선(사업대상자 선정) **또는 「어선법」 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별도 행정처분 규정이 있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포함을 위함 ○ 별도 과태료 규정이 있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포함을 위함 ○ 다음 조항에 포함 ○ 해양수산부 지침 준용

세부 사업명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어선(원) 보험료지원 어업용 유류비 지원 어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	5. 사업시행 주요내용 마. 제외대상 4)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5)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6) 어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폐선을 방치하고 있는 자	5. 사업시행 주요내용 마. 제외대상 4)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어업 허가 등을 받아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 5)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6)**「어선법」 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별도 행정처분 규정이 있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포함을 위함 ○ 별도 과태료 규정이 있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포함을 위함 ○ 해양수산부 지침 준용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제외)

<table>
<tr><th>세부 사업명</th><th>현 행</th><th>개 정(안)</th><th>개 정 사 유</th></tr>
<tr><td>어선장비지원</td><td>[별표 제1호] 어선장비 지원 품목 및 한도
□ 어선 안전조업장비
<table><tr><th>지원품목</th><th>사업비 지원한도</th><th>비 고</th></tr><tr><td>EPIRB(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td><td>1,100천원/척</td><td></td></tr><tr><td>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td><td>350천원/기관실 방호면적 8㎡당</td><td rowspan="3">수협 어업용기자재 실 구매단가 적용 가능</td></tr><tr><td>구명조끼(팽창식)</td><td>132천원/벌(어선 최대 승선인원 범위 내)</td></tr></table></td><td>[별표 제1호] 어선장비 지원 품목 및 한도
□ 어선 안전조업장비
<table><tr><th>지원품목</th><th>사업비 지원한도</th><th>비 고</th></tr><tr><td>EPIRB(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td><td>1,100천원/척</td><td></td></tr><tr><td><u>스티커형 소공간용 소화용구</u></td><td><u>75천원/개</u></td><td><u>65L</u></td></tr><tr><td>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td><td>350천원/기관실 방호면적 8㎡당</td><td rowspan="2">수협 어업용기자재 실 구매단가 적용 가능</td></tr><tr><td>구명조끼(팽창식)</td><td>132천원/벌(어선 최대 승선인원 범위 내)</td></tr></table></td><td>○ 화재 소화용 패치 추가하되 형식 승인 완료한 65L 제품 한하여 지원</td></tr>
<tr><td>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td><td>6. 추진체계
라. 사업비의 집행
1) 사업비라 함은 사업자 등록을 필한 조선소에서 어선의 상가대 인양, 세척, 도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보조금은 톤급별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율에 따라 지원하되, 초과되는 금액은 사업자가 부담함</td><td>6. 추진체계
라. 사업비의 집행
1) 사업비라 함은 사업자 등록을 필한 조선소에서 어선의 상가대 인양, 세척, 도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보조금은 <u>척당 지원 한도</u> 내에서 지원율에 따라 지원하되, 초과 금액은 사업자가 부담함</td><td>○ 지원한도(1,400천원/척)에 맞추어 문구 수정</td></tr>
<tr><td>대게어장 환경정비</td><td>5. 사업시행 주요내용
마. 사업비 집행기준
○ 활동비(1척당 1일(8시간) 기준)
- 3톤 이상 5톤 미만 : 97만원/척
- 5톤 이상 7톤 미만 : 122만원/척
- 7톤 이상 10톤 미만 : 139만원/척</td><td>5. 사업시행 주요내용
마. 사업비 집행기준
○ 활동비(1척당 1일(8시간), <u>작업인원 2명 기준</u>)
- 3톤 이상 5톤 미만 : <u>112만원/척</u>
- 5톤 이상 7톤 미만 : <u>133만원/척</u>
- 7톤 이상 10톤 미만 : <u>172만원/척</u></td><td>○ 어선 활동비 산출내역에 2인 기준을 명시하고 2023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선원) 및 유류 평균 금액 적용</td></tr>
</table>

<table>
<tr><th>세부 사업명</th><th>현 행</th><th>개 정(안)</th><th>개 정 사 유</th></tr>
<tr><td>해난사고
구조동원어선
지원</td><td>5. 사업계획
가. 지원대상 : 경상북도 해상에서 발생한 도내 선적어선의 해난사고 구호활동에 참여한 어선의 소유자
마. 제외대상
○ 구조된 어선의 선주, 선장, 선원 등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한 자
○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td><td>5. 사업계획
가. 지원대상 : 경상북도 해상에서 발생한 <u>연근해</u>어선 사고 구호 활동에 참여한 어선의 소유자
마. 제외대상
○ 구조된 어선의 선주, 선장, 선원 등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한 자
○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ㅇ <u>조난된 물건을 가져간 자</u></td><td>○ 수상구조법 제19조 및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난구호비용 지급 대상 확대(조난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활동 관할 시 지급)

○ 수상구조법 제39조 적용</td></tr>
<tr><td>어선(원)보험
료 지원</td><td>5. 사업시행 주요 내용
라. 지원 기준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4">어 선 원(톤급)</th></tr><tr><th>10톤 미만</th><th>10~30톤 미만</th><th>30~50톤 미만</th><th>50톤 이상</th></tr><tr><td>지원기준</td><td>40%</td><td>25%</td><td>20%</td><td>10%</td></tr></table><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어 선(톤급)</th></tr><tr><th>10톤 미만</th><th>10~20톤 미만</th><th>20톤 이상</th></tr><tr><td>지원기준</td><td>25%</td><td>20%</td><td>10%</td></tr></table></td><td>5. 사업시행 주요 내용
라. 지원 기준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4">어 선 원(톤급)</th></tr><tr><th>10톤 미만</th><th>10~30톤 미만</th><th>30~50톤 미만</th><th>50톤 이상</th></tr><tr><td>지원기준</td><td><u>42%</u></td><td>25%</td><td>20%</td><td>10%</td></tr></table><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어 선(톤급)</th></tr><tr><th>10톤 미만</th><th>10~20톤 미만</th><th>20톤 이상</th></tr><tr><td>지원기준</td><td><u>28%</u></td><td>20%</td><td>10%</td></tr></table></td><td>○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연안어선 어업인의 어선(원) 보험료 지원 증액을 통한 어업 경영 부담 완화</td></tr>
</table>

세부 사업명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어선 폐선 처리지원	5.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도내 연안 시·군에 어선(10톤 미만)등록을 필하고, 선적항이 사업 집행주체 관할 시·군에 등록된 자 라. 지원한도 : 톤당 1백만원(어선등록원부상 톤수) ※ 시군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6. 추진체계 2) 사업 집행주체는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그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 후 사업자를 선정함	5.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도내 연안 시·군에 어선**(삭제)**을 등록한 자 라. 지원한도 : **톤당 1,200천원**(어선등록원부상 톤수) ※ 시군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6. 추진체계 2) 사업 집행주체는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그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 후 사업자를 선정함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신청어선의 톤수가 작은 어업인 (동 순위일 경우, 신청어선의 선령이 높은 어업인 우선)** **※ 시·군 자체 실정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 조정·추가 가능**	○ 톤수 제한 삭제를 통한 근해어선 폐선 수요 인정 ○ 폐선 처리비용 현실 단가 적용 ○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장기 방치 소형어선 폐선 우선 유도를 위한 선정 순위 추가

조 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1. 12. 30.] (전부개정)2021-12-30 조례 제 4612호

경상북도(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등)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 시 적용하는 지방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은 3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및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예외 조치)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도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지방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도지사는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도지사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도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도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5. 신고인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6.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7. 신고인등이 신고 또는 고발한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 ① 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은 도비재원으로 한정한다.

② 신고인등이 제8조에 따라 도 외의 다른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결정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사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 심의) ①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은 제13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고인등의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여부

2. 포상금 지급 금액 및 산정기준

3.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고인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신고포상금의 환수)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간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농축산유통국장

2. 민간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 및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 또는 지방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23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3년 2월 9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신설 2014.12.29.>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경상북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경상북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를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도지사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표 2> <신설 2014.12.29.>

분 야	운 영 내 용	배 점
사업계획 (15)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10 5
사업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5 15 5 -20
사업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40 20

20 . . .

□□□ 국장(과장) ○○○ (서명)

※ 각 분야의 운영내용 및 배점은 분야별 총배점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등급 예시)

: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90점 미만~80점)/ 보통(80점 미만~60점)/ 미흡(60점 미만~50점)/ 매우 미흡(50점 미만)

-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3년 단위 유지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점기준을 정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4.12.29.>

경상북도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등록 내용		등록기관		
	등록일자 및 번 호		회 원 수		
	주 요 활 동 실 적				

신청현황	신청분야	신 청 사 업 명	사 업 추 진 재 원(천원)			
			계	자부담	도비보조	기부금 등
	계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대표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보조사업 신청계획서 1부.
3. 단체활동계획 1부(구체적으로 별도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4.12.29.>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연 락 처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단체연혁	•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경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년도 :　　20○○년도 :　　20○○년도 : ※ 3년평균 지원액 :
주요사업 실 적	• • • • •

※ 작성분량 : 1쪽으로 작성(규격 통일)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4.12.29.>

보조신청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취지) :

□ 사업(행사)개요 :

□ 추진계획 :

※ 추진기간 및 내용 등 명시

□ 사업기대효과 :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천원)

항 목(내용)	총사업비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도비보조	자 부 담	그 밖 의 기부금 등	
계					

※ 항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4.12.29.>

경상북도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

※ 기간, 장소, 사업량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금액 및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도비보조	자 부 담	그 밖의 기부금 등			산 출 기 초
				소계	기(부)금	그 밖의 비 용	
계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인)

소재지

대표자

예금(클린카드)계좌번호 (○○은행)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지원신청서 제출후 변경사항 등 구체적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4.12.29.>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4.12.29.>

보조사업 관리카드

□ 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1×-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교부세(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연도별 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 보조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해양수산과

01 수산전문지 보급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오명호 주무관 현준우	054-880-7710 054-880-7718 054-880-7720

1. 사업목적

○ 어업 여건상 각종 보도매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어업인들에게 수산전문지 보급

○ 어업신기술 및 경영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해양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2. 추진방향

○ 어업신기술 전파·보급으로 전문 어업 인력 육성

○ 어업경영 정보를 신속히 제공 수산물 유통 활성화

3.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 93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4. 사업추진계획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대 상 자 :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및 업계 지도자 등

다. 우선순위 : ①수산업경영인 ②어촌계장 ③수산단체 및 협회 ④기타 어업인 등

라. 지원조건(지원기준 : 도비 30%, 시군비 70%)

○ 지 원 액 : 247,440천원(도비 74,232, 시군비 173,208)

○ 지원단가 : 월 7,500원(주 1회 발행) (※ 수산전문지 : 한국수산경제신문)

마. 2024년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명)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계	2,750	247,440	74,232	173,208	
포항시	1,000	90,000	27,000	63,000	
경주시	223	20,070	6,021	14,049	
안동시	33	2,970	891	2,079	
영덕군	667	60,000	18,000	42,000	
울진군	640	57,600	17,280	40,320	
울릉군	187	16,800	5,040	11,760	

5. 사업비 집행

○ 사업집행 주체는 보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수산전문지 업체와 계약할 수 있다.

○ 사업집행주체는 신문사 수산전문지 보급 업체로부터 분기별로 사업비를 정산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6.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 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예산회계 관련 법률 등의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7. 사업의 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신문보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관리감독(2중 구독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업집행 관리상 필요한 세부 사항이 있을 시는 사업집행 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8. 행정사항

○ 정산보고 철저

02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활성화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오명호 주무관 서영주	054-880-7710 054-880-7718 054-880-7719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동해안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 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 활성화

2. 추진방향

○ 영덕군 로하스 수산식품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수산가공식품을 제조·가공 생산한 업체에 대하여 지원

○ 고부가 수산식품개발, 가공 및 상품화를 통해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활성화

3. 근거법령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

4. 사업추진계획

가. 집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나. 지원대상자

○ 영덕군내 수산가공식품을 생산 또는 수출하는 업체

○ 영덕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자체 개발사업

○ 영덕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산·학·연 공동연구 또는 개발사업

다.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등

○ 사 업 비 : 133,000천원(도비 40,000천원, 군비 93,000천원)

○ 지원내용

(1) 신제품 제작비 지원

① 글로벌 K-Seafood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산물 신제품 개발

②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이전

③ 제품 효능 및 소비자 인식 향상을 위한 지원

(2) 인증 지원

①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성분 및 안전성 분석

② 소재 및 제품의 효능 검증을 위한 효능평가 지원

③ 원료 및 제품의 안전성 및 효능평가, 식품위생검사 분석 지원

④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신뢰성, 성능, 규격, 표준화 등 제품경쟁력 확보 지원

(3) 특허출원·등록

①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특허 등록지원

② 원천기술로 기술경쟁력확보를 위한 지원

③ 개발된 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등록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유망상품의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④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신뢰성, 성능, 규격, 표준화 등 제품경쟁력 확보지원

(4) 마케팅 지원

① 기업들의 우수 유망상품의 홍보를 위해 브로슈어, BI, CI 등을 제작하여 마케팅 지원

② 마케팅을 위한 각종 기업 및 제품 설명자료 제작지원

(5) 홍보제작 지원

① 기업들의 우수 유망상품의 홍보를 위해 기업의 홈페이지 제작과 신문, 매체 등 광고 제작지원

②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 지원

(6) 현장기술지도 및 컨설팅 지원

① 기업 애로 및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② 기업의 부족한 기술을 자문지도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③ 기술 및 제품화를 위한 신규기술 도입 및 개선을 위한 적합성 및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기술 및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7) 기타

① 영덕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R&D 시설 및 연구개발·운영비

②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사업

③ 컨설팅, R&D, 제품개발 및 브랜드 개발 등 사업수행기관사업 프로그램에 따른 사업비

5.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 법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업대상자는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도 또는 당해 자치단체장(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6.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 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예산회계 관련 법률 등의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7. 사업의 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업집행 관리상 필요한 세부사항이 있을 시는 사업집행 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서식 1 ≫

사업성과 보고

1. 사 업 명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활성화사업	
2. 사 업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3. 사 업 비	사업비 000백만원(도비 000, 시군비 000, 자부담 000)	
4. 집 행 액	사업비 000백만원(도비 000, 시군비 000, 자부담 000)	
5. 장 소		
6. 사업내용		
7. 기타 특이사항		
사업장 전경		

03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촉진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오명호 주무관 현준우	054-880-7710 054-880-7718 054-880-7720

1. 사업목적

○ 동해안 청정해역의 지역특산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수산물의 대외 홍보와 저변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행사 등을 개최하여 지역 수산물 이미지 제고

2. 추진방향

○ 동해안 청정해역의 지역특산품의 저변확대 및 소비촉진

○ 어업인 및 생산자의 공동 소비행사 및 상거래 활성화 대책

3.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 93조

○ 「경상북도 농수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

4. 사업추진계획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 및 홍보행사 여건에 따라 지구별 수협장, 어촌계장, 수산물가공단체 및 업체에서 일정한 예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나. 지원대상자 : 어업인 단체(수협, 어촌계, 작목반), 가공업체, 협회 등

다. 지원조건 및 지원제한

○ 품　　목 : 지역별 우수 특화품목, 특구지정 브랜드 등 시·군 대표적인 수산동식물 및 가공품

○ 지원방법 : 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 유통비용, 국내·외 수산물 행사 개최, 대도시 수산물특판전 등 소비촉진 행사에 소요되는 물품구입, 임차, 인건비 등 참여비용을 절차에 따라 추진(단, 행사에 사용되는 수산물 직접 구입은 제외)

○ 지원제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라. 우선순위

① 어업인 단체(수협, 어촌계 등)

② 가공 생산자 단체 또는 업체

③ 기타사업 주체가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인정하는 자

마. 2024년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량 (개소)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7	536,000	128,640	300,160	107,200	
포항시	1	250,000	60,000	140,000	50,000	
경주시	1	100,000	24,000	56,000	20,000	
안동시	1	30,000	7,200	16,800	6,000	
구미시	1	20,000	4,800	11,200	4,000	
영덕군	1	100,000	24,000	56,000	20,000	
울진군	1	18,000	4,320	10,080	3,600	
울릉군	1	18,000	4,320	10,080	3,600	

※ 지원율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5. 사업비 집행

○ 이 지침에 의한 지원 사업은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각 사업자로 하여금 품종별로 규격화된 상품으로 객관성 있는 자료, 제출 증빙서, 부서 간 중복지원 배제 협의 등을 하여야 한다.

6.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 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예산회계 관련 법률 등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성과(서식 1) 및 정산 보고 하여야 한다.

7. 사업의 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업집행 관리상 필요한 세부사항이 있을시 사업집행 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8. 행정사항

○ 정산보고 철저

≪ 서식 1 ≫

사업성과 보고

1. 사 업 명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2. 사 업 비	사업비 000백만원(도비 000, 시군비 000, 자부담 000)
3. 집 행 액	사업비 000백만원(도비 000, 시군비 000, 자부담 000)
4. 장 소	
5. 사 업 자	
6. 행사내용	
행 사 전 경	

04 오징어 부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오명호 주무관 현준우	054-880-7710 054-880-7718 054-880-7720

1. 사업목적

○ 오징어 생산 및 건오징어 관련 종사원 90% 이상 종사하는 울릉도 특성상 수산물(할복, 건조) 처리·육상운송에 경비 과다로 일부지원

2. 추진방향

○ 오징어 할복 부산물의 해양 투기, 무단 폐기 등으로 환경오염 예방 차원의 어업 경비 부담 경감

○ 운송경비의 객관적인 산정과 검수 및 인계인수 사항 등을 관리 감독 강화

3.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 93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4. 2024년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군 비	자부담	
울릉군	1식	21,000	4,410	10,290	6,300	

5. 사업추진계획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지원기준 및 대상자 : 오징어 할복 부산물을 가공(농축)을 하는 업체로 선정하되 운송선박은 관련법에 의한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소지한 업체로서 해상 운송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체로 정하여 시행

○ 운송비 지원 조건 : 울릉 선착장에서 육지 하역 선착장까지 운송하는 경비에 한함

다. 지원방법

○ 사업주체는 객관적인 검증·확인 절차를 통하여 입회 및 검수 후 최종 폐기처리 시까지 관련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입·출고증 그리고 해상운송 직전 담당공무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 사업비 단가는 정부 공시가격 및 공인된 기관의 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며 만약 공시단가가 없을 경우, 2개 업체 이상의 견적과 운송원가 산출을 통하여 사업집행주체가 객관적이고 적정한 단가를 정하여 시행한다.

라. 지원조건 및 지원제한

○ 지원율 : 도비 21%, 군비 49%, 자부담 30%

○ 지원제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마. 지원방법

○ 사업집행 주체는 육·해상 운송과정에서 누출로 인한 민간 피해발생 및 각종사고에 대하여는 사전 보험(피해, 보증)가입 등 고지하고 대상 업체에서 선 이행 후 동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동 사업은 수산물(오징어내장 등)에 대한 부산물 운송이므로 여타 품목에 대한 운송지원은 배제하며 주어기와 비어기 등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6.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 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예산회계 관련 법률 등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성과(서식 1) 및 정산 보고 하여야 한다.

7. 사업의 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울릉군수는 본 계획에 의거 수시 점검하여 불법 유출 및 폐기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업집행 관리 상 필요한 세부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집행 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8. 행정사항

가. 사업집행주체는 매분기 집행결과를 별첨 서식에 의거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완료 후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별지 1≫

수산물 부산물 처리실적(/ 분기)

(단위 : 척, 천원)

주 요 내용물	계 획		집 행		집행누계		잔 액		비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05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전환)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오명호 주무관 서영주	054-880-7710 054-880-7718 054-880-7719

1. 사업목적

○ 영세한 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설비 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통해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

2. 추진방향

○ 위생 가공시설 확충 등 수산물가공시설의 현대화로 도내 수산가공업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3.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93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4.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어업인, 수산물가공업자, 어업생산자단체, 어촌계, 협동조합, 식품사업자 등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자
- 공장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다만, 건축 연면적 500㎡ 미만 사업장은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인 경우

○ 어업법인이 아닌 경우

- 식품산업 및 수산물가공산업 분야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기타사항

- 자담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지원 제한 기준

- 사업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다.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 수산식품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등

- 건물 및 시설 :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수산물처리장, 소포장시설, 기타 부속건물 및 전기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신규 시설(부지구입비 제외, 건물 증축 포함)

○ 지원 우선순위

- 만19~39세의 청년 어업인(대표)

○ 지원자금은 위 「지원대상」 시설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라. 2024년 시군별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시 군 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11개소	7,500,000	2,140,000	2,140,000	3,220,000	
포항시	3	1,500,000	450,000	450,000	600,000	
경주시	2	1,000,000	300,000	300,000	400,000	
문경시	1	2,200,000	550,000	550,000	1,100,000	
영덕군	4	2,000,000	600,000	600,000	800,000	
울진군	1	800,000	240,000	240,000	320,000	

5. 사업추진절차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신청 단계

○ 시·군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여건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모집 공고 시(당해연도 사업자 첫 모집공고 시 30일 이상, 사업자 미신청으로 재공고시 공고기간 단축 가능) 이를 공고해야 함

- 시·군은 사업희망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제출받아 사업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 선정단계

○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지자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집행주체가 정한다

○ 시·군은 사업자 선정 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해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도에 최종사업자 결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라. 자금배정단계

○ 시·군은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을 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는다.

마. 이행점검단계

○ 시·군은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추진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 도에 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바.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 시·군은 사업에 대한 증빙서류 검증 및 실비 정산 등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확인점검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사업비 집행과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법률에 정한 규정에 의한다.

○ 시·군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연 1회 이상 시설관리상황을 조사하여 관리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파손 또는 훼손되었을 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및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20조(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의 별표7(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

구분		내용연수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경상북도 해양수산 사업의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2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준용한다,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을 통해 따로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별표7의 중요재산의 표준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6. 기타사항

○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업집행 관리상 필요한 세부사항이 있을 시는 사업집행 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계획서

<table>
<tr><td>1. 세부사업명</td><td>수산물 산지가공시설</td></tr>
<tr><td>2. 내역사업명</td><td>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td></tr>
<tr><td>3. 사업위치</td><td></td></tr>
<tr><td>4. 사업규모</td><td>o 면적 : 부지 ㎡, 연면적 ㎡
o 냉동능력 : T/D, 냉장능력 : M/T
o 주요시설 :</td></tr>
<tr><td>5. 사업내용</td><td>o</td></tr>
<tr><td>6. 00년도
요구액</td><td>백만원</td></tr>
<tr><td>연 도 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td><td>
<table>
<tr><td>재원별</td><td>총사업비</td><td>‘00</td><td>‘00</td><td>‘00</td><td>‘00이후</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도 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시군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자부담</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r>
<tr><td>7. 지원조건</td><td>도비 %, 시군비 %, 자부담 %</td></tr>
<tr><td>8. 세부
사업추진 일정</td><td>o 년. 월 :
o 년. 월 :
o 년. 월 :</td></tr>
<tr><td>9. 시행주체</td><td>○○시장, 군수 (사업자 :)</td></tr>
<tr><td>10. 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요약</td><td>o</td></tr>
</table>

<table>
<tr><td>11. 필요성 및
기대효과</td><td colspan="5">o
o</td></tr>
<tr><td>12. 부지확보
여부</td><td colspan="5">o 확보여부 :</td></tr>
<tr><td rowspan="2">13. 매출규모
(단위 : 백만원)
※'24이후는 계획</td><td>'21</td><td>'22</td><td>'23</td><td>'24</td><td>'25</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14. 수출규모
(단위 : 백만원)
※'24이후는 계획</td><td>'21</td><td>'22</td><td>'23</td><td>'24</td><td>'25</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15. 종업원 수
(단위 : 명)
※'24이후는 계획</td><td>'21</td><td>'22</td><td>'23</td><td>'24</td><td>'25</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16. 자산(자본금)
규모
(단위 : 백만원)</td><td colspan="5">o</td></tr>
<tr><td>17. 특허, 신기술 등
보유 유무</td><td colspan="5">o 특허(실용신안) 등록 여부
o 기존 수산물(식품) 제조와 차별화되는 신기술 보유 여부 등</td></tr>
<tr><td>18. 입지여건</td><td colspan="5">o</td></tr>
<tr><td>19. 예산집행실적
('23년도)</td><td colspan="5">o</td></tr>
<tr><td>20. 시·군
검토의견
(우선순위 포함)</td><td colspan="5">o</td></tr>
<tr><td>21. 첨부자료</td><td colspan="5">o 시·군 현황
–
o 신규사업 : 세부사업 설명자료(도면 등)</td></tr>
<tr><td>22. 기타</td><td colspan="5"></td></tr>
<tr><td>23. 담당자</td><td colspan="5">o ○○시·군 :</td></tr>
</table>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2024년 00분기)

1.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3. 사업비	사업장 주소	
	사업량	부지 00㎡, 건물 000㎡(연면적 00㎡, 00동 00층)
	사업비	총사업비 00백만원(도비00, 시군비 00, 자부담 00)
	사업품목	냉동실, 저온창고, 설비 등
4. 추진상황 ※ 날짜를 기재	사업자 선정	
	사업자 확정	
	기본 및 실시설계	
	보조금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확정(예정)	
	보조금 지급 완료(예정)	

5.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획				집행실적(누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금액								

일 정		사업공정(%)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자 선정기준(표준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부지확보	보조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 확보 여부(단, 지상권 확보 등은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이상 확보함을 의미)	25	(신청자소유) 25	(지상권확보) 20	(사용승락) 15	(임대차계약) 10	(확보예정) 5
가공원료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공할 경우 국산원료 사용 비중	20	(100%) 20	(80%) 15	(60%) 10	(40%) 5	(40%미만) 0
과거 보조사업 수혜 여부	동일사업체 또는 대표자 중 동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가 있는지	20	(최초신청) 20	-	(준공 10년경과) 10	-	(준공 5년경과) 0
자부담 능력	보조사업 시설 건축에 필요한 자부담 확보 여부	10	(20%초과확보) 10	-	(20%미만 ~ 해당액확보) 5	-	(미확보) 0
보조사업용 계좌사용여부	보조사업 전용계좌 확보 여부	5	(신규확보) 5	-	(기존계좌사용) 3	-	(미사용) 0
신청자 유형	보조사업 신청자가 단체인지 여부	10	(어업법인) 10	(수협) 8	(생산자단체) 6	(수산물가공업자) 4	(기타) 2
지자체 판단	해당 지자체에 건립이 필요한 수산물 가공업인지 여부	10	(가공품목 경쟁이 없는 전혀 경우) 10	(가공품목 경쟁이 없는 경우) 8	(가공품목 경쟁이 보통인 경우) 6	(가공품목 경쟁이 있는 경우) 4	(가공품목 경쟁이 심한 경우) 2
계		100	-				
평가의견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변경 추진 가능

06 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오명호 주무관 서영주	054-880-7710 054-880-7718 054-880-7719

1. 목 적

○ 수출용 포장재 지원, 수산물 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 수산물 가공시설 위해요소(HACCP) 설비지원, 지역특산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수산물 유통가공분야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93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

3. 사업추진

가.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 다만, 지역실정 및 어업여건에 따라 일정한 자에게 예산집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나. 지원대상자 : 어업인, 어업인 단체, 수산가공업체

다. 지원조건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라. 사업별 세부 지원기준

○ 수출용 포장재 지원 사업: 도내에서 수산가공식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 수출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포장재 구입(제조)비를 지원하며,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수출신고필증, 항공(선박)운송장 등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후 우선 지원한다.

○ 수산물 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 사업

• 브랜드 개발 : 공동생산, 규격출하를 원칙으로 시·군 단위 품종별 브랜드 1품목에 대한 상표등록을 필하고 참가 어업인 및 업체 또는 개인 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포장재 : 포장재의 난립 및 무분별한 브랜드를 지양한다.
• 규격용기 : 수산물 유통과 어업에 소요되는 용기로서 규격출하가 가능한 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 수산물 가공시설 위해요소관리설비 지원 사업 : HACCP 설비 및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며 설비는 공인된 업체에 의해 시설하여 HACCP 설비 인증기관에서 인증이 완료된 시점에서 준공 처리 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 지역특산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사업
• 건물 및 시설 :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소포장 시설, 기타부속건물 및 전기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신규시설(부지구입비 제외)
• 기존시설 보완 및 가공기기류 신규 도입
• 사업자 선정은 부지확보, 자부담 및 경영능력,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지자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집행주체가 정하며, 법인의 경우 반드시 이사회, 비법인 어촌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마. 지원제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바. 2024년 시군별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식)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8	3,175,888	571,660	1,333,873	1,270,355	
포항시	1	851,888	153,340	357,793	340,755	
경주시	1	420,000	75,600	176,400	168,000	
안동시	1	160,000	28,800	67,200	64,000	
문경시	1	219,000	39,420	91,980	87,600	
영덕군	1	600,000	108,000	252,000	240,000	
청도군	1	220,000	39,600	92,400	88,000	
울진군	1	500,000	90,000	210,000	200,000	
울릉군	1	205,000	36,900	86,100	82,000	

4.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총 사업비 내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사업대상자는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도 또는 당해 자치단체장(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5.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 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서식 1 또는 2) 및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6. 사업의 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을 제한함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근 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및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20조(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의 별표7(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

구분		내용연수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경상북도 해양수산 사업의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2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준용한다,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을 통해 따로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별표7의 중요재산의 표준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 서식 1 ≫

사업성과 보고

1. 사 업 명	①수출용 포장재 지원, ②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 ③수산물가공시설 위해요소 관리설비지원, ④지역특산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2. 사 업 자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3. 사 업 비	사업비 000백만원(도비 000, 시군비 000, 자부담 000)	
4. 집 행 액	사업비 000백만원(도비 000, 시군비 000, 자부담 000)	
5. 장 소		
6. 사업내용		
7. 기타 특이사항		
사진대지		

≪ 서식 2 ≫

사업성과 보고

1. 사 업 명 : 예시) 수산물브랜드개발 및 용기지원
2.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자부담　　)
3. 집 행 액 :　　백만원(도비　, 시군비,　　자부담　　)
4. 지원내용

대　상　자		사업비	사업량	비　고
주　　소	성　명			

07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오명호 주무관 서영주	054-880-7710 054-880-7718 054-880-7719

1. 목 적

○ 일시 대량 어획되는 수산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 지원

○ 수산물 유통량 조절 및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2. 추진방침

○ 산지 및 소비지의 수산물 저장 능력 향상

○ 수산물 처리능력을 향상시켜 건조품 생산량 증대

3.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93조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5조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

4. 2024년 시군별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식)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11	918,010	165,242	385,564	367,204	
포항시	1	331,510	59,672	139,234	132,604	
경주시	1	100,000	18,000	42,000	40,000	
안동시	1	37,500	6,750	15,750	15,000	
문경시	1	25,000	4,500	10,500	10,000	
의성군	1	30,000	5,400	12,600	12,000	
청송군	1	24,000	4,320	10,080	9,600	
영덕군	1	180,000	32,400	75,600	72,000	
성주군	1	40,000	7,200	16,800	16,000	
칠곡군	1	10,000	1,800	4,200	4,000	
울진군	1	120,000	21,600	50,400	48,000	
울릉군	1	20,000	3,600	8,400	8,000	

5. 사업추진 계획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지원조건

○ 지 원 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지원대상 : 어업인, 어촌계, 수산물가공업체

○ 지원기준 : 개소당 30백만원 이내(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물량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초저온 · 저온저장시설 또는 건조기 지원

- 저온저장시설 : 2평 이상(내수면 포함), 건조기 지원 : 2대 이내

다. 사업자 선정 및 지원제한

○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지자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집행주체가 정한다.

○ 사업자 선정은 부지확보, 자부담 및 경영능력, 입지조건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집행주체가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지원제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6.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업자는 공급자(업체)와 구매계약 체결 시 냉각팬, 라지에이터, 콘트롤박스 등 중요 장비의 제품보증서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는 가급적 KS제품 또는 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시공업체 선정 시 견실시공을 위하여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등 자격 보유업체 이상만 참여 가능하다.

○ 사업대상자는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도 또는 당해 자치단체장(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7.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 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예산회계 관련 법률 등의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성과(서식 1) 및 정산 보고 하여야 한다.

8. 사후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의거 관리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시설관리상황을 조사하여 관리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훼손되었을 시 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근 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및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20조(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의 별표7(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

구분		내용연수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경상북도 해양수산 사업의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2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준용한다,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을 통해 따로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별표7의 중요재산의 표준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9. 행정사항

가. 시장·군수는 다음 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자 선정보고 : 사업자 선정(변경)시(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추진 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준공보고 : 사업완료시(사진첨부)

○ 사업정산보고 :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나. 사업집행주체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다. 각종서식은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 일반사항에 준하여 작성함.

≪ 서식 1≫

사업성과 보고

1. 사 업 명	수산물 처리·저장(소규모) 시설	
2. 사 업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3. 사 업 비	사업비 000백만원(도비 000, 시군비 000, 자부담 000)	
4. 집 행 액	사업비 000백만원(도비 000, 시군비 000, 자부담 000)	
5. 장 소		
6. 사업내용		
7. 기타 특이사항		
사업장 전경		

08 수산물 해외 규격인증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오명호 주무관 서영주	054-880-7710 054-880-7718 054-880-7719

1.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수산물 수출확대에 기여

○ 해외규격인증 획득으로 경북 수산물의 대외 홍보 및 해외시장 접근성 향상 도모

2. 추진방향

○ 수출 수산물 국제인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 등으로 경쟁력 제고

○ 경북 수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 기반조성 및 브랜드 파워 제고

3.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93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5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 제8조 제2항

4. 사업추진계획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지원대상 : 관내 수산물 수출업체 및 수출어가(단체) 등

다.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등

○ 지 원 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유지관리비 등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한 제품 시험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대행료 등
- 유지관리비 : 인증갱신, 검·교정비, 성분 분석비 등

○ 지원대상자 우선 선정 기준

- 고유상표를 특허청에 상표등록 하였거나 출원 중인 업체 우선 선정
- 수출실적이 우수하거나 해외 수출 등 사업목표가 명확한 업체 우선 선정
- 국제식품박람회, 해외 판촉전 등 시장개척활동 실적이 있는 업체 우선 선정

○ 지원제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라. 2024년 시군별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시 군 별	사 업 량 (식)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기 타	
합 계	1	40,000	9,600	22,400	8,000	
포항시	1	40,000	9,600	22,400	8,000	

마. 사업추진체계

도		시·군		지원기업
• 사업집행지침 수립 • 보조금 교부 • 추진사항 점검·확인	⇔	• 지원기업 모집·선정 • 사업추진 및 실적 관리 • 사업성과 및 정산 보고	⇔	• 해외규격인증획득 • 결과 보고

5.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 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정산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령,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예산회계법령,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업대상자는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도 또는 당해 자치단체장(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7. 사업의 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에 대한 증빙서류 검증 및 실비 정산 등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확인점검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업집행관리 상 필요한 모집공고, 사업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등 세부사항은 사업 집행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8. 행정사항

가. 사업비 집행 및 관련법령 준수

○ 사업비 집행과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률에 정한 규정에 의한다.

○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참고 1 ≫

주요 인증제도

구분	인증명		인증소개	주요국가
할랄 (HALAL) (9종)	1	MUI	무슬림 허용 식품인증	인도네시아
	2	Warees		싱가포르
	3	JAKIM		말레이시아
	4	APHC		홍콩
	5	KMF		한국
	6	KHA(Korea)		한국
	7	HI-PVT		인도
	8	IHC		파키스탄
	9	ESMA		아랍에미리트
코셔 (Kosher) (5종)	10	OK	유대교 식품적법인증	이스라엘, 미국, 유럽
	11	Star-K		
	12	OU		
	13	KOF-K		
	14	cRc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 (4종)	15	MSC	생산어장의 지속가능한 인증	전 세계
	16	MSC CoC	생산상품의 이력추적관리 인증	
	17	ASC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인증	
	18	ASC CoC	양식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인증	
친환경 (5종)	19	USDA-NOP	미국농무성 유기제품인증	미국
	20	Organic EU	EU 유기농식품인증	유럽
	21	GLOBAL G.A.P.	우수수산물관리기준	전세계
	22	JAS	일본유기제품인증	일본
	23	BAP	우수수산물양식인증	미국
품질 규격 (10종)	24	SQF	식품안전글로벌규격	전 세계
	25	FSSC22000		
	26	GMP		
	27	TRCU(EAC)	러시아 수출 기준규격	러시아
	28	FDA*	FDA 시설등록 및 안정성검사	미국
	29	AEO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	전 세계
	30	Gluten Free	글루텐 비함유 식품인증	
	31	Non GMO	비유전자변형식품	
	32	Vegetarian	채식주의인증	
	33	FSSAI	인도 수출 기준규격	인도
윤리경영 (2종)	34	BSCI	윤리감사 규격	전 세계
	35	SMETA		

09 우수 수산물 육성사업(전환)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오명호 주무관 문예원	054-880-7710 054-880-7718 054-880-7721

1. 목 적

○ 안테나숍 운영 및 기획전 행사로 우리 도 우수 스타품목의 대외 경쟁력 확보 및 수산물의 전략적 홍보·마케팅 강화

○ 경북 도내 수산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고, NFT기반 경북형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93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5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제6조

3. 2024년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수행기관	물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우수 수산물 육성사업	합 계	2개소	1,400,000	1,400,000	-	-	
	(재)경상북도 경제진흥원	1개소	1,000,000	1,000,000	-	-	
	(재)환동해 산업연구원	1개소	400,000	400,000	-	-	

4. 사업대상자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재)환동해산업연구원

5. 집행주체 : 경상북도지사로 한다. 다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재)환동해산업연구원은 경상북도와 상호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대행하여 업무추진 및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6.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등

가. 지 원 율 : 도비 100%

나. 지원내용 : 경상북도 안테나숍 운영 및 홍보·마케팅, 우수 수산물 가공·유통·수출 지원, 스타기업 육성 및 NFT기반 경북형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등

다. 지원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7. 사업추진절차

시·도지사	→	수행기관
·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약체결 ·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 등의 지도·감독 · 사업비 정산 등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수혜기업 선정·기업지원 프로그램 구성 · 사업비 관리

8. 자금배정단계

○ 수행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우수 수산물 육성사업 사업시행지침 및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9. 사업비 집행

가. 사업비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 법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사업대상자는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도 또는 당해 자치단체장(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 설비는 공인된 업체에 의뢰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완료된 시점에서 준공 처리 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0.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 정산

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예산회계 관련 법률 등의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나.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성과(서식 1) 및 정산 보고 하여야 한다.

다. 집행주체는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채권에 대한 보전 조치 방안으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집행주체가 근저당권 설정 또는 보증보험증권 확보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교부 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8. 행정사항

가. 수행기관은 다음 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

- ○ 사업자 선정보고 : 사업자 선정(변경) 시(사업계획서 첨부)
- ○ 완료보고 : 사업완료 시(사진첨부)
- ○ 사업정산보고 :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나. 사업수행기관의 지급 보조금 환수 등 : 기업 간의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대로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환수 조치

다.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수행기관 협약서 내용을 준용한다.

≪ 서식 1 ≫

사업성과 보고

1. 사 업 명	우수 수산물 육성 사업	
2. 사 업 자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3. 사 업 비	사업비 000백만원(도비 000, 시군비 000, 자부담 000)	
4. 집 행 액	사업비 000백만원(도비 000, 시군비 000, 자부담 000)	
5. 장 소		
6. 사업내용		
7. 기타 특이사항		
사업장 전경		

10 수산물 공동작업장 폐수처리 시설 개보수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오명호 주무관 서영주	054-880-7710 054-880-7718 054-880-7719

1. 목 적

○ 노후화된 폐수처리시설 정비로 시설현대화 및 공동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폐수처리로 시설 운영비 절감 및 수질강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원활한 폐수처리를 위한 수산물 공동작업장 시설 개보수

3.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93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4. 시·군별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별	사 업 량 (개소)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도 비	군 비	자부담	
영 덕 군	1	350,000	70,000	280,000	-	

5.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지구 : 영덕군(축산면)

다. 사업내용 : 노후된 폐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장비구입, 안정조 및 폭기조 배관 교체, 해수 모터 등 시설 유지보수

라. 지 원 율 : 도비 20%, 시군비 80%

6. 사업시행체계

시 · 군	• 보조금 예산신청 • 사업계획 수립 및 협의 • 사업시행, 사후관리
↓↑	
도	• 사업비 확보 및 사업계획 검토 • 사업비 배정 및 정산

<사업담당부서>

○ 도 : 해양수산과

○ 시·군 : 영덕군 해양수산과

7. 사업 시행

○ 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의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이 지침에 의한 수산물 공동작업장 폐수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자는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도 또는 당해 자치단체장(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군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 사업의 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1. 행정사항

○ 사후관리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의 별표7(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

구분		내용연수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경상북도 해양수산 사업의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2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준용한다,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을 통해 따로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별표7의 중요재산의 표준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서식 1 ≫

수산물 공동작업장 폐수처리시설 개보수 사업 정산서

1. 보조금 정산 신청 현황

(단위 : 원)

보 조 사업자	교부결정 및 수령액				집행액				잔액
	계	도 비	군 비	자부담	계	도 비	군 비	자부담	

2.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내용	

3. 현장사진

공사전		공사후	

11 어서옵쇼 수산물 할인행사(시군보조)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오명호 주무관 현준우	054-880-7710 054-880-7718 054-880-7720

1. 사업목적

○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밥상물가 안정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관내 수산시장 내에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을 지원하여 물가안정 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추진방향

○ 물가안정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할인 쿠폰 지원

3.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 93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 「경상북도 농수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

4. 사업추진계획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로 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예산을 위탁하여 수행 할 수 있으며, 위탁 수행 시 운영비는 5~10% 범위 내에서 정한다.

* 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원대상자 : 지역시장 내 수산물 취급업체, 수산물 가공업체 등

다. 지원조건 및 지원제한

○ 품 목 : 국내산 수산물 취급 점포,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 생산품 등

○ 지원방법

① 관내 시장을 방문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행사대상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② 할인행사(직거래 장터, 드라이브스루, 지역행사 연계 등) 개최비 및 운영비용 (제품 가공비(포장 포함), 할인비, 시식비, 시설대여비 등)

③ 온라인 쇼핑몰 및 대형마트에 입점 판매 시 행사 품목에 대한 할인비용

○ 지원제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라. 세부추진내용

○ 시장선정 : 참여 시장은 각 시·군에서 자율 결정(지역 상인회 및 협회 추천 등)

○ 중복참여 : 원칙적으로 전년도 행사를 개최한 시장은 금년도 행사 참여를 제한하나, 시·군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점포선정 : 시장 선정 후, 국내산 수산물 취급 점포 확정

* 국내산·수입산을 모두 취급하는 업체도 가능

○ 할인쿠폰 : 행사기간 중 시장을 방문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1인당 5천원 할인쿠폰 2매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 행사 참여 점포에서 수산물 2만원 이상 구매 시 1매 사용할 수 있으며, 4만원 이상 구매 시 2매 사용 할 수 있다.

* 시행주체는 행사추진 시 할인쿠폰 중복발급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기간 : 시·군에서 지정한 행사기간, 그 외 기간에는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 제외대상 : ①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②정부 비축 방출 품목, ③일반음식점

○ 지원방법 ②, ③의 방법으로 사업 추진 시 행사 장소는 시·군에서 자율 결정한다.

마. 2024년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량 (개소)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5	250,000	75,000	175,000	0	
포항시	1	50,000	15,000	35,000	0	
경주시	1	50,000	15,000	35,000	0	
안동시	1	50,000	15,000	35,000	0	
영덕군	1	50,000	15,000	35,000	0	
울진군	1	50,000	15,000	35,000	0	

※ 지원율 도비 30%, 시군비 70%

5. 사업비 집행

○ 이 지침에 의한 지원 사업은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6.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 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예산 회계 관련 법률 등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성과(서식 1) 및 정산 보고 하여야 한다.

○ 지원방법 ①의 할인쿠폰 지원 행사 정산은 참여 점포의 회수된 할인쿠폰의 금액만큼 보조금을 지원한다.

○ 지원방법 ②, ③의 행사 추진 후 정산 시 증빙은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전자결재방식의 매출표로 한다.

7. 사업의 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업집행 관리상 필요한 세부사항이 있을시 사업집행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8. 행정사항

○ 정산보고 철저

≪ 서식 1 ≫

사업성과 보고

1. 사 업 명	어서옵쇼 수산물 할인행사
2. 사 업 비	사업비 000백만원(도비 000, 시군비 000)
3. 집 행 액	사업비 000백만원(도비 000, 시군비 000)
4. 장 소	
5. 사 업 자	
6. 행사내용	
행 사 전 경	

12 어서옵쇼 수산물 할인행사(도직접)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오명호 주무관 현준우	054-880-7710 054-880-7718 054-880-7720

1. 사업목적

○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밥상물가 안정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관내 수산시장 내에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을 지원하여 물가안정 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추진방향

○ 물가안정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할인 쿠폰 지원

3.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 93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 「경상북도 농수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

4. 사업추진계획

가. 집행주체 : (재)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 한다.

나. 지원대상자 : 지역시장 내 수산물 취급업체, 수산물 가공업체 등

다. 지원조건 및 지원제한

○ 품 목 : 국내산 수산물 취급 점포,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 생산품 등

○ 지원방법

① 관내 시장을 방문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행사대상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② 할인행사(직거래 장터, 드라이브스루, 지역행사 연계 등) 개최비 및 운영비용(제품 가공비(포장 포함), 할인비, 시식비, 시설대여비 등)

③ 온라인 쇼핑몰 및 대형마트에 입점 판매 시 행사 품목에 대한 할인비용

○ 지원제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라. 세부추진내용

○ 시장선정 : 참여 시장은 경북도, 시군 및 수행기관과 상호 협의 후 결정함

○ 중복참여 : 원칙적으로 전년도 행사를 개최한 시장은 금년도 행사 참여를 제한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점포선정 : 시장 선정 후, 국내산 수산물 취급 점포 확정

* 국내산·수입산을 모두 취급하는 업체도 가능

○ 할인쿠폰 : 행사기간 중 시장을 방문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1인당 5천원 할인쿠폰 2매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1인 2매 한도)

• 행사 참여 점포에서 수산물 2만원 이상 구매 시 1매 사용할 수 있으며, 4만원 이상 구매 시 2매 사용 할 수 있다.

○ 사용기간 : 지정한 행사기간, 그 외 기간에는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 제외대상 : ①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②정부 비축 방출 품목, ③일반음식점

○ 지원방법 ②, ③의 방법으로 사업 추진 시 행사 장소는 수행기관에서 경북도 및 시·군과 협의 후 자율 결정한다.

마. 2024년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수행기관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어서옵쇼 수산물 할인행사	합 계	1개소	200,000	200,000	-	-	
	(재)환동해 산업연구원	1개소	200,000	200,000	-	-	

5. 사업비 집행

○ 이 지침에 의한 지원 사업은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6.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 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집행 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예산 회계 관련 법률 등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성과(서식 1) 및 정산 보고 하여야 한다.

○ 지원방법 ①의 할인쿠폰 지원 행사 정산은 참여 점포의 회수된 할인쿠폰의 금액만큼 보조금을 지원한다.

○ 지원방법 ②, ③의 행사 추진 후 정산 시 증빙은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전자 결재방식의 매출표로 한다.

7. 사업의 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업집행 관리상 필요한 세부사항이 있을시 사업집행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8. 행정사항

○ 정산보고 철저

≪ 서식 1 ≫

사업성과 보고

1. 사 업 명	어서옵쇼 수산물 할인행사(도직접)
2. 사 업 비	사업비 000백만원(도비 000)
3. 집 행 액	사업비 000백만원(도비 000)
4. 장 소	
5. 사 업 자	
6. 행사내용	
행 사 전 경	

13 죽변항 청정해수 공급시설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 당 기 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 화 번 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오명호 주무관 서영주	054-880-7710 054-880-7718 054-880-7719

1. 목 적

○ 기존 해수라인의 공급량 부족으로 청정해수 공급시설을 신설하여 위생적인 수산물 판매 기반 조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신속한 해수라인 신설을 통해 수산물 판매 상가의 불편함 및 민원 해결

3.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93조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5조

○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23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4. 시·군별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별	사 업 량 (식)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도 비	군 비	자부담	
울 진 군	1	1,000,000	300,000	700,000	-	

5.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지구 : 울진군(죽변항)

다. 사업내용

- 기계실(펌프 75마력 2대), 취수(해상)라인 2라인(구경 300㎜, L=500m) 설치
- 육상라인 1라인(구경 300㎜, L=550m) 설치

라. 지 원 율 : 도비 30%, 시군비 70%

6. 사업시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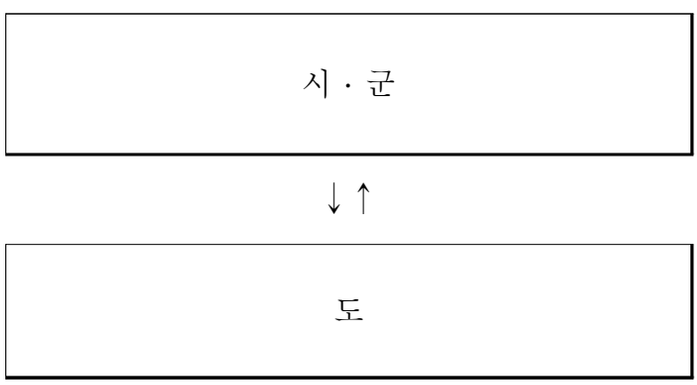

- 보조금 예산신청
- 사업계획 수립 및 협의
- 사업시행, 사후관리

- 사업비 확보 및 사업계획 검토
- 사업비 배정 및 정산

<사업담당부서>

○ 도 : 해양수산과

○ 시·군 : 울진군 해양수산과

7. 사업 시행

○ 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의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이 지침에 의한 죽변항 청정해수 공급시설 지원 사업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자는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도 또는 당해 자치단체장(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군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 사업의 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1. 행정사항

○ 사후관리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의 별표7(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

구분		내용연수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경상북도 해양수산 사업의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2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준용한다,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을 통해 따로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별표7의 중요재산의 표준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서식 1 ≫

죽변항 청정해수 공급시설 사업 정산서

1. 보조금 정산 신청 현황

(단위 : 원)

보 조 사업자	교부결정 및 수령액				집행액				잔액
	계	도 비	군 비	자부담	계	도 비	군 비	자부담	

2.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내용	

3. 현장사진

공사전		공사후	

14 수산물 이커머스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오명호 주무관 현준우	054-880-7710 054-880-7718 054-880-7720

1.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유형의 변화에 따라 지역 수산물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홍보를 통하여 수산물 소비촉진 및 어업인 소득증대 여건 마련

2. 추진방향

○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지역 수산물 홍보·판매 지원

3. 근거법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4. 사업추진계획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로 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예산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위탁 수행 시 운영비는 5~10% 범위 내에서 정한다.

* 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원대상자 : 어업인, 어업인단체, 수산물가공업체 등

다. 지원조건 및 지원제한

○ 품 목 : 지역별 우수 특화품목, 특구지정 브랜드 등 시·군 대표적인 수산동식물 및 가공품

○ 지원방법 : 온라인사이트 키워드 및 배너광고, 소셜 미디어·모바일 광고 지원, 라이브커머스, 그 외 온라인 광고 지원 등

○ 지원제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라. 우선순위

① 어업인 단체(수협, 어촌계 등)

② 가공 생산자 단체 또는 업체

③ 기타사업 주체가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인정하는 자

마. 2024년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량 (개소)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4	200,000	60,000	140,000	0	
포항시	1	50,000	15,000	35,000	0	
경주시	1	50,000	15,000	35,000	0	
영덕군	1	50,000	15,000	35,000	0	
울진군	1	50,000	15,000	35,000	0	

※ 지원율 도비 30%, 시군비 70%

5. 사업비 집행

○ 이 지침에 의한 지원 사업은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각 사업자로 하여금 품종별로 규격화된 상품으로 객관성 있는 자료, 제출 증빙서, 부서 간 중복지원 배제 협의 등을 하여야 한다.

6.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 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예산회계 관련 법률 등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성과(서식 1) 및 정산 보고 하여야 한다.

7. 사업의 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업집행 관리상 필요한 세부사항이 있을시 사업집행 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8. 행정사항

○ 정산보고 철저

≪ 서식 1 ≫

사업성과 보고

1. 사 업 명	수산물 이커머스 지원
2. 사 업 비	사업비 000백만원(도비 000, 시군비 000)
3. 집 행 액	사업비 000백만원(도비 000, 시군비 000)
4. 장 소	
5. 사 업 자	
6. 지원내용	
붙 임 사 진	

15 로하스 농공단지 해수공급 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오명호 주무관 서영주	054-880-7710 054-880-7718 054-880-7719

1. 목 적

○ 최근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식품 위생기준 강화로 취수원 수질오염 등 안정적 해수공급 대책 마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로하스 수산식품 특화농공단지 내 양질의 청정해수공급으로 지역수산물 이미지 제고

3.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93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4. 2024년 시·군별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별	사 업 량 (식)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도 비	군 비	자부담	
영 덕 군	1	300,000	90,000	210,000	-	

5.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지구 : 영덕군

다. 사업내용

- 기반시설(펌프장 1개소, 해수보관 탱크 2개소) 설치
- 취수시설(육상해수운송 배관 및 해수취수 관로) 설치

라. 지 원 율 : 도비 30%, 시·군비 70%

6. 사업시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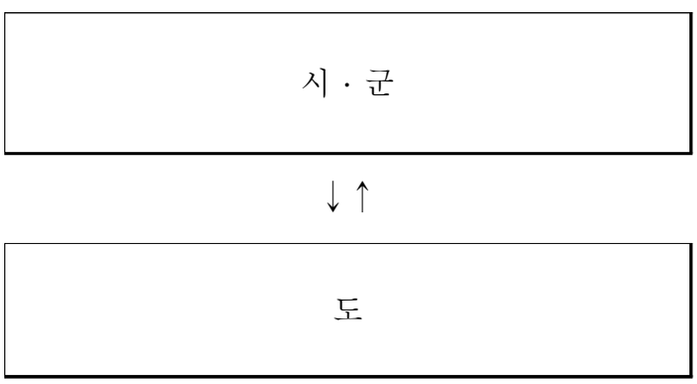

- 보조금 예산신청
- 사업계획 수립 및 협의
- 사업시행, 사후관리

- 사업비 확보 및 사업계획 검토
- 사업비 배정 및 정산

<사업담당부서>

○ 도 : 해양수산과

○ 시·군 : 영덕군 해양수산과

7. 사업 시행

○ 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의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이 지침에 의한 로하스 농공단지 해수 공급 사업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자는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도 또는 당해 자치단체장(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군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 사업의 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1. 행정사항

○ 사후관리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의 별표7(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

구분		내용연수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경상북도 해양수산 사업의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2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준용한다,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을 통해 따로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별표7의 중요재산의 표준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서식 1 ≫

로하스 농공단지 해수공급 사업 정산서

1. 보조금 정산 신청 현황

(단위 : 원)

보 조 사업자	교부결정 및 수령액				집행액				잔액
	계	도 비	군 비	자부담	계	도 비	군 비	자부담	

2.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내용	

3. 현장사진

공사전		공사후	

16 수산물 방사능 검사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오명호 주무관 문예원	054-880-7710 054-880-7718 054-880-7721

1. 사업목적

○ 수산물 방사능 장비구축에 따라 정기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검사운영 지원

2. 추진방향

○ 체계적인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해 수산물에 대한 신뢰 형성 및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

3. 근거법령

가. 시행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제62조

○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정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나. 지원근거

○ 「수산업법」 제93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제2항 제4호

4. 사업추진계획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로 한다. 다만, 수산물 방사능 장비 운영관리에 따라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사능 장비 운영기관(부서)에 예산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나. 지원내용 : 시료 및 소모품 구입, 방사능 장비 유지보수비(A/S), 방사능 검사비(기간제근로자 채용 또는 그 외 필요한 비용)

라. 지원조건(지원기준 : 도비 30%, 시군비 70%)

마. 2024년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계		120,000	36,000	84,000	
경주시	12개월	60,000	18,000	42,000	
영덕군	12개월	60,000	18,000	42,000	

5. 사업비 집행

○ 이 지침에 의한 지원 사업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비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 법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6.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 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예산회계 관련 법률 등의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7. 사업의 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업집행 관리상 필요한 세부 사항이 있을 시는 사업집행 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8. 행정사항

○ 정산보고 철저

17 활어위판장 냉각해수 공급시설 설치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오명호 주무관 서영주	054-880-7710 054-880-7718 054-880-7719

1. 목 적

○ 죽도위판장 대표 어종인 문어의 대량 위판으로 냉각수 공급량이 부족하여 선도유지가 어려워 냉각해수 공급시설 설치를 통해 수산물 선도 유지

2. 시책 및 추진방향

○ 냉각해수 공급시설 설치를 통해 수산물 선도 유지

3.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93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

4. 2024년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별	사 업 량 (식)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도 비	군 비	자부담	
포항시	1	90,000	13,500	31,500	45,000	

5.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 및 여건에 따라 관할 수협장이 대행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나. 사업대상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다. 사업내용 : 냉각기 및 보관탱크 설치 등

라. 지 원 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6. 사업 시행

○ 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의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이 지침에 의한 활어위판장 냉각해수 공급시설 설치 사업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자는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도 또는 당해 자치단체장(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군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9. 사업의 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0. 행정사항

○ 사후관리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의 별표7(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

구분		내용연수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경상북도 해양수산 사업의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2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준용한다,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을 통해 따로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별표7의 중요재산의 표준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서식 1 ≫

활어위판장 냉각해수 공급시설 설치 사업 정산서

1. 보조금 정산 신청 현황

(단위 : 원)

보 조 사업자	교부결정 및 수령액				집행액				잔액
	계	도 비	군 비	자부담	계	도 비	군 비	자부담	

2.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내용	

3. 현장사진

공사전		공사후	

18 현포어촌계 수산물 직거래판매장 건립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오명호 주무관 서영주	054-880-7710 054-880-7718 054-880-7719

1. 목 적

○ 어촌계 및 어업인들이 생산한 수산물의 적절한 수요공급 조절을 위한 직거래판매장 건립으로 가격안정 도모 및 어촌경제 활성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어촌계 및 어업인들이 생산한 수산물의 직거래를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

3.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93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

4. 2024년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도 비	군 비	자부담	
울릉군	1개소	400,000	96,000	224,000	80,000	

5.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 및 어업여건에 따라 일정한 자에게 예산을 집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나. 사업대상 : 현포어촌계

다. 사업내용 : 수산물 직거래판매장 건립 1식

라. 지 원 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6. 사업 시행

○ 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의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이 지침에 의한 현포어촌계 수산물 직거래판매장 건립 사업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자는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도 또는 당해 자치단체장(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군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9. 사업의 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0. 행정사항

○ 사후관리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의 별표7(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

구분		내용연수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경상북도 해양수산 사업의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2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준용한다,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을 통해 따로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별표7의 중요재산의 표준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서식 1 ≫

현포어촌계 수산물 직거래판매장 건립 사업 정산서

1. 보조금 정산 신청 현황

(단위 : 원)

보 조 사업자	교부결정 및 수령액				집행액				잔액
	계	도 비	군 비	자부담	계	도 비	군 비	자부담	

2.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내용	

3. 현장사진

공사전		공사후	

19 울릉군수협 냉동공장 개보수 공사 지원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오명호 주무관 서영주	054-880-7710 054-880-7718 054-880-7719

1. 목 적

○ 냉동공장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로 어획되는 수산물의 보관용이 및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으로 신선한 수산물 공급

2. 시책 및 추진방향

○ 냉동공장 시설물 노후화 개보수로 안정적인 공급체계와 신선한 수산물 공급

3.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93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5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

4. 2024년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도 비	군 비	자부담	
울릉군	1개소	700,000	168,000	392,000	140,000	

5.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 및 여건에 따라 관할 수협장이 대행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나. 사업대상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다. 사업내용 : 냉동공장 건물 외벽 및 시설보수 등

라. 지 원 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6. 사업 시행

○ 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의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이 지침에 의한 울릉군수협 냉동공장 개보수 공사 지원사업은 사업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자는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도 또는 당해 자치단체장(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군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9. 사업의 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0. 행정사항

○ 사후관리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의 별표7(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

구분		내용연수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경상북도 해양수산 사업의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2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준용한다,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을 통해 따로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별표7의 중요재산의 표준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서식 1 ≫

울릉군수협 냉동공장 개보수 공사 지원사업 정산서

1. 보조금 정산 신청 현황

(단위 : 원)

보 조 사업자	교부결정 및 수령액				집행액				잔액
	계	도 비	군 비	자부담	계	도 비	군 비	자부담	

2.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내용	

3. 현장사진

공사전		공사후	

20 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사업(전환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오명호 주무관 서영주	054-880-7710 054-880-7718 054-880-7719

1. 목 적

○ 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립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기반 확보

○ 기존 가공시설 개선 및 체계적인 유통라인 구축을 통해 수산물 생산성 제고 및 유통기능 강화로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립으로 체계적인 유통라인을 구축하여 위생적인 유통기반 확보와 수산물 생산성 제고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어업활성화 기여

3.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93조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5조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

4. 2024년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포항시	1개소	400,000	120,000	120,000	160,000	

5.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 및 여건에 따라 관할 수협장이 대행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나. 사업대상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다. 사업내용 : 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립 1개소

라. 지 원 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라.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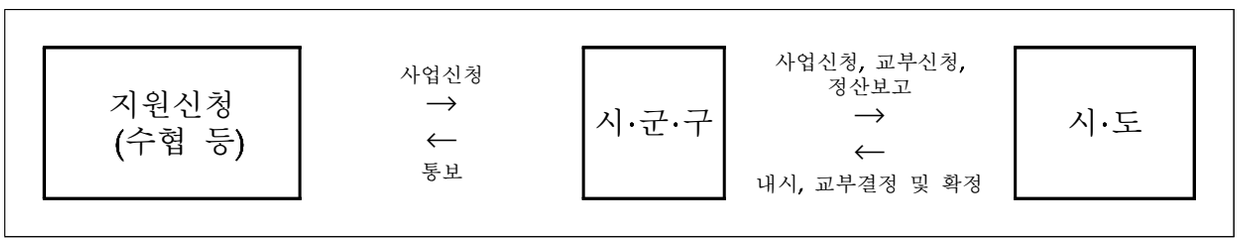

6. 자금배정단계

○ 시·군은 배정된 자금을 세부내역사업별로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검정 및 정산

7.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집행주체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포기 :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보조사업 관련 계약 : 민간보조사업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 선정 시 보조사업자가 직접「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시·군에 계약대행을 의뢰하여 시·군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함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시·군과 협의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수의계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시 · 군의 승인하에 실시

<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각종 기계설비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함

< 사업관리 >

○ 시·군은 승인결과,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을 시·도에 제출(2월말)

- 시·도는 세부사업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 세부사업계획 및 설계, 사업부지 등의 변경은 시·군의 승인을 통해 처리하며,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변경 사유, 검토 결과 등을 첨부)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군은 포기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8. 사업비 집행

가. 사업비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 법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사업대상자는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도 또는 당해 자치단체장(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9.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 정산

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예산회계 관련 법률 등의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나.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성과(서식 1) 및 정산 보고 하여야 한다.

10. 사업의 관리

가.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집행주체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시설관리상황을 조사하여 관리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훼손되었을 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다.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군에서는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업집행 관리상 필요한 세부사항이 있을 시는 사업집행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1. 행정사항

○ 사후관리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의 별표7(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

구분		내용연수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경상북도 해양수산 사업의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2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준용한다,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을 통해 따로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별표7의 중요재산의 표준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서식 1≫

사업성과 보고

1. 사 업 명	수산물 가공처리시설사업	
2. 사 업 자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3. 사 업 비	사업비 000백만원(도비 000, 시군비 000, 자부담 000)	
4. 집 행 액	사업비 000백만원(도비 000, 시군비 000, 자부담 000)	
5. 장 소		
6. 사업내용		
7. 기타 특이사항		
사업장 전경		

21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황성수 주무관 박선희	054-880-7710 054-880-7722 054-880-7726

1. 목 적

가. 수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재해보험료의 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

2. 근거법령

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재정지원)

3. 사업개요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로 한다. 단, 필요시 지구·업종별 수협장에게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협조 : 수협경북공제보험지구)

나. 지원대상 : 도내에서 양식보험 대상 목적물에 대한 양식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중, 보험 대상 수산물을 양식하고 도내에 주소를 둔 자

다.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라. 지원기준 : 어가당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의 순수 자부담(국비지원금 및 연체금 제외) 보험료 중 70%이하 범위 내 지원

- 해상가두리 어류 : 한도액 3,000만원 이내
- 기타 양식 : 한도액 500만원 이내

4. 시·군별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식, 천원)

시 군 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5식	428,334	128,500	299,834		
포 항 시	1식	350,000	105,000	245,000		
경 주 시	1식	5,000	1,500	3,500		
영 덕 군	1식	30,000	9,000	21,000		
울 진 군	1식	40,000	12,000	28,000		
상 주 시	1식	3,334	1,000	2,334		

5. 사업추진체계 및 방법

가.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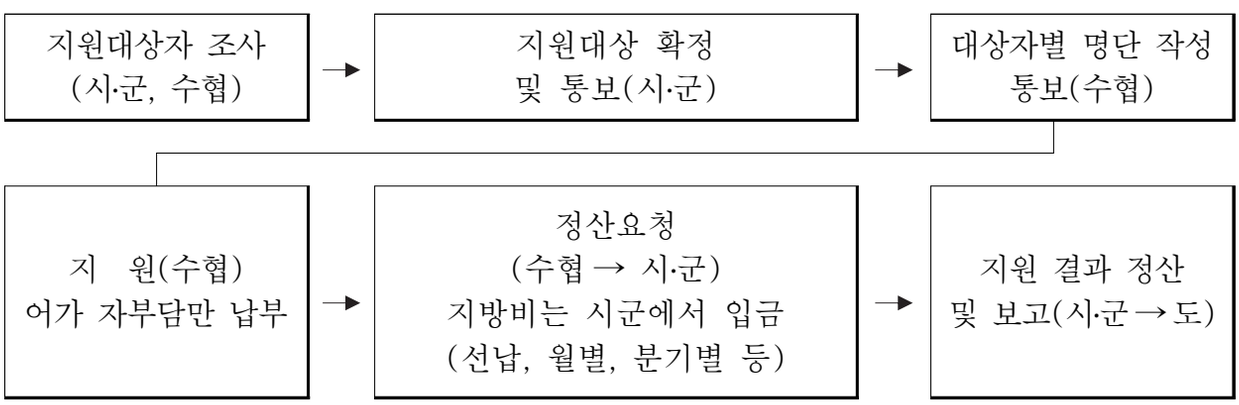

나. 보조금 집행방법

1) 사업 집행주체는 사업비 중 도비 부담액에 대하여 집행시기, 소요액을 감안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신청 및 자금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수협중앙회장 또는 회원조합장은 보험 가입자별 납부한 순수 자부담금(정부지원금 및 연체료 제외) 내역서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집행주체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류 등을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보조금을 송금하여야 한다.

4) 수협장은 국비, 도비, 시군비를 제외한 어가자부담만 납부 받아야 하며, 사업집행주체는 월별, 분기별, 선납 등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집행 하여야 한다.

5) 수협중앙회는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입하여 보조금을 전액 지원 받은 양식어가가 자격을 상실하여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하지 않고 국고지원과 동일하게 정산금액으로 처리(정산 요청 시 환급금을 차감하고 정산 요청)한다.

6. 행정사항

가. 사업집행주체인 시장·군수는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교부신청 및 자금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사업집행주체는 보조금교부결정시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원(보조)할 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어가 수에 따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 시장·군수는 다음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상황보고 : 매반기 익월 5일까지(붙임 1)
- 사업정산보고 : 사업완료 후 (붙임 2)

라. 본 지침 및 [별표 제1호], [별표 제2호],[별표 제3호]의 정책보험 지방비 지원 사업 세부절차 및 처리기준에 따라 사업 추진하되, 동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2024년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시행지침에 의하며 변경가능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마. 사업집행주체 및 수협중앙회(지구별, 업종별 수협)는 긴밀히 협조하여 양식수산물재해보험가입을 장려하여 가입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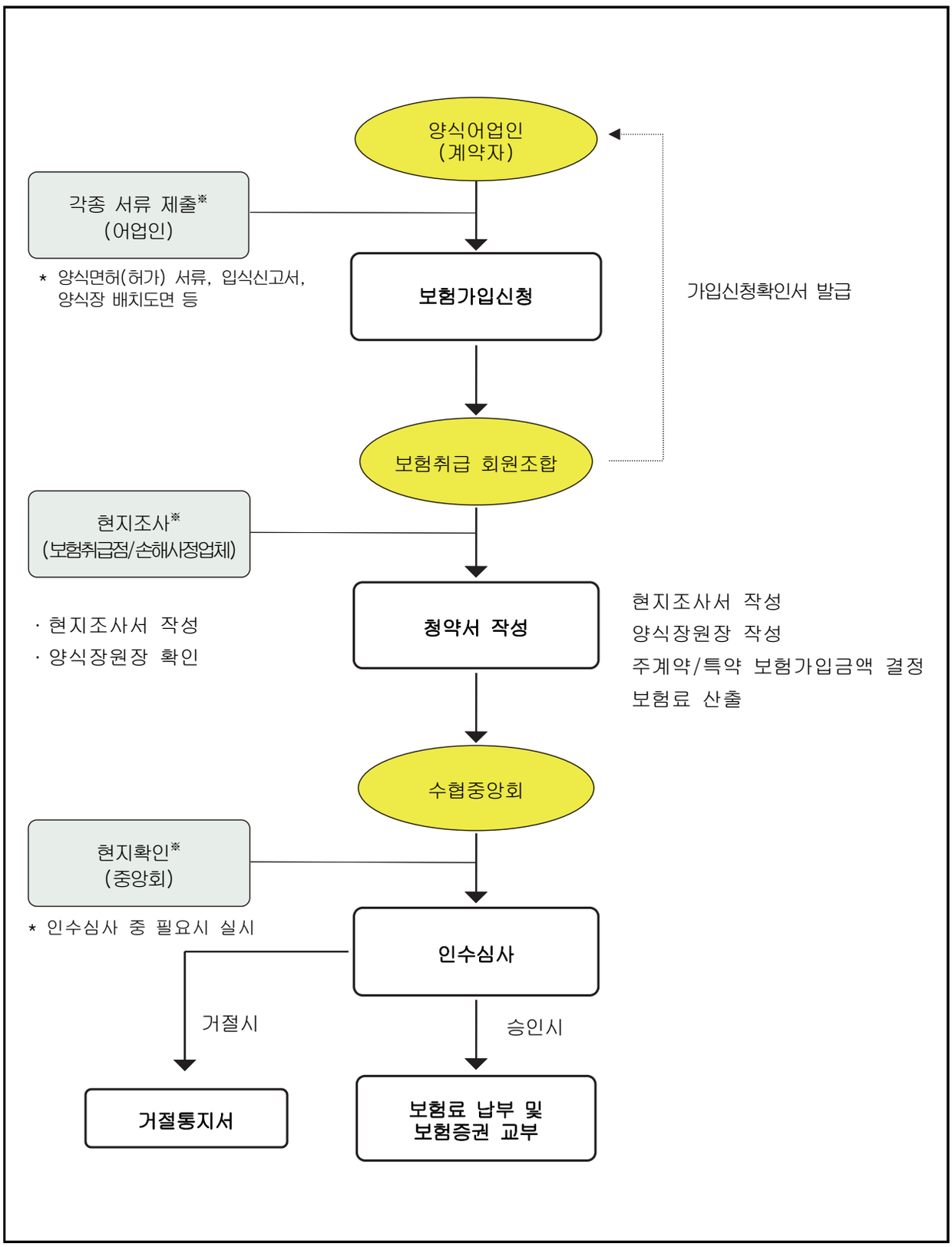

[별표 제2호] 정책보험 지방비 지원사업 세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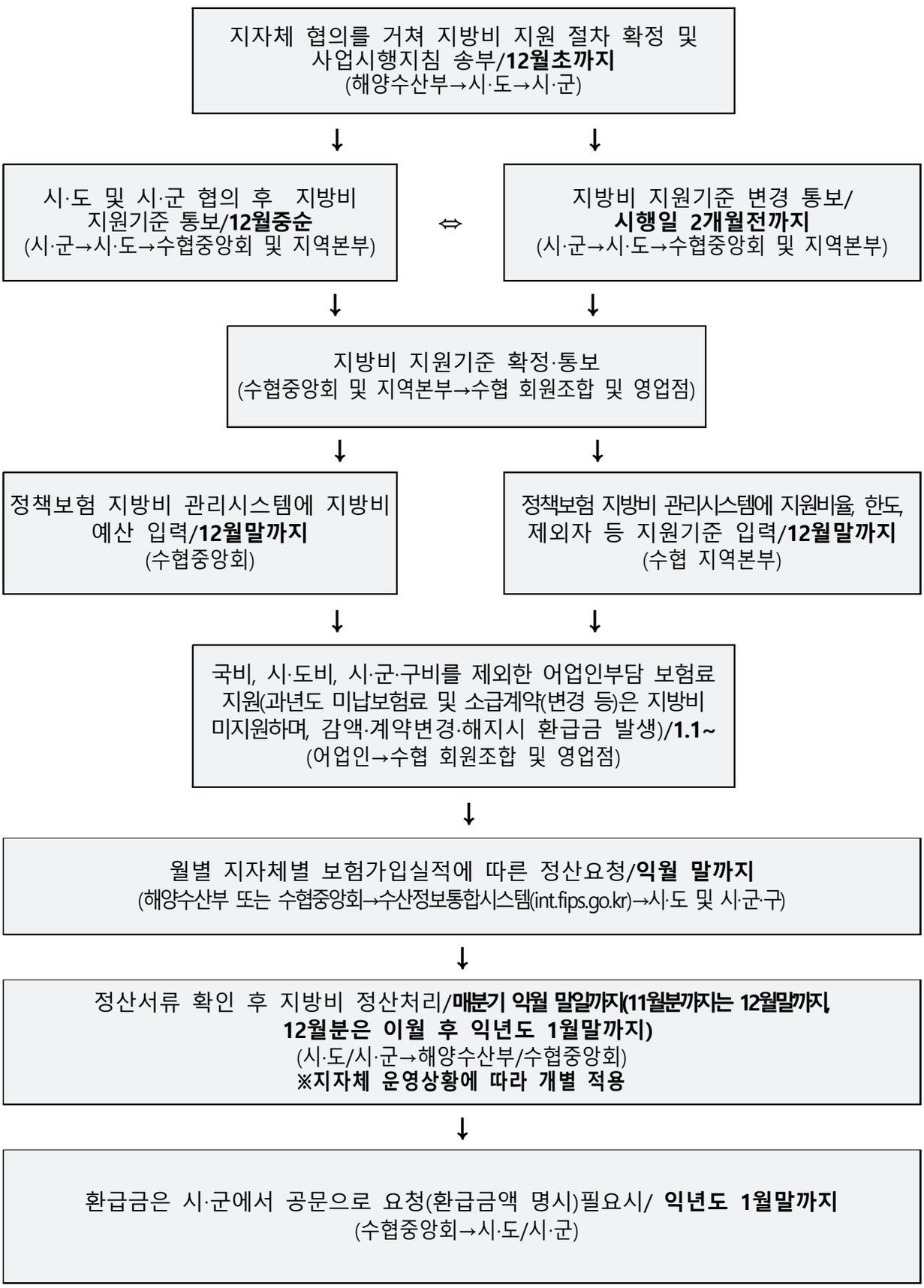

[별표 제3호] 정책보험 지방비 지원 및 처리기준

○ **(지원대상)**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신고를 취득하여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어촌계/법인 포함)로써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자 지원

○ **(지방비 지원비율·한도)** 시·도 및 시·군은 최근 가입현황 사전분석 및 상호 협의하여 예산에 적정한 지원비율 및 어가당 지원한도, 영세어민만 지원, 제외자 명단 등 **지자체별 지원기준 확정 후 수협중앙회로 12월 15일까지 통보**

○ **(지원기준 변경 통보)** 지원비율, 지원한도, 제외자 명단 등 변경사항은 수협중앙회 및 지역본부에 시행일 2개월 전까지 통보, 어가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변경은 최대한 자제(소급적용은 불가)

※ 전산반영 등 시스템 기능개발이 필요한 경우 수협중앙회에 시행일 3개월 전까지 통보

○ **(어가부담분만 납부)** 수협 회원조합 및 영업점은 국비, 시·도비, 시·군비를 제외한 어가자부담만 납부하고, 미수납된 지방비는 월별로 지자체에서 정산 입금

-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계약자가 지방비 지원금이 많은 계약 선택 가능

○ **(지원금 청구)**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는 월별 교부청구서와 정산명세서를 익월 20일까지 수산정보업무포털(www.ext.fips.go.kr)에 게시

- 정산명세서는 지자체 지원보험료, 기정산금액, 미정산금액을 구분표기하며, 지원보험료에 대한 가입 세부 명세를 포함하여 게시
- 사업도중 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지자체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하지 않고 국고지원과 동일하게 정산금액으로 처리

○ **(지원금 정산)** 시군은 대상자 적격여부, 적정 보험료 산정 등 확인 후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정산입금 조치(조기 집행 등 필요시 월별 정산 가능)

★ 수협중앙회에서 부여한 가상계좌에 도, 시군비 입금(선납 포함)

- 정산 편의를 위해 지원예산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 지원보험료를 초과한 금액 선납 가능(선납한 지원보험료에 대해 이자 미반영)

○ **(환급금 재사용)** 계약변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시·도 및 시·군 환급금은 국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계처리(수협중앙회는 정산 요청 시 환급금을 차감하고 정산 요청) 후 예산으로 재사용

- 단, 시·도 및 시·군별 환급금을 세입처리 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에게 익년도 1월말까지 당해연도에 발생한 환급금 세입 처리

※ 수협중앙회에서 12월분 정산요청서·환급액 통보(익년 1.10.) → 시·군에서 수협중앙회에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익년 1.15.) → 수협중앙회에서 입금 처리(익년 1월 말)

○ **(추경예산)** 미 지원된 계약자부터 우선 선착순 지원

※ 시군간 지방비 예산 조정으로 추가된 예산 포함

○ **(잔액 일부 지원)** 어가당 한도금액보다 적게 남은 경우 일부 잔액 지원

○ **(시·군·구비 추가확보)** 시·도비는 미확보, 시·군비만 추가 확보 시 지원 비율은 당초 시·도 및 시·군 지원 비율을 합한 비율 그대로 적용

○ **(예산)** 예산은 지자체 지원보험료의 미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과거 보험가입 실적을 바탕으로 연말 최종 가입실적을 예측하여 반영

- 가입증가로 인해 지방비 예산 부족이 예상될 경우 수협중앙회는 지자체에 신속히 알리고 지자체는 추후 예산확보를 통한 정산 또는 지방비 지원 중단 여부를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에 신속히 통보(시행일 2개월 전까지)

※ 선납한 지원보험료에 대한 이자 미반영될 수 있음

[붙임 1]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현황(◯/반기)

□ 시·군별

(단위: 건, 천원)

시•군	가 입 현 황					지 원 액			비고
	양식방법(어종)	건수	보 험 료						
			합 계	국비	자부담	합 계	도비	시·군비	
계									
00시.군	소 계								
	육상양식(전복)								
	육상양식(넙치)								
	육상양식(강도다리)								
	해상가두리(00, 00)								

□ 어가별

<00시·군>

(단위: 천원)

순번	허가(면허)번호	가 입 자			보험료			계약금액				보험기간	지방비 지원액			비고
		업체명	소재지	계약자명	총계	국비	자부담	주계약	특 약				합계	도비	시·군비	
									수산질병	전기적장치	기타(고수온 등)					
																동일어가

※ 어가별로 작성하되 어가당 허가(면허)가 2개이상 인 경우 비고란에 표기

[붙임 2]

2024년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사업비 정산서

□ 시·군명 : 00시군

(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도비 반납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잔액	이자	

□ 어가별

(단위: 천원)

순번	허가 (면허) 번호	가 입 자			보험료			계약금액				보험 기간	지방비 지원액			비고
		업체명	소재지	계약자명	총계	국비	자부담	주계약	특 약				합계	도비	사·군비	
									수산질병	전기적장치	기타 (고수온 등)					
																동일 어가

22 양식장 첨단 기자재 공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황성수 주무관 박선희	054-880-7710 054-880-7722 054-880-7726

1. 목 적

가. 내수면·해면 양식장 어업환경 변화와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와 정치성 어업의 각종 양식기자재, 액화산소 등의 구입비 지원

2. 근거법령

가.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나.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다.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라. 「관상어산업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산업 사업수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3. 사업개요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내용 : 내수면·해수면 양식, 정치성 어장 기자재, 자동화장비, 어장 표시등, 액화산소 구입비

- 내수면·해수면 양식장 기자재,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 자동화장비(사료혼합기, 사료자동급이기, 수온조절기 등), 양식물 양승기, 로프, 양식어업용 장비 등(인증부표 지원 제외)

다. 지원조건 :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라. 지원규모

- 내 수 면 : 양식장기자재, 금액제한 없음
- 해 수 면 : 각종 양식장 및 정치성 어장 기자재, ha당 1,500천원
- 액화산소 : 톤당 300천원
- 자동화장비 : 개소당 1,000천원

4. 시·군별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714,285	150,000	349,999	214,286	
포항시	190,476	40,000	93,333	57,143	
경주시	27,000	5,670	13,230	8,100	
김천시	5,715	1,200	2,800	1,715	
안동시	22,857	4,800	11,200	6,857	
구미시	66,190	13,900	32,433	19,857	
영주시	5,715	1,200	2,800	1,715	
영천시	2,100	441	1,029	630	
상주시	21,428	4,500	10,500	6,428	
문경시	9,600	2,016	4,704	2,880	
의성군	20,000	4,200	9,800	6,000	
청송군	2,400	504	1,176	720	
영덕군	190,476	40,000	93,333	57,143	
칠곡군	4,200	882	2,058	1,260	
예천군	10,000	2,100	4,900	3,000	
봉화군	3,771	792	1,848	1,131	
울진군	132,357	27,795	64,855	39,707	

5. 사업시행

가. 신청 자격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양식산업발전법, 관상어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하고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축제식 포함), 정치성 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나. 신청 방법

-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군에 사업자 선정 신청서(붙임 1)를 제출

다. 구비 서류

- 사업자 선정 신청 시 : 사업자 선정 신청서 및 관련 면허, 허가, 신고필증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자부담예치증명서, 사업계획서
- 사업완료 시 : 사업완료계(준공 전·중·후 사진 등 첨부), 계산서(증거서류)

라.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집행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규모에 따라 사업 물량을 조정, 배정할 수 있음
- 사업집행 주체는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농정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마. 지원대상

- 내수면·해수면 양식장 기자재, 양식물 양승기, 로프, 액화산소, 자동화장비 등 양식기자재 이외에도 사업집행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등

바.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 사업자 선정 이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외
-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양식어업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을 양식하다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적발일로부터 5년간 지원 제외

6. 사업비 지원

가. ha당 "3호 라"의 범위 내 지원하고 시·군별 지원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대 이상 지원도 가능하며, 초과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한다.

나. 사업비 지원 한도 내에서 양식기자재 등 지원 물량을 조정 지원할 수 있다.

다. 시장·군수는 세대별(가구당) 지원규모(한도액)를 제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라. 각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집행주체가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사업비의 20%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증·감액하여 추진이 가능하며,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설치 및 사업비 정산

가. 사업자는 사업집행 주체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받은 후 공급자에게 설치 요청을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양식장기자재를 공급자로부터 기기를 받아 설치 완료 후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예산회계관련 법률 등의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행정사항

가. 사업집행주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세부사업별(해수면양식장기자재, 내수면양식장기자재, 액화산소지원) 예산내역 및 사업량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후관리는 해양수산사업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다. 사업집행주체는 이 지침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효율성과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추진 상황보고(붙임 3)를 매 반기별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1]

사업자 선정 신청서

1. 사 업 명 : 양식장 기자재 공급

2. 지원 대상자

가. 주 소 :

나.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다. 어업명 : (면허번호 : -)

라. 양식장 규모(품종) :

3. 사업계획

가. 기자재 구입

- 종류, 수량 : 식, 개, m 금액 : 원

나. 자동화장비 구입

- 종류, 수량 : 식, 개 금액 : 원

다. 액화산소 : 수량 톤 금액 : 원

4. 사 업 비

가. 사업비 총액

- 보조금 : 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원

5. 사업기간 : . . . ~ . . .

위와 같이 양식장 기자재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첨부서류 : 어업면허, 허가, 신고필증 사본 1부

시장, 군수 귀하

[붙임 2]

2024년 양식장기자재 공급 사업 대상자 선정 내역

(시·군명)

연번	사 업 대 상 자				지 원 금 액(천원)				사업 내역	비고
	어업명 (면허, 허가, 신고번호)	양식 품종	성명	주 소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00읍(면)면 00로(길) 00						

[붙임 3]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년도 반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사업량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세부집행내역

지원 어가수	세부집행내역			비 고
	기자재명	사 업 량	금액(천원)	

7.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 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 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 내용은 육하 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23 수산재해 예방 및 방제비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황성수 주무관 김장언	054-880-7710 054-880-7722 054-880-7723

1. 목 적

가. 수산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사전대응 방제장비·물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 지원

2. 근거법령

가.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3. 사업개요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내용 : 수산재해(적조, 이상수온 등)관련 방제물품, 예찰비 등

다. 지원단가 : 시·군별 자체조사 후 결정

라.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4. 시·군별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식, 천원)

시 군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4	70,000	21,000	49,000	-
포 항 시	1	49,000	14,700	34,300	
경 주 시	1	3,000	900	2,100	
영 덕 군	1	6,667	2,000	4,667	
울 진 군	1	11,333	3,400	7,933	

5. 사업시행

가. 사업계획수립

- 사업집행주체는 수산재해 발생 시 방제물품의 확보·관리 및 집행계획 등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예산집행

- 수산재해 방제물품

  • 수산재해 방제물품이라 함은 각얼음, 산소공급기, 순환펌프, 액화산소(평상시 수준의 사용량은 제외, 7 ~ 9월 또는 적조·이상수온 예비주의보 단계부터 경보 발령기간 중 추가 사용량에 한함) 및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하는 물품으로 제한하며, 국비사업(이상수온대응, 적조방제 등)을 우선 집행한다.

  • 방제물품 등을 개별 어업인에게 보급할 때에는 사업비의 20% 이상을 어업인이 자기 부담을 하여야 한다.

- 적조, 이상수온 예찰 유류비 등

  • 예찰 유류비와 자재 등의 처리·운반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집행주체는 총예산의 50%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6. 사업비 정산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기타사항

가. 사업집행주체는 이 지침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효율성과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상황보고(붙임 1)를 반기별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1]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　　년도　　반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사업량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 획	실 적	

6. 세부집행내역

지원어가	품목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비　고
계					

7.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 계획은 원인 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집행실적은 실 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24 연안해조장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황성수 주무관 장혜정	054-880-7710 054-880-7722 054-880-7725

1. 목 적

가. 연안어장에 갯녹음 현상의 확대로 인해 해조군락이 급감함에 따라 인위적인 해조장을 조성하여 연안어장 생태계를 조기에 회복시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2. 근거법령

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나.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3. 사업개요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지구 : 연안해역(마을어장 또는 협동양식어장)
다. 사업내용 : 해조이식용 조림초 설치 및 수중 저연승시설, 자연석투석, 바다숲 조성지 사후관리 등
라.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4. 시·군별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식, 천원)

시 군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4	667,200	200,000	467,200	
포 항 시	1	270,000	81,000	189,000	
경 주 시	1	70,000	21,000	49,000	
영 덕 군	1	156,000	46,800	109,200	
울 진 군	1	171,200	51,200	120,000	

5. 적지조사 및 사업지구 선정

가. 적지조사

- 사업집행주체는 관할구역 내 갯녹음 현상의 발생으로 연안암반의 해조군락이 급격히 감소한 해역 및 인위적으로 연안해조장을 조성하여 수산생물의 생태계 복원이 가능한 해역을 대상으로 시·군 공무원과 어업인 대표(어촌계 대표 및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등)가 참여하여 해저지형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여 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대상해역은 굴곡이 심하거나 높은 암반이 없고, 낮은 암반이나 작은 바윗돌로 조성된 평탄한 해역을 선정하며, 저질이 사질인 경우에는 모래 이동이 심하므로 제외하여야 한다.
- 바다숲조성 및 자연석투석 해역(이하 “바다숲 조성해역”) 중 해조보식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해역은 수중 잠수조사 후 결과에 따라 사업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지구 선정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지구 선정 시 조속한 생태회복을 위해 사후관리(보식 등)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신규로 바다숲 조성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 주체는 적지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해역 중에서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 갯녹음 현상의 발생해역 중 더욱 심한 지구
  - 해조장 조성지역 중 해조류가 부착하지 못하거나 급격히 탈락하여 보식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해역
  - 마을어업 중 자율관리어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지구
  - 수산자원조성 및 해적생물구제 실적이 우수하고, 공동어장 관리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어촌계의 마을어장 또는 협동양식어장

6.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은 행정규칙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나. 시설방법

- 사업지구는 해역별 특성, 먹이장으로서의 효과, 사후관리 등을 감안 개소 당 3ha 이상 조성하되, 지역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사업집행 주체는 시설지구가 면허 받은 어장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시설지구는 해조류의 보호 및 생장 등을 고려하여 수심 10m(±2) 해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수심 8m 이하)로 할 수 있다.
- 해조이식용 조림초(이하 "조림초")는 효과가 입증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시설의 설계, 시행방법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자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조림초에 이식하는 해조류는 대황, 감태, 곰피 등 다년생을 사용하고, 수중 저연승시설에는 미역, 다시마 등 단년생 또는 다년생 해조류를 병행하여야 한다.
- 이식용 해조류는 10cm 이상 성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식 시에는 해조류가 부착된 로프가 단단히 고정되어 해조류의 뿌리가 조림초에 잘 착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마을·협동양식어장의 자연석 투석의 크기는 1㎥급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 조림초 설치 및 해조류 보식작업 전에 반드시 불가사리, 성게, 고둥류 등 해적생물을 구제하여야 한다.
- 조림초 시설 시 조식동물의 먹이 제공을 위한 수중 저연승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다숲 조성해역에 대한 해조류 보식작업은 기 설치된 조림초 청소작업을 실시한 후 보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 조림초 설치 및 해조류 보식작업을 실시한 후에는 해적생물 구제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사업 후 2개월 동안 매월 1회, 이후 6개월간 2개월마다 1회)

다. 사업비 집행

- 사업비라 함은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 자재구입비, 해조류이식비, 작업비, 감리·감독비, 운송비, 사후관리비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하는 부대경비를 말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예산회계 법규,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 노임단가 등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에 따라 사업계획서, 설계 도서를 작성·심의하게 하고, 공사를 감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비 집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과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한다.

라. 사후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연안해조장조성 해역에 대하여 먹이장으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로 하는 시설물보강, 해조류이식(보식), 조식동물구제 등 사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 연안해조장 해역에 대하여는 해조류 등을 먹이로 하는 조식동물(성게, 고둥류, 군소 등)을 일정수준 이하의 서식밀도로 유지하여 조성된 바다숲을 보호, 확산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조성 당해 연도에는 수시로 구제작업을 실시하여 해조류의 생존율을 제고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이식 해조류의 생장(다른 해조류에 비해 성장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성 해조류) 및 생존율(자연재해 등 조성 당시와 비교 50% 미만인 경우)이 불량한 경우 해조류 등을 보식하고, 수중 저연승시설에 사용한 다시마 등의 갯녹음 현상이 진행되면 어장청소를 실시하고, 이듬해 다시 해조류를 이식하여 조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행정사항

가. 사업집행 주체는 사업추진상황 및 예산집행현황을 포함한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서(붙임 1)를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 종료시에는 사업지구, 사업내역, 사업량, 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이 포함된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집행 주체는 바다숲 조성해역에 대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실태를 조사하고 효과가 미흡한 조성지에 대하여는 당초 목적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이 지침에 정한 것 이외에 사업집행 관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집행 주체가 별도의 세부시행 요령을 정할 수 있다.

[붙임 1]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년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사업지구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사업량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 획	실 적	

6. 세부집행내역

사업지구별	세 부 집 행 내 역			비 고
	사업내역	사 업 량	금액(천원)	
계				

7.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25 마을어장 관리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 당 기 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 화 번 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황성수 주무관 박선희	054-880-7710 054-880-7722 054-880-7726

1. 목 적

가. 수산업 여건변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마을어장(내수면 공공용수면 포함)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감소된 어업자원 증강

나. 수산종자방류, 갯바위 닦기(해안청소), 해적생물 구제, 바다비료 투하사업, 어장관리 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통한 마을어장의 종합적 관리로 어촌계 소득증대 기여

2. 근거법령

가.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나.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보조사업의 대상)

다.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3. 용어의 정리

가. **「사업비」**라 함은 갯바위 닦기(해안청소), 해면·내수면 수산종자방류사업에 필요한 비용, 해적생물의 수매·처리·기타 부대비(운송비 등), 바다비료 공급에 쓰이는 비용, 마을어장 관리를 위한 CCTV 등 설치비용과 사업집행 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나. **「해적생물」**이라 함은 **불가사리류**를 일컫는다. 다만, 사업집행 주체가 지역적인 특성과 인공어초시설, 바다목장, 바다 숲(해중림 포함) 조성지 등을 감안하여 유해생물 및 조식동물을 포함할 수 있다.

4. 사업개요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 다만,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사업의 집행을 읍·면·동장, 지구별 수협장(어촌계),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에 사업을 대행, 위탁 할 수 있다.

나. 지원범위 : 어촌계 마을 및 협동양식어장, 내수면(공공용 수면)

다.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라. 지원기준

- 수산종자방류사업은 「2024년 경상북도 수산종자방류 세부지침」에 따른다.
- 마을어장 갯바위 닦기의 작업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로 하며, 지원단가는 「정부노임단가기준」의 '특별인부' 단가를 시급으로 환산하여 작업시간만큼 지급한다. 단, 해녀의 경우 '잠수부' 단가의 60%를 기준으로 작업시간만큼 지급한다.

※ 단가 산정 예시 : '23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 특별인부 시급(208,527 ÷ 8 ≒ 26,000) × 작업시간

- 해안청소 : 당해년도 최저시급 × 작업시간
- 해적생물 수매비 : 1kg당 2,000원

5. 시·군별 사업비 지원 내역 : 별첨

6. 사업시행

가. 갯바위 닦기 사업 중 노임단가를 제외한 비용은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부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부대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갯바위 닦기 사업 중 해안청소 실시에는 세부 사업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해적생물 구제 사업의 사업비는 수매, 처리, 기타운송(부대) 경비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사업비의 집행은 수매자 별로 계좌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라. 각 사업비 초과분에 대하여는 시·군비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각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집행주체가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사업비의 20%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증·감하여 추진이 가능하며,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바다비료 공급사업의 시행

1) 살포수역 및 방법

가) 대 상 : 연안어장내 갯녹음 발생지역

나) 적 지 : 해중림 조성수역이거나 수심 5~10m 수역

다) 시 기 : 3~12월(대형 갈조류 포자발생 및 유엽 초기 성장 시기)

라) 방 법 : 잠수부, 나잠 등에 의한 수중살포 또는 선상살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인건비, 사후관리비(촬영비 등), 용선료, 기타 비용을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마) 살포기준 : ha당, 1톤 이상 살포

2) 적지선정 및 기술지원

가) 갯녹음(백화현상) 초기 발생지역 또는 진행 중인 곳과 그 외 적지를 선정

나) 바다비료(시비재) 살포효과 제고를 위해 시비 대상해역의 특성, 살포방법·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살포

3) 효과조사

가) 사업집행주체는 바다비료 살포사업 효과조사를 위해 바다비료 살포 전·후의 동일지역에 대해 수중촬영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기록하여 그 결과물은 5년간 보존한다.

7. 보조금 교부결정

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

8. 사업의 관리

가.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업무대행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의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한다.

나. 감독공무원은 해적생물 수매시 현지 확인·검수하고 수매일지(붙임 3)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 사업집행주체는 이 지침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효율성과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 사업집행 주체는 해적생물의 처리 시 환경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게 처리하거나 수매한 해적생물을 농업용 비료로 재활용 처리하여 수매한 해적생물로 인한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사업집행주체는 지역별 원활한 해적생물의 수매를 위하여 필요할 시에는 읍면 직원, 수협 담당직원 또는 어촌계장으로 하여금 검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바. 수협장은 조합담당직원 또는 어촌계장으로 하여금 해적생물의 검수가 완료되면 수매자 별로 수매영수증(붙임 4)을 발급하여야 한다.

사. 갯바위 닦기(해안청소) 등 어촌계원이 참여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보조금은 보조 사업자 예금 계좌로 지급하되, 지급한 날로 30일 이내 사업에 참여한 어촌계원 개인 예금계좌로 재송금한 내역*이나 현금을 수령한 증빙서류(붙임 5)를 사업집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내역 : 무통장입금내역서,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 이체 확인이 가능한 일체 서류

9. 행정사항

가. 사업집행주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세부사업별(수산종자방류, 갯바위닦기, 해적생물 구제, 어장관리시설설치, 바다비료공급) 예산내역 및 사업량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추진 상황보고(붙임 1)를 매 분기별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첨]

2024년 마을어장관리사업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시 군 별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계	1,000,000	300,000	700,000	
포항시	441,000	132,300	308,700	
경주시	70,000	21,000	49,000	
김천시	5,333	1,600	3,733	
안동시	30,000	9,000	21,000	
구미시	16,000	4,800	11,200	
상주시	16,000	4,800	11,200	
문경시	15,000	4,500	10,500	
의성군	15,000	4,500	10,500	
청송군	18,333	5,500	12,833	
영양군	20,000	6,000	14,000	
영덕군	127,667	38,300	89,367	
청도군	5,667	1,700	3,967	
칠곡군	5,000	1,500	3,500	
예천군	10,000	3,000	7,000	
봉화군	15,000	4,500	10,500	
울진군	130,000	39,000	91,000	
울릉군	60,000	18,000	42,000	

※ 어장관리시설 설치사업은 자부담 10% 부담하여야 함

[붙임 1]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년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어촌계수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사업량	도비	시군비	자담	계

6.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어촌계명	경제성종자방류			해적생물구제			마을어장관리시설		
	품종	방류량 (천마리)	사업비	품종	수량(톤)	사업비	시설명	수량(대)	사업비
계									

어촌계명	갯바위 닦기			해 안 청 소			비료공급		
	고용인원	면적(ha)	사업비	고용인원	수량(톤)	사업비	고용인원	수량(톤)	사업비
계									

7.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세부집행내역의 실적사항은 해당연도 누계가 아닌 분기별로 기재한다.
4.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붙임 2]

보조금 정산서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급 성명 :

3. 확인자 직급 성명 :

4. 시·군명 :

5.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물량	예산액(총 사업비)				집 행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첨부 : 사업비 집행내역서

[붙임 3]

해적생물 수매일지

년 월 일(요일)	결재	감독자	담 당	과 장

포 획 자		종 류	수매량 (kg)	수매금액	선 명 (톤수)	어업종류	비 고
주 소	성 명						

[붙임 4]

수 령 확 인 서

[ ] 어촌계	참여사업	
	근로기간	
	수령장소	
	본인은 위 사업에 참여하여 대가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연번	수령 날짜	금 액 (원)	수 령 인	서 명(자필)
1				
2				
3				
4				
5				

26 수산종자 매입방류(전환)

▶ 이 내역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황성수 주무관 박선희	054-880-7710 054-880-7722 054-880-7726

1. 사업목적

가. FTA 등 국제 수산업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응 및 기후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을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자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생산력 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

2. 근거법령

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3. 사업개요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관리주체 : 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 등 어업인들로 구성되어 사업해역을 관리하는 단체

다. 지원내용 : 해면, 내수면 공공용 수면 및 마을어장 내 종자방류

라. 지원조건 : 도비 80%, 시군비 20%

4. 시·군별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계	1,018,000	815,000	203,000	'20년 부터 균특사업비 도비 전환
포항시	168,000	135,000	33,000	
경주시	45,000	36,000	9,000	
안동시	100,000	80,000	20,000	
영양군	25,000	20,000	5,000	
영덕군	200,000	160,000	40,000	
울진군	300,000	240,000	60,000	
울릉군	180,000	144,000	36,000	

5. 사업시행

가. 적지선정 및 기술지원

- 종자가 자연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 방류대상 품종이 서식하는 수역 또는 방류종자의 생존율이 높은 수역 등 생태 및 지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집행주체가 적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적지조사 가능 업체에 조사의뢰 및 기술지원 협조 요청

나. 사후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종자방류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리주체가 역할을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경우 방류 대상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사업해역에 대하여 해적생물 구제활동을 실시하여 방류종자의 최적조건을 조성해야 하며, 포획금지기간, 금지체장 등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어장관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4년 경상북도 수산종자방류 세부지침을 준용한다.

5.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집행절차, 정산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예산회계 관련 법률 등의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나. 시장·군수는 사업완료시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비는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과 관련한 종자구입 및 적지조사, 사전·사후영향조사비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6. 행정사항

가.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추진 상황보고(붙임 1)를 매 분기별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업집행주체는 이 지침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효율성과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붙임 1]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　　년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사업량	도비	시군비	자담	계

6. 세부집행내역

품　　종	수량(천마리)	단가(원)	집행금액(천원)	방류장소	비 고
계					

7.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 계획은 원인 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집행실적은 실 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붙임 2]

보조금 정산서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급 성명 :

3. 확인자 직급 성명 :

4. 시·군명 :

5.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물량	예산액(총 사업비)				집 행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첨부 :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27 동해안 해삼양식산업 육성(전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황성수 주무관 박선희	054-880-7710 054-880-7722 054-880-7726

1. 목 적

가. 경북 동해안 해삼밭 단지를 집중 조성하여 어촌계 소득 증대

2. 근거법령

나.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3. 사업개요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관리주체 : 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 등 어업인들로 구성되어 사업해역을 관리하는 단체

다. 지원조건 : 도비 80%, 시군비 20%

4. 시·군별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계	862,000	690,000	172,000	'20년 부터 균특사업비 도비 전환
포항시	112,000	90,000	22,000	
경주시	125,000	100,000	25,000	
영덕군	300,000	240,000	60,000	
울진군	125,000	100,000	25,000	
울릉군	200,000	160,000	40,000	

5. 사업시행

가. 방류종자 크기 및 시기

품종명	방류크기	방류시기	비고
해삼 (홍해삼)	체중 1.0g~7.0g	3월~5월, 9월~12월	여름철 방류시기는 사업효과를 위하여 1개월 축소함

※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당해연도 생산된 우량 종자를 9~12월중 방류 권장

나. 유전자검사

- 종자생산자는 방류종자 친자확인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2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실시하여야 한다.(홍해삼 제외)

(1) 종자 생산을 완료한 후, 모삼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종자생산 확인 담당기관에 통보하고, 종자 방류 전 사전현지확인 시 방류종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기존 모삼과 친자일치 여부 검증

(2) 종자 생산을 완료한 후, 모삼을 종자생산확인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에탄올에 고정하여 보관하고(붙임 3참조), 종자 방류 전 사전현지확인 시 보관 중인 모삼과 방류종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친자일치 여부 검증

- 방류담당 공무원은 사전현지확인 시 방류대상 종자 유전자검사용 시료의 채취와 발송 과정에 입회하여야 한다.
- 유전자검사비용은 해당 종자생산업체에서 부담한다.

다. 방류금지 종자

- 질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해삼종자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 된 해삼종자
- 유전자 분석을 통한 친자확인이 되지 않은 해삼종자(홍해삼제외)

라. 사업추진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종자생산자는 유전자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2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모삼에 대한 유전자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

(2)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에 유전자 검사를 위한 모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자

- 낙찰자의 계약 및 대금지급은 친자확인검사 기준(80%)이 입증된 종자를 대상으로 한다.
- 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해삼방류사업은 본 지침을 준용한다.
- 그 외 관련된 사항은 2024년 경상북도 수산종자방류 세부지침을 준용한다.

마. 적지선정 및 기술지원

- 종자가 자연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 자연산 해삼이 서식하는 수역 또는 방류종자의 생존율이 높은 수역 등 해삼의 생태 및 지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집행주체가 적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적지조사 가능 업체에 조사의뢰 및 기술지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바. 사후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종자방류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리주체가 역할을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사업해역에 대하여 해적생물 구제활동을 실시하여 해삼 서식의 최적조건을 조성해야 하며, 사업해역에서 무단으로 해삼 채취를 방지하고, 포획금지기간, 금지체장 등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어장관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집행절차, 정산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예산회계관련 법률 등의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나. 시장·군수는 사업완료시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비는 해삼종자방류사업와 관련한 종자구입 및 적지조사, 사전·사후영향조사비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7. 행정사항

가.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추진 상황보고(붙임 1)를 매 분기별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업집행주체는 이 지침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효율성과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붙임 1]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　　년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사업량	도비	시군비	자담	계

6. 세부집행내역

품　　종	수량(천마리)	단가(원)	집행금액(천원)	방류장소	비 고
계					

7.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 계획은 원인 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집행실적은 실 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붙임 2]

보조금 정산서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급 성명 :

3. 확인자 직급 성명 :

4. 시·군명 :

5.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물량	예산액(총 사업비)				집 행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착준공

※ 첨부 :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붙임 3]

해삼 유전자검사 주의사항

1. 유전자검사 시료 채취 및 보관

가. 친자 확인용 유전자 조사 샘플 채취는 종자생산현장에서 어업기술원 입회하에 종자생산업체가 실시한다.

나. 시료 채취에 사용하는 가위나 칼 등의 도구는 개체마다 증류수나 알코올 등으로 세척 또는 소독 후 사용하고 코니컬 튜브 뚜껑은 알코올이 새지 않도록 잘 조여야 한다.

다. 시료 준비는 종자생산에 사용된 모든 어미(암컷) 항문과 입부분을 대략 2~3cm를 채취하고, 각 시료는 50㎖ tube에 넣어 순도 95% 이상의 알코올로 채워, 상자에 넣고 봉인한 후 4℃ 냉장실에 보관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실온에서 보관한다.

라. 모삼 시료채취 작업 순서와 주의할 점

1) 해삼 항문 부분을 확인하여 항문과 입쪽 부분에서 2cm 이상 잘라낸 후 알코올에 고정한다.

2) 자른 시료는 튜브에 넣고 95% 이상의 에탄올로 고정하여야 하며, **일주일 후 반드시 새로운 에탄올로 교환 후 보관한다.**

3) 채취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각각의 해삼 시료를 채취 후 티슈나 천으로 잘 닦은 후 재사용 하여야 한다.

4) 해삼 1마리의 시료는 1개 튜브에 넣고, 절대 여러 마리의 시료를 1개의 튜브에 넣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에탄올은 해삼 시료가 충분히 잠기도록 넣어야 하며, 에탄올과 시료가 잘 섞이도록 위 아래로 가볍게 흔들어 준다.

6) 에탄올에 고정된 해삼 시료는 냉장고 또는 암실에 보관하며 햇빛에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유전자검사 시료 보관

가. 종자생산에 사용한 어미 시료는 어업기술원, 종자생산업체 공동으로 봉인하고 생산업체에 보관하며, 보관중인 시료는 1주일 후 어업기술원 입회하에 종자 생산자가 에탄올을 교체하고 다시 봉인하여 어미 시료 유전자 검사 전까지 종자 생산업체에서 보관한다.

나. 어업기술원은 어미 시료의 보관 및 봉인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다. 시료 채취 및 보관 중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종자생산업체에서 진다.

3. 유전자 검사 의뢰

가. 유전자 검사는 낙찰 후 방류 전 사전 현지 확인 시 보관 중인 모삼과 방류계획 치삼을 함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종자생산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고, 운송 중 시료가 훼손되었을 경우 책임은 종자생산업체에서 진다.

28 동해대게 자원회복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황성수 주무관 장혜정	054-880-7710 054-880-7722 054-880-7725

1. 목 적

가. 자원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대게의 산란·서식장 보호 및 조성을 통해 대게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토록 하여 동해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2. 근거법령

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나.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3. 사업개요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지구 : 연안해역

다. 사업내용 : 동해대게 자원회복을 위한 산란·서식장조성, 적지조사, 사후관리 등

라. 지원조건 : 도비 65%, 시·군비 35%

4. 시·군별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식, 천원)

시 군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2	2,000,000	1,300,000	700,000	
영 덕 군	1	1,000,000	650,000	350,000	
울 진 군	1	1,000,000	650,000	350,000	

5. 적지조사 및 사업지구 선정

가. 적지조사

- 사업시행주체는 관할구역 내 대게자원회복이 가능한 해역을 대상으로 시·군 공무원과 지역어업인 등이 참여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사업 예정수역에 대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적지조사를 의뢰하여 해역에 적합한 어초(3배수)를 추천받아야 한다.

나. 위원회 구성

- 사업집행주체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원회복 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자원회복 담당과장
  2. 공단 또는 연구기관 등 인공어초 전문가 4인 이내
  3. 수산자원조성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인 이내
  4. 자원회복에 관한 실증적 경험이 있는 어업인 대표 3인(해당해역 어촌계 대표 포함)이내. 다만, 자원회복에 대한 실증적 경험이 있는 어업인이 없을 경우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자 3인 이내
  5. 해양토목공학, 토목공학 및 해양공학분야 전문가 2인 이내
  6. 해양생물분야 전문가 2인 이내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2인 이내

다. 위원회 기능

-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3배수 추천을 받은 어초의 시설계획(어초의 종류, 시설예정수역, 시설물량, 시설방법,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다) 및 변경에 관한 심의
- 자원회복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방안에 관한 자문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 자원회복 위원회의 어초 심의위원은 어초시설계획 심의시 붙임1의 어초시설 심사평가표 순위에 따른다.
- 자원회복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의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6.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은 행정규칙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나. 시설방법

- 사업지구는 해역별 특성, 대게자원회복이 시급한 지역,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조성한다.
- 대게자원회복사업을 위한 인공어초 선정시 효과가 입증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계, 시행방법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자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다. 사업비 집행

- 사업비라 함은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 자재구입비, 작업비, 감리·감독비, 운송비, 사후관리비 및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하는 부대경비를 말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예산회계 법규,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 노임단가 등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에 따라 사업계획서, 설계 도서를 작성·심의하게 하고, 공사를 감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비 집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과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한다.

라. 사후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대게자원회복사업이 시행된 해역에 대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7. 행정사항

가.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추진상황 및 예산집행현황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 종료시에는 사업지구, 사업내역, 사업량, 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이 포함된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집행주체는 대게자원조성사업이 시행된 해역에 대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실태를 조사하고 효과가 미흡한 조성지에 대하여는 당초 목적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이 지침에 정한 것 이외에 사업집행 관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집행 주체가 별도의 세부시행 요령을 정할 수 있다.

[붙임 1]

20 년 어초시설 심사평가표

해역

○ 시설적지 : 어류용 · 패조류용 · 어패류용 · 해중림어초용 · 기타어초용

구 분	시설계획 (1안)	시설계획 (2안)	시설계획 (3안)
시설 개요	· 어초명: · 시설물량: ha/단지 · 표준시설량: 개/단지	· 어초명: · 시설물량: ha/단지 · 표준시설량: 개/단지	· 어초명: · 시설물량: ha/단지 · 표준시설량: 개/단지

평 가 항 목																		
적합성(30)	30	25	20	15	10	5	30	25	20	15	10	5	30	25	20	15	10	5
경제성 및 적정성(40)	40	35	30	25	20	15	40	35	30	25	20	15	40	35	30	25	20	15
안정성 및 내구성(30)	30	25	20	15	10	5	30	25	20	15	10	5	30	25	20	15	10	5
합 계																		
순 위																		
환산점수																		

<종합의견>

00어초위원 0 0 0 (인)

※ 붙임 자원회복 시설사업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시설계획(안)별 5점씩 순차적으로 차등 부여(동점 불가)
※ 시설계획(안)별로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총점(합계)으로 순위 결정
※ 환산점수는 순위별로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 부여
※ 동순위의 경우 환산점수는 평균값 적용(ex. 공동 1순위 2개 어초 2.5점, 공동 2순위 2개 어초 1.5점)
※ **위원별 환산점수의 총합이** 동점인 경우 다수위원이 1순위로 선정한 어초를 우선하고, 후순위로 합계점수의 총합을 적용하며, 이 또한 동점인 경우에는 해당 어초만을 대상으로 재평가한다.

인공어초 시설사업 심사 평가 항목

1. 적합성(30)

○ 시설예정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생물과 어초의 기능에 대한 상관성이 높은 경우 우선함

- 어초와 시설예정 해역에 서식하는 대상종의 위집, 서식, 생육, 부착의 적합 정도
- 어초의 구조와 대상종의 생태특성과의 조화성
- 어초와 사업목적의 부합하는 정도

2. 경제성 및 적정성(40)

○ 단위 규격 당 제작단가가 경제적인 경우 우선함

- 단위 면적(패조류용 · 기타) 또는 단위 용적(어류용)당 제작단가 비교

○ 사업목적에 따라 물량이 적정한 경우 우선함

○ 사업구역 내 제작, 운반, 시설 등 작업의 용이성 및 경제성

3. 안정성 및 내구성(30)

○ 시설해역의 특성상 전도, 파손, 침하, 매몰 등의 현상이 적은 구조의 어초 우선함

○ 어초의 재질 및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시설해역에서 어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내구성)이 긴 어초

[붙임 2]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년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사업지구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사업량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 획	실 적	

6. 세부집행내역

사업지구별	세 부 집 행 내 역			비 고
	사업내역	사 업 량	금액(천원)	
계				

7.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29 내수면 토속어류 보호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황성수 주무관 박선희	054-880-7710 054-880-7722 054-880-7726

1. 목 적

가. 내수면의 어류와 어린 고기들을 포식하는 유해어종을 퇴치하여 유용 어자원 증강

2. 근거법령

가. 「내수면어업법」 17조(보조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보조사업의 대상)

3. 사업개요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다만, 내수면어업계, 어업인단체, 전문처리업체 등에 위탁·대행 할 수 있다.)

나. 사업내용 : 내수면 유해어종 구제비용 지원

- 유해어종 수매비는 1kg당 5,000원으로 한다.
- 내수면 어업인이 어로작업 중 혼획되는 유해어종 수매
- 사업집행주체가 유해어종 퇴치를 위해 실시하는 퇴치 작업의 포획물 수매
- 수매한 유해어종은 폐기처리(매몰, 액체비료, 분쇄 등)하여, 수매한 유해어종으로 인한 2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 주체는 필요시 수매 비용 외 유해어종의 수송,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총 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라. 용어정의

- 「사업비」 라 함은 유해어종의 수매, 처리, 기타부대(운송)비 등을 말한다.
- 「유해어종」 이라 함은 외래어종(블루길, 베스, 붉은귀거북), 포식어종(누치, 꺼리)을 일컫는다. 단, 사업집행 주체가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어종을 포식어종에 포함할 수 있다.

4. 시·군별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톤, 천원)

시 군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20	100,000	30,000	70,000	
안 동 시	3	15,000	4,500	10,500	
구 미 시	3	15,000	4,500	10,500	
상 주 시	3	15,000	4,500	10,500	
문 경 시	2	10,000	3,000	7,000	
의 성 군	4	20,000	6,000	14,000	
청 송 군	2	10,000	3,000	7,000	
성 주 군	1	5,000	1,500	3,500	
칠 곡 군	1	5,000	1,500	3,500	
예 천 군	1	5,000	1,500	3,500	

5. 사업비 교부 및 집행

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예산회계관련 법률 등의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나. 사업비는 내수면 유해어종의 수매, 처리, 기타부대(운송 등) 경비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사업비의 지원한도를 초과할 때는 시·군비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6. 행정사항

가.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추진 상황보고(붙임 1)를 매 반기별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업집행주체는 이 지침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효율성과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붙임 1]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　　년도　　반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사업량	도비	시군비	자담	계

6. 세부집행내역

종　류	수량(kg)	단가(원)	금액(천원)	비　고
계				

7.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 계획은 원인 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집행실적은 실 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30 내수면 어선장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황성수 주무관 박선희	054-880-7710 054-880-7722 054-880-7726

1. 목 적

가. 내수면 어업자의 고령화, 어선 노후화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재산보호 등을 위해 기관 등 장비지원을 통한 열악한 어업능률 향상 및 안전조업 강화

2. 근거법령

가. 「내수면어업법」 17조(보조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보조사업의 대상)

3. 사업개요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어선등록을 필한 어선을 소유한 자

다. 지원조건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라. 사업내용 : 내수면 어선장비 지원

- 어선장비지원사업의 지원 품목은 기관(선외기 포함)등으로 하며, 이외 품목에 대하여는 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4. 시·군별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대, 천원)

시 군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12	135,000	24,300	56,700	54,000
안 동 시	3	45,000	8,100	18,900	18,000
구 미 시	2	20,000	3,600	8,400	8,000
의 성 군	1	10,000	1,800	4,200	4,000
청 송 군	2	20,000	3,600	8,400	8,000
성 주 군	1	10,000	1,800	4,200	4,000
칠 곡 군	2	20,000	3,600	8,400	8,000
예 천 군	1	10,000	1,800	4,200	4,000

5. 사업시행

가. 추진체계

(1) 도

(가)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나) 사업물량 및 예산배정

(다) 사업추진상황 점검·확인

(라) 사업결과 취합

(2) 시·군

(가) 세부사업집행지침 수립·시행

(나) 사업자 확정(변경)

(다) 사업신청 접수

(라) 장비설치 지도 및 완료확인

(마) 지원금 지급 및 정산

(바) 사업결과 취합 및 정산

나. 사업자 선정

(1) 어선장비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사업신청서(붙임 1)에 의한 사업자 신청·접수

(2)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그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확정하여야 함.

(3) 사업주체가 인정하는 경우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농정심의회 등)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타당성 여부 검증을 위해 확인 조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다. 우선순위

(1) 호우, 태풍 등에 의한 피해로 어선 기관 교체가 필요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2) 본인 명의로 어선 소유기간이 오래된 자, 동일 순위자인 경우 선령이 오래된 어선을 소유한 자로 한다.

(3) 시장·군수가 필요시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지원대상 제외

(1) 내수면어업법, 어선법,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경고처분 제외)

(2) 어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방치된 어선

(3) 최근 2년 이내(사업자 선정일 기준)에 유사한 사업의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은 자

마. 사업비 집행방법

(1) 사업비는 장비설치에 필요한 주요기기 및 설치비용 등을 포함한다.

(2) 사업비 한도는 척당 10백만원으로 하며, 초과되는 금액은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단, 선외기의 사업비 한도는 마력당 15만원으로 한다)

(3) 사업자는 공급자(업체)와 구매계약 체결시 장비의 성능보장, 설치, 하자보증 수리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4) 기관 등 장비는 공급자로부터 장비 인도 및 설치완료 후 물품검수 인수증, 설치사진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준공계에 대하여 관련서류 및 장비설치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6. 행정사항

가. 사업비 집행 및 관련법령 준수

- 사업비 집행과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 법률에 정한 규정에 의한다.
-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비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나.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추진 상황보고(붙임 2)를 매 반기별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업집행주체는 이 지침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효율성과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붙임 1]

내수면 어선장비지원사업 신청서

1. 어선현황

소유자 주소 및 성명	어업허가 (면허)번호	선 명 (톤)	진 수 연월일 (선령)	어선 소유기간	최종어선 검사일자 (최대승선원)	비고

2. 사업계획

가. 장비 설치계획

장비품목 (기종 규격)	사 업 비(천원)				예 정 공 기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착공일	준공일	
계							

나. 자기부담 조달계획 :

상기 본인은 사업집행지침에 의거 지원제외 대상자에 해당 없으며, 2024년도 어선장비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붙 임 : 선박검사증서(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00시장·군수 귀하

<첨부>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　　년도　　반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사업량	도비	시군비	자담	계

6. 세부집행내역

선명(소유자)	허가, 신고 현황	지원장비	수량(대)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계						

7.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 계획은 원인 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집행실적은 실 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31 마을어장 수산자원 지킴이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황성수 주무관 김장언	054-880-7710 054-880-7722 054-880-7723

1. 목 적

가. 비어업인이 야간에 마을어장에서 불법 해루질로 인한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활동으로 지선 어촌계(어업인)와 마찰 지속 등 민원 발생

나.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어촌계(어업인)와 비 어업인간 분쟁 사전 예방

2. 근거법령

가.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3. 사업개요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지구별 수협장에게 업무를 위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나. 사업대상 : 동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면허를 받아 마을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어촌계

다.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4. 시·군별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132개소	700,000	210,000	490,000		
포 항 시	43	224,000	67,200	156,800		
경 주 시	16	84,000	25,200	58,800		
영 덕 군	32	189,000	56,700	132,300		
울 진 군	31	175,000	52,500	122,500		
울 릉 군	10	28,000	8,400	19,600		

5. 사업 대상 선정 및 운영 방법

가. 지원대상 어촌계 선정

○ 불법 해루질로 인해 잦은 민원 발생 어촌계 및 해양보호구역 지정 어촌계 등

○ 사업집행 주체가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지킴이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촌계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 어촌계 선정 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선정 하여야 한다.

나. 운영방법

○ 근무기간 : 지역적으로 해루질 행위자의 출현 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사업비 소진시 사업을 조기에 종료 할 수 있다.

○ 근무시간 : 1일 4시간 이내로 하며, 일몰 후 1시간 이후부터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으며, 폭풍·태풍 주의보 발령 등 기상악화 시 근무를 하지 않는다. 다만 주의보 발효 시 지역여건에 따라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근무인원 : 2명 이내(지역여건에 따라 순번제, 당번제 및 어촌계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인 건 비 :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당연도 최저시급 직용

○ 근무방법 : 어촌계장 자택에 비치된 『붙임 1』 출·퇴근부에 등록하고 마을어장 내 해루질 예방 순찰 활동 등

○ 활동보고 : 『붙임 2』 일일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어촌계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 받은 어촌계장은 일일 활동 보고서를 보관 후 월 단위로 사업집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영방법 등을 별도 정할 수 있다.

6. 지킴이 자격 및 선발 방법 등

가. 자　　격

○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신체 건강하고, 야간 감시활동에 제약이 없어야 하며, 기동력이 확보된 자, 통신장비(휴대폰) 운용 등이 가능한 자

나. 선발방법

○ 관할 시·군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리규정 또는 어촌계의 총회를 통하여 어촌계원 중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선발인원이 부족할 시 어촌계 총회를 통해 어촌계 거주 지역주민 중 선발할 수 있다.

○ 어촌계 총회를 통해 선발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회의록 사본을 사업집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효율적인 지킴이 활동을 위해 주거지 제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선발기준을 따로 정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 시·군에서 실시하는 일자리사업 등 중복 참여자는 배제한다

다. 계약체결 등

○ 관할 시·군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리규정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지원대상 어촌계의 총회를 통하여 어촌계원 중 선발하는 경우에는 근무자 명단을 근무일 이전달 10일 전에 제출받아 근무명령을 하여야 하며, 어촌계장은 근무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

○ 근로계약 체결 이후 부적격자로 판정 될 경우 또는 임무수행 불성실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 한다.

7. 사업관리

가. 관리·감독 등

○ 마을어장 수산자원 지킴이로 선발 된 자에 대하여 불법 해루질 등 관련법·제도 및 안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 마을어장 수산자원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장비(완장, 조끼, 호루라기, 경광봉 등)를 지급하여야 한다.

○ 마을어장 수산자원지킴이 근무자의 근무활동 실태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

○ 어촌계장이 보관하고 있는 일일 활동 보고서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

○ 어촌계장이 월 단위로 제출한 일일 활동 보고서 전결규정에 따라 결재 후 보관하여야 한다.

○ 어촌계장은 출퇴근기록부를 비치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수시로 근무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지킴이의 불법해루질 신고에 대해 사업집행주체 및 어촌계장은 해경 등 관련기관 통보 등 즉시 대응 조치하여야 한다.

나. 임무수행 불성실자에 대한 조치

○ 3회 이상 무단이석 및 3일 이상 결근 : 즉시 교체

○ 활동일지 불성실 작성 등 근무 태만 : 1차 경고, 누적 2회시 교체

○ 지시 및 명령 불복종 및 보고 태만 : 1차 경고, 누적 2회시 교체

○ 허위 보고자 : 교체

8.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임금 지급

○ 출퇴근 기록부 및 일일활동 보고서를 확인 후 월별로 개인 예금계좌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근로기간 중 취득한 정보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중도 퇴직 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지급(단,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나. 사업비 집행절차 및 정산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9. 행정사항

가. 사업집행주체는 이 지침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효율성 및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사업집행주체는 총사업비의 3%이내에 위탁수수료(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 운영경비 포함)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시군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할 경우 운영경비를 1%범위 내 집행할 수 있다

다. 지구별 수협장은 어촌계장의 업무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해루질 방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라.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추진 상황보고(붙임 3)를 매 분기별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바. 동 업무를 지구별수협장에게 위탁할 경우에도 지원대상어촌계선정 및 근로자 채용의 경우 지킴이 선발은 시장·군수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사. 총사업비가 초과되는 경우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장이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아. 사업집행주체는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전년도 선발된 지킴이를 당해연도 지킴이 선발(채용포함)전까지 운영할 수 있다.

[붙임 제1호 서식]

< 수산자원지킴이 출 · 퇴근 기록부 >

00월

일 자	출근시간	퇴근시간	이 름	확인(서명)

[붙임 제2호 서식]

< 수산자원지킴이 일일 활동보고서 >

활동일자 : 2024. . .

근 무 자	(인)	출근시간		확인자 (어촌계장)	(인)
		퇴근시간			
주요 활동 내용					
근무상황					
불법 해루질 의심 신고 및 지도, 홍보 실적					
시 간	대 상 자	사 례		조치사항(홍보실적 등)	비고

[붙임 제3호 서식]

마을어장 수산자원지킴이 지원 추진상황(　/　분기)

○ 분기별 집행실적

(단위 : 명, 천원)

구 분 (어촌계별)	00월			00월			00월			누 계		비 고
	인원	근무일수	금 액	인원	근무일수	금 액	인원	근무일수	금 액	인원	금 액	
합 계												

※ 인원 : 동일인 일 경우 1명으로 기재

○ 분기별 활동실적

어촌계	활 동 실 적			주요내용	비고
	신고건수	홍보건수	계도건수		

32 양식어가 종자대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황성수 주무관 박선희	054-880-7710 054-880-7722 054-880-7726

1. 목 적

가. 태풍, 적조 및 냉수대 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양식중인 양식물이 폐사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업인의 종자입식비 지원을 통한 생산의욕 고취 및 양식산업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가.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3. 사업개요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내용 : 육상 및 해상양식 종자 입식비 지원
다. 지원조건 :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라. 지원대상 : 육상 및 해상 양식어업인

4. 시·군별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식, 천원)

시 군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4	1,000,000	210,000	490,000	300,000
포 항 시	1	500,000	105,000	245,000	150,000
경 주 시	1	5,000	1,050	2,450	1,500
영 덕 군	1	465,000	97,650	227,850	139,500
울 진 군	1	30,000	6,300	14,700	9,000

5. 사업비 지원 신청

가. 신청자격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 구)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한 자 준용

나. 신청방법

-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군에 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

다. 구비서류

- 사업자 선정 신청 시 : 사업자 선정 신청서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본인예금통장(사본), 사업계획서
- 사업완료 시 : 사업완료계(준공 전·중·후 사진 등 첨부), 계산서(증거서류)

6. 사업시행

가. 지원 대상자 선정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신고
-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대상 종 및 물량을 조정, 배정할 수 있다.
- 사업집행주체는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나. 사업비 지원

- 사업비 지원 시기는 종자구입 후 양식장 입식 및 입식신고 완료한 후 정산 지원
- 세대별(가구당) 지원규모(한도액)를 제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 지원대상 제외

- 사업자 선정 이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외
-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양식어업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을 양식하다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적발일로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외
- 당해연도 종자대를 지원 받은 후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지원 제외
- 당해연도 종자대를 지원 받은 후 가이식 기간 중 사업권 이전·승계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5년간 지원 제외

7. 사업비 집행

가. 사업비 지원한도 내에서 종자대 등 지원 물량을 조정 지원할 수 있으며 비교적 단가가 높은 품종에 대하여는 개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나. 지원방법은 양식장이 위치한 지역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반드시 우량종자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 종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의한 종자생산 면허·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자에게 구입하여야 한다.

라. 종자대는 종자구입 양식 어업인이 양식어장에 본양성 이후 종자입식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단 종자구입 이후 양식어장에 가이식한 경우에도 지역 여건에 따라 집행주체가 판단하여 조건부(본양성 이후 입식신고, 종자 타인 양도 금지 등)로 지급할 수 있다.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예산회계관련 법률 등의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비 정산

가. 사업자는 사업집행주체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받은 후 계약업체로 하여금 종자 납품을 요청하고 입식 및 입식신고 완료 후 정산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입식 및 입식신고 완료 후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지원 입식된 종자는 상품성이 있는 크기로 성장하기 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동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하여야 한다.

- 단, 상품성이 있는 크기라 함은 입식 후 최소 3개월 이상 사육한 것을 말한다.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보조금 관리조례, 예산회계관련 법률 등의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마. 보조금 지급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임장” 첨부시 위임 받은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9. 행정사항

가. 사업집행주체는 이 지침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효율성 및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추진 상황보고(붙임 2)를 매 반기별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1]

사업자 선정 신청서

1. 사 업 명 : 2024년도 양식어가 종자대 지원사업

2. 지원 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 어업명 : (면허번호 : -)

○ 양식장 규모(품종) :

3. 사업계획

○ 종자구입

- 수량 : m, 금액 : 원

4. 사 업 비

○ 사업비 총액

- 보조금 : 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원

5. 사업기간 : . . . ~ . . .

위와 같이 양식어가종자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 첨부서류 : 어업신고, 면허(허가)증 사본 1부

00시장, 군수 귀하

[붙임 2]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년도 반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지 원 어가수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사업량	도비	시군비	자담	계

6. 세부집행내역

품 종	양식장명(대표)	수량(마리)	단가(원)	금액(천원)	비 고
계					

7.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 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33 양식장시설 현대화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황성수 주무관 김장언	054-880-7710 054-880-7722 054-880-7723

1. 목 적

가. 적조·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의 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가.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3. 사업개요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내용 : 저층(수심 15m이상)해수 취수라인 시설 및 보수, 냉각기, 이상수온 경보시스템 비상발전기, 단,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저층해수 취수라인 수심을 13m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냉각기의 경우 전기설비·용량증설 공사비는 냉각기 구입비의 30%이하 범위내 지원
- 비상발전기의 경우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저층 해수취수라인 시설(보수)하는 경우 기계실, 전기설비 증설, 고가수조 설치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다.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4. 시·군별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3	320,000	48,000	112,000	160,000
영 덕 군	1	100,000	15,000	35,000	50,000
울 진 군	2	220,000	33,000	77,000	110,000

5. 사업시행

가. 신청 자격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의한 육상해수양식어업, 축제식양식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단,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을 우선지원하여야 하며, 축제식 양식업은 총 예산의 20%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

나. 신청 방법

-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군에 사업신청서(붙임 1)를 제출

다. 구비 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자부담예치증명서, 사업계획서
- 사업완료 시 : 사업 완료계(준공 전·중·후 사진 등 첨부), 영수증(세금계산서)

라. 사업추진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저층해수취수라인 시설 및 보수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외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예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사업집행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규모에 따라 사업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 필요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타당성 여부 검증을 위해 확인 조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마.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경과자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에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자원조성부담금 미납자 및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을 양식하다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적발일로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외

바. 지원대상자 변경(승인)

-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6. 설치 및 사업비 정산

가. 사업자는 사업집행 주체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받은 후 공급자에게 설치 요청을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공급자로부터 설치 완료 후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조사업의 사업완료보고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사후관리

가. 시·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 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 시 회수조건을 명기)

나.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8. 기타사항

가. 사후관리는 해양수산사업실시 규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여 관리한다.

나. 사업집행주체는 이 지침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효율성 및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붙임 1]

양식장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

<table>
<tr><td>양식어가
(단체)명</td><td colspan="5"></td></tr>
<tr><td>성 명
(대표자명)</td><td></td><td>생년월일
(남/여)</td><td></td><td>전화
번호</td><td>( )
-</td></tr>
<tr><td>주 소
(번지까지 기재)</td><td colspan="5"></td></tr>
<tr><td>양식장 주소
(번지까지 기재)</td><td colspan="5"></td></tr>
<tr><td>양 식 어 종</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양식장 면적
(신청일 기준)</td><td>(면허·허가·신고)면적</td><td colspan="2">㎡</td><td rowspan="2">양식방법</td><td rowspan="2"></td></tr>
<tr><td>수면적</td><td colspan="2">㎡</td></tr>
<tr><td>세 부 사 업
(사업명, 규모)</td><td colspan="5">- 세부사업명 :
- 사 업 규 모 :</td></tr>
<tr><td rowspan="2">사 업 비
(천원)</td><td>계
(100%)</td><td>도비 보조
(15%)</td><td>시·군비 보조
(35%)</td><td>자부담
(50%)</td><td>비 고</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첨부서류 : 1. 양식업 관련 허가증(면허·신고) 사본 1부.
2. 양식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붙임2) 1부.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2]

양식장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

2. 사업비 부담계획

(단위: 천원)

총 액	보조 지원금	자부담	자부담 조달계획

※ 자부담 조달계획 구체적 작성 및 근거서류 제출

3. 사업비 명세

품 명	규 격	단 가	수 량	금 액 (천원)	비 고
계					

4. 사업추진일정

○ 공사착수예정일 :

○ 공사준공예정일 :

○ 보조금 요청시기 : 년 월 일

○ 준공후 결과 보고일 :

5. 제출서류

○ 자부담 관련 서류

[붙임 3]

사업완료 보고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00. ~ 00.
○ 사 업 비 : 000천원(도비 000, 시.군비 000, 기타 000)
○ 지원대상 : 000어가(육상　　어가, 종자생산업　　어가)
○ 지원내용 :

□ 사업비 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계				○ 저층취수시설 :　어가 – 보수 :　어가 ○ 냉각기 :　어가 – 보수 :　어가 ○ 이상수온시스템 :　어가
도 비				
시군비				
기 타				

□ 세부집행내역

어가 명(육상,종자)	지원 종류	수 량	금액(천원)	비 고
계				

□ 사업 추진 관련 사진

34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황성수 주무관 박선희	054-880-7710 054-880-7722 054-880-7726

1. 목 적

가. 바다에 잠수하여 작업하는 특성과 열악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잠수 어업인들에게 사회 보장적 차원의 건강보호를 위한 진료비 지원을 통해 어촌사회 삶의 질 향상

2. 근거법령

가.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

3. 사업개요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연안 5개 시장·군수에게 어업 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을 받은 자 중 잠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자

다. 지원기준

- 잠수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약제비 포함)을 전액 지원
-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은 200,000원 이내로 한다(초과시, 본인 부담)
  단, 잠수병 관련 합병 치료의 경우 시·군의 예산 한도내에서 조정 가능

라.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4. 시·군별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명, 천원)

시 군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1,403	90,666	27,200	63,466	
포 항 시	1,006	62,000	18,600	43,400	
경 주 시	152	20,000	6,000	14,000	
영 덕 군	160	3,333	1,000	2,333	
울 진 군	75	4,333	1,300	3,033	
울 릉 군	10	1,000	300	700	

5. 진료기관(병원·약국) 지정

가.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에 의해 도지사가 지정

나. 진료기관 지정을 원하는 진료기관(병원·약국)에서는 동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붙임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 진료기관 지정 현황 : 「별첨」 참조

다. 도지사는 진료기관 신규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사업의 집행

가. 진료기관은 매월말 기준으로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진료내역을 첨부하여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하며, 12월 청구분은 다음 해 지급 하는 등 시장·군수가 별도로 정한다.[붙임 제1호, 제2호]

나. 진료기관은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비 청구 작성 전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잠수어업인 중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라 현재 나잠어업에 종사 중인 사람은 해당 시장·군수의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신고 처분한 확인 자료로 갈음한다.
- 「수산업법」 제27조에 정하는 면허받은 어장의 관리선에 종사하는 잠수사,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득한 자원관리채취선에 종사하는 잠수사, 「수산업법」 제40조의 잠수기어업에 종사 중인 잠수어업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증 또는 잠수 어업인증 발급 자료로 확인을 갈음한다.
- 잠수어업인증을 미 소지한 경우와 관련 확인자료의 전달과 확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우선 진료하도록 지원하고 진료비 청구 시 확인하여 정산한다.

다. 청구내역 의혹이 있을 시는 지정병원을 방문 확인하고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진료기관 지정 취소를 도지사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청구한 진료비에 대하여서는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라.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청구 및 집행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진료비 청구 서식 및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야 한다.

7. 사업의 관리

가. 시장·군수는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내역을 [붙임 제4호]서식에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기 타

가.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 제1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진료비 청구서(　　년도　 월분)</td><td>처리기간
15일</td></tr>
<tr><td rowspan="4">진료기관</td><td>상　 호</td><td></td><td>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4"></td></tr>
<tr><td>대 표 자</td><td colspan="4"></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진료현황</td><td colspan="2">진료인원</td><td>진료건수</td><td colspan="2">일반급여(본인부담금)
청구액</td></tr>
<tr><td colspan="2">명</td><td>건</td><td colspan="2">원</td></tr>
<tr><td>진료비지급
계좌번호</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20　년　 월분 잠수어업인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병(의)원장　　(인)

시장·군수　귀하</td></tr>
<tr><td colspan="6">[첨부서류]
진료비 내역서(붙임 제5호 서식) 1부</td></tr>
</table>

[붙임 제2호 서식]

진 료 비 청 구 내 역 서

연번	시·군	성 명	잠수어업인증 발급번호	진료 일수	진료 건수	일반급여 (본인부담금) 청구액(원)
계				일	건	

※ 요양급여 대상 중 급여항목의 일부 본인부담(본인부담금)을 청구

[붙임 제3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 신청서</td><td>처리기간
3일</td></tr>
<tr><td colspan="2">진료기관명</td><td></td><td>종 별</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소 재 지</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진 료 과 목</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개설신고일자</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개설자
(대표자)</td><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성 명</td><td></td><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td></tr>
<tr><td colspan="6">[첨부서류]
1.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td></tr>
</table>

[붙임 제4호 서식]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내역

(2024년 00월)

시·군	진료인원(명)	진료건수(회)	사 업 비 (원)			비 고
			예산액	지급금액	잔액	

[별첨]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 현황

○ 병원 : 16개소(대학 4, 의료원 3, 종합 6, 잠수전문병원 3)

지역	진료기관	전 화	지역	진료기관	전 화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병원	053)200-5016	경주시	동국대 경주병원	745-4268
	영남대학교의료원	053)620-4441	영덕군	성용재단 영덕제일병원	732-7719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053)250-8273	울진군	울진군의료원	785-7000
포항시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 선린병원	245-5026	울릉군	울릉군 보건의료원	790-6871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247-0551	경남 통영시	통영세계로병원 (감압시설)	055)648-8275
	포항 성모병원	272-0151	경남 삼천포	삼천포 서울병원(감압시설)	055)830-9015
	세명기독병원	275-0005	부산 수영구	서호병원(감압시설)	051)902-7777
	새싹의료법인흥해아동병원	240-1011	강원 강릉시	강릉아산병원	033)610-4114

○ 의원·한의원 : 27개소(의원 6, 한의원 21)

지역	진료기관	전 화	지역	진료기관	전 화
포항시	성모한의원 (구룡포)	276-1828	경주시	감포한의원	745-4268
	약전부부한의원 (동해)	278-2175		고려한의원 (감포)	741-6268
	청하한의원 (청하)	232-1075		정든경희한의원 (양남)	745-8870
	황외과의원 (구룡포)	276-5060		연세가정의원 (감포)	795-5663~4
	송강한의원(흥해읍)	261-6573		감포의원	705-5561
	미소웰한의원 (죽도)	272-3375		양남한의원	744-5686
	구룡포경희한의원	285-1275		하나의원 (양남)	744-4500
	명지한의원 (구룡포)	010-6579-2900		나아한의원 (양남)	772-1213
	한초한의원 (흥해)	261-7575		양남연합의원 (양남)	775-7377
	정한의원 (죽도)	281-1313		양남정형외과의원 (양남)	743-8575
	서한의원(문덕)	292-9556	울진군	우리한의원 (죽변)	783-1075
	포항백세한의원(흥해)	262-8575		울진한의원 (울진)	782-0203
영덕군	우리한의원 (영해)	734-3400		삼문한의원 (평해)	787-4014
울릉군	선린한의원 (울릉)	791-1275			

○ 약 국 : 20개소

지역	진료기관	전 화	지역	진료기관	전 화	진료기관	전 화
포항시	참평화약국 (대잠)	273-0157	경주시	감포우리약국	741-5545	제일약국 (감포)	744-3155
	포항약국(성모병원)	252-5291		소망약국(감포)	743-2285	영남약국 (양남)	774-3319
	이화약국 (대도)	273-5220		대원약국(감포)	744-3085	수정약국 (양남)	744-2373
	일선약국 (구룡포)	276-2559		정문약국(경주)	774-9190	대학약국 (동국대)	741-9456
	민하약국 (흥해)	010-3119-2910		안신약국	744-0125	미보약국 (양남)	774-8894
	한동약국 (대신)	231-9191					
영덕군	영덕종합약국(제일병원)	734-0048	울진군	경북약국 (의료원)	783-8280		
	대구약국 (영덕)	733-3388		메디칼약국 (의료원)	783-8512		

35 마을어장 안전장비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황성수 주무관 김장언	054-880-7710 054-880-7722 054-880-7723

1. 목 적

○ 조업환경 악화 및 노령화 등으로 감소해 가는 잠수부, 나잠(해녀)어업인에게 잠수복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작업 능률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2. 근거법령

가.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3. 사업개요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읍·면장이나 지구별수산업협동 조합장에게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나. 지원내용 : 잠수복, 물갈퀴, 조끼, 물안경, 납추, 테왁, 망사리, 빗창, 휴대용 상어퇴치기 등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 지원조건

○ 지 원 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기준 : 1인당 보조금 400,000원 이내(시·군별 배정 사업비 범위 내)

4. 시·군별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식,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5	100,000	24,000	56,000	20,000	
포항시	1	53,750	12,900	30,100	10,750	
경주시	1	10,000	2,400	5,600	2,000	
영덕군	1	25,000	6,000	14,000	5,000	
울진군	1	10,000	2,400	5,600	2,000	
울릉군	1	1,250	300	700	250	

5. 사업시행

가. 신청자격

-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나잠(해녀)어업인 및 마을어장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에 조업하는 잠수사

나. 사업추진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예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필요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타당성 여부 검증을 위해 확인 조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최근 2년 이내 (직전년도 말기준)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경고 처분 제외)
- 자원조성부담금 미납자 및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6. 사업의 관리

(1) 보조금으로 지원된 잠수복 등 안전장비의 매각 또는 타 용도 사용 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2) 사업집행주체는 이 지침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효율성과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7. 행정사항

(1) 사업비 집행 및 관련 법령 준수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률에 정한 규정에 의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붙임 1)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사업완료 보고서

(00시.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00. ~ 00.

○ 사 업 비 : 000천원(도비 000, 시·군비 000, 기타 000)

○ 지원대상 : 000명(잠수부 000, 나잠(해녀)어업 000)

○ 지원내용 : 잠수복 00벌, 테왁 00개, 000, 000, 000

□ 사업비 집행 실적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계				○ 잠수부 00명 ○ 나잠(해녀)어업 00명
도 비				
시군비				
기 타				

□ 문제점 및 건의사항

○

○

□ 사업 추진 관련 사진

36 어선장비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김상국 주무관 이수현	054-880-7710 054-880-7730 054-880-7733

1. 사업목적

가. 연근해어선에 어업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 및 작업능률 향상

나. 어선 안전장비 지원으로 어선원의 소중한 생명 보호

2. 추진방향

가. 어업 분야 종사 기피로 인한 어선원 인력난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구축

나. 어선 안전성·성능 향상 장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선제적 대응

3. 근거법령

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나.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4. 시·군별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척, 천원)

시 · 군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 군 비	자 부 담	
합 계	**228**	**555,555**	**100,000**	**233,333**	**222,222**	
포 항 시	82	200,833	36,150	84,350	80,333	
경 주 시	26	63,611	11,450	26,717	25,444	
영 덕 군	44	106,667	19,200	44,800	42,667	
울 진 군	33	78,889	14,200	33,133	31,556	
울 릉 군	43	105,555	19,000	44,333	42,222	

5.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도내 연안 시·군에 어선을 등록한 자

나. 지원조건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다. 지원품목 : 신청어선 당 단일품목 지원(별표 제1호)

※ [별표 제1호] 품목 외 장비 : 사업 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시·군별 총사업비의 20% 안의 범위에서 사업자 선정 및 지원할 수 있음
- 척당 사업비 지원 한도는 5백만원 이내로 하며, 초과 금액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라. 제외 대상

○ 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어업 허가 등을 받아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

○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감척 대상 어선(사업대상자 선정) 또는 「어선법」 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허가받은 어업에 필요한 장비 외 장비를 신청한 자

6. 추진체계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사업대행 가능)

나. 시행체계

1) 도

가) 시행지침 수립·시달

나) 예산배정

다) 사업추진상황 점검·확인

라) 사업 정산 검토 및 반납 조치

2) 시·군

가)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나) 사업 신청공고 및 접수

다) 사업자 선정 및 확정(변경)

라) 장비 설치 지도·감독

마) 장비 설치 완료 확인

바)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사) 사업결과 취합,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반납 조치

다. 사업자 선정 및 시행방법

1) 사업 집행주체는 사업신청공고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를 제출받아 접수함

2) 사업 집행주체는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그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함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어업생산비 절감장비 지원 : 신청어선의 소유기간이 오래된 어업인
  동 순위일 경우, 신청어선의 선령이 높은 어업인 우선
- 어선 안전조업장비 지원 : 신청어선의 톤수가 작은 어업인
  동 순위일 경우, 신청어선의 소유기간이 오래된 어업인 우선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자는 후순위로 함

  ※ 시·군 자체 실정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 조정·추가 가능

3) 이 경우 필요시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시·군에서 운영·관리하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포기자 발생에 대비한 예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4) 사업 집행 주체는 지구별(업종별) 수협을 사업대행자로 지정 시, 다음의 사항을 위임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일괄 수협에 배정하여 수협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할 수 있음

- 사업 신청·접수, 장비 설치 지도 및 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등

라. 사업비의 집행

1) 사업비는 어선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용 등을 포함함

2) 사업비 지원 한도는 [별표 제1호]의 어선장비 지원 품목별 금액으로 하고, [별표 제1호] 외 장비는 척당 사업비 5백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초과 금액은 사업자가 부담함

3) 사업자는 공급자(업체)와 구매계약 체결 시 장비의 성능보장, 설치, 하자보증 수리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함

4) 사업자는 공급자로부터 어선장비 인도 및 설치 완료한 후 형식 승인증, 물품검수 인수증,

설치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함

- 어선법 제24조 및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규정에 해당되는 안전 장비는 형식승인·검정 받은 제품에 한하여 지원가능함

5) 사업 집행주체(사업 대행자 지정시, 수협)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완료 보고서, 관련 서류 검토 및 설치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함

6) 보조금 지급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임장 첨부 시 위임 받은 자에게 지급이 가능함

7. 정산보고 및 행정사항

가. 사업비 집행과 정산 및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2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준용하며,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을 통해 따로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동 규정 제52조2항 별표7의 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봄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 추진상황[별지 제2호]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 도와 협의하여 우리 도로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등 사업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나. 본 사업의 시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에서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다.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별표 제1호] 어선장비 지원 품목 및 한도

□ 어업생산비 절감장비

지원품목	사업비 지원한도(척 당)	비 고
다목적 양망기	5,000천원	
유압식 양승기	5,000천원	
연승(문어) 양승기	2,000천원	
친환경 연승 봉돌 및 연승주낙(원사)	2,500천원	
전동릴	2,400천원	
GPS플로터	5,000천원	어군탐지기능 등 포함 가능
어군탐지기	7,000천원	
위성전화기	2,400천원	
산소발생기	3,500천원	
어망세척기	5,000천원	
어업용 크레인	7,000천원	
저온저장시설	5,000천원	

□ 어선 안전조업장비

지원품목	사업비 지원한도	비 고
V-Pass(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	1,200천원/척	
VHF-DSC(초단파대 무선전화)	1,200천원/척	
AIS(선박자동식별장치)	1,800천원/척	
SSB 무선 송수신기	3,000천원/척	
e-Nav(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3,000천원/척	
EPIRB(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1,100천원/척	
스티커형 소공간용소화용구	75천원/개	65L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350천원/기관실 방호면적 8㎡당	수협 어업용기자재 실 구매단가 적용 가능
구명조끼(팽창식)	132천원/벌(어선 최대 승선인원 범위 내)	
구명뗏목	2,000천원/척	
구명사다리	600천원/척	
자동심장충격기	1,300천원/척	
소화기	50천원/개	어선설비기준에 의함
어구실명제 표식(깃발 등)	500천원/척	1,500원/장
자동주유탱크	2,500천원/척	
조리용 인덕션, 전열기	3,000천원/척	
프로펠러 로프커터기	4,500천원/척	
선미관 씰링장치	5,000천원/척	
레이더	10,000천원/척	플로터, 어군 탐지기능 등 포함 가능

※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율(60%)에 따라 지원 (초과금액은 보조사업자가 부담)

※ 어선장비 지원 품목 중 국비사업과 중복되는 품목은 국비사업으로 우선 집행할 수 있음

※ 상기 지원품목 외 품목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별지 제1호]

어선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신
청
자</td><td>성 명
(대표자명)</td><td colspan="2"></td><td>생년
월일</td><td></td><td>전화
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8">신
청
내
용</td><td>어 선 명</td><td colspan="2"></td><td>어선번호</td><td colspan="3"></td></tr>
<tr><td>톤 수</td><td colspan="2"></td><td>진 수
연 월 일</td><td colspan="3"></td></tr>
<tr><td>선령</td><td colspan="2"></td><td>어 선
소유기간</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신청사업과
관련된 허가
및 면허</td><td colspan="2">종 류</td><td colspan="5">허가·면허 번호 (허가기관)</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5"></td></tr>
<tr><td>신청장비
품목·규격</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2">사 업 비
(원)</td><td>계</td><td>도비(18%)</td><td>시군비(42%)</td><td colspan="4">자부담(40%)</td></tr>
<tr><td></td><td></td><td></td><td colspan="4"></td></tr>
<tr><td>착·준공계획</td><td colspan="7"></td></tr>
</table>

상기 본인은 어선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자 선정기관에서 다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어선검사증서(사본) 1부.

○ ○ (시장, 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어선장비 지원사업 추진상황(/ 분기)

(단위 : 척, 대, 개, 천원)

구 분	계획			/ 분기			누 계		
	물 량		사업비	물 량		집행액	물 량		집행액
	척수	수 량		척수	수 량		척수	수량	
합 계									
○ 어업생산비 절감장비 지원									
- 다목적인양기									
- 유압식양승기									
-									
-									
-									
-									
○ 어선 안전조업장비									
- 무인기관실용자동소화장치									
-									
-									

[별지 제3호]

어선장비 지원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1. 시 군 명 :

2.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3. 사업추진실적

○ 사업 추진실적 상세 기재

○

○

4. 기타사항

37 어선부력판 설치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김상국 주무관 이수현	054-880-7710 054-880-7730 054-880-7733

1. 사업목적

가.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통)·구상선수 지원으로 유류비 부담완화와 어로작업의 안전성 및 효율성 증대 도모

2. 추진방향

가. 어선어업 조업경비 절감사업 추진으로 저비용 고효율 어선어업 실현

나. 어선 부력 향상을 통한 롤링과 피칭(Rolling and pitching) 저감으로 작업 안전성·효율성 증대 도모

3. 근거법령

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어업선진화 사업에 대한 지원)

나.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4. 시·군별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척, 천원)

시 · 군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 군 비	자 부 담	
합 계	**44**	**166,666**	**35,000**	**81,666**	**50,000**	
포 항 시	18	66,904	14,050	32,783	20,071	
경 주 시	2	9,048	1,900	4,433	2,715	
영 덕 군	13	48,096	10,100	23,567	14,429	
울 진 군	8	30,714	6,450	15,050	9,214	
울 릉 군	3	11,904	2,500	5,833	3,571	

5.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도내 연안 시·군에서 연안어업(10톤 미만) 허가를 받은 자

나. 지원조건 : 보조 70%(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다. 지원내용 : 어선부력판(통), 구상선수 설치비

라. 지원단가 : 부력판 300천원/m

마. 지원한도

○ (총사업비 기준) 3톤 미만 어선 6,000천원/척, 3톤 이상 ~ 7톤 미만 어선 8,000천원/척, 7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 10,000천원/척 이내

바. 제외대상

○ 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어업 허가 등을 받아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

○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감척 대상 어선(사업대상자 선정) 또는 「어선법」 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6. 추진체계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시행체계

1) 도

가) 시행지침 수립·시달

나) 예산배정

다) 사업추진상황 점검·확인

라) 사업 정산 검토 및 반납 조치

2) 시·군

가)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나) 사업 신청공고 및 접수

다) 사업자 선정 및 확정(변경)

라) 사업 추진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마)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바) 사업결과 취합,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반납 조치

다. 사업자 선정

1) 사업 집행주체는 사업신청공고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를 제출받아 접수함

2) 사업 집행주체는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그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 후 사업자를 선정함

※ 시·군 자체 실정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 조정,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자는 후 순위로 함

3) 이 경우 필요시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시·군에서 운영·관리하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포기자 발생에 대비한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라. 사업시행 및 사업비의 집행

1) 사업비는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통), 구상선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보조금은 톤급별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율에 따라 지원하되, 초과되는 금액은 사업자가 부담함

※ 설치하는 선측부력부는 상갑판 아래 용적의 10퍼센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선측부력판을 설치한 어선은 관련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함

2) 사업 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가 부력판 설치 시 어선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3) 보조사업자는 공급자(시공업체)와 설치계약 시 성능보장, 하자보증 수리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함

4) 보조사업자는 공급자(시공업체)로부터 시설 설치완료 후 물품검수 인수증을 제출받아 사업완료 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하여야 함

5) 시설비 산출은 m단위 기준으로 하되, 1m미만의 경우 반올림 함

※ 단, 부력통 지름(폭)은 40cm 이내를 산정하며, 별도로 선수부분 등에 2중으로 설비하였을 경우 톤급별 사업비 지원한도 내에서 산정할 수 있음

6)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완료 보고서, 관련 서류 검토 및 설치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7) 보조금 지급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임장 첨부 시 위임 받은 자에게 지급이 가능함

7. 정산보고 및 행정사항

가. 사업비 집행과 정산 및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 추진상황[별지 제2호]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 도와 협의하여 우리 도로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등 사업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나. 본 사업의 시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군에서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다.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어선부력판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신
청
자</td><td>성 명
(대표자명)</td><td colspan="2"></td><td>생년
월일</td><td></td><td>전화
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8">신
청
내
용</td><td>어 선 명</td><td colspan="2"></td><td>어선번호</td><td colspan="3"></td></tr>
<tr><td>톤 수</td><td colspan="2"></td><td>진 수
연 월 일</td><td colspan="3"></td></tr>
<tr><td>선령</td><td colspan="2"></td><td>어 선
소유기간</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신청사업과
관련된 허가
및 면허</td><td colspan="2">종 류</td><td colspan="5">허가·면허 번호 (허가기관)</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5"></td></tr>
<tr><td>신청규격</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2">사 업 비
(원)</td><td>계</td><td>도비(21%)</td><td colspan="2">시군비(49%)</td><td colspan="2">자부담(30%)</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착·준공계획</td><td colspan="7"></td></tr>
</table>

상기 본인은 어선부력판 설치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자 선정기관에서 다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어선검사증서(사본) 1부.

○ ○ (시장, 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어선부력판 설치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분기)

(단위 : 척, 천원)

사 업 계 획				집행실적(/ 분기)				집행실적(누 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별지 제3호]

어선부력판 설치 지원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1. 시 군 명 :

2.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3. 사업추진실적

○ 사업 추진실적 상세 기재

○

○

4. 기타사항

38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김상국 주무관 이수현	054-880-7710 054-880-7730 054-880-7733

1. 사업목적

가. 10톤 미만 소형어선에 어선 점검을 위한 상가 및 도색비 등 지원을 통해 어선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2. 추진방향

가.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안전점검 독려 및 활성화

나. 영세어업인의 어선 검사비용 부담 경감 및 소중한 생명 보호

3. 근거법령

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4. 시·군별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척, 천원)

시 · 군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 군 비	자 부 담	
합 계	**340**	**211,110**	**38,000**	**88,667**	**84,443**	
포 항 시	84	52,333	9,420	21,980	20,933	
경 주 시	38	23,333	4,200	9,800	9,333	
영 덕 군	81	50,000	9,000	21,000	20,000	
울 진 군	68	42,111	7,580	17,687	16,844	
울 릉 군	69	43,333	7,800	18,200	17,333	

5.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도내 연안 시·군에 어선(10톤 미만)을 등록한 자

나. 지원조건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다. 지원내용 : 어선의 상가대 인양, 세척, 도장비

라. 지원한도 : (총사업비 기준) 1,400천원/척 이내*

* 시·군 실정에 맞게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마. 제외대상

○ 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어업 허가 등을 받아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

○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감척 대상 어선(사업대상자 선정) 또는 「어선법」 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6. 추진체계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사업 대행 가능)

나. 시행체계

1) 도

가) 시행지침 수립·시달

나) 예산배정

다) 사업추진상황 점검·확인

라) 사업 정산 검토 및 반납 조치

2) 시·군

가)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나) 사업 신청공고 및 접수

다) 사업자 선정 및 확정(변경)

라) 상가, 세척, 도장작업 지도·감독·확인

마)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바) 사업결과 취합,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반납 조치

다. 사업자 선정 및 시행방법

1) 사업 집행주체는 사업신청공고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를 제출받아 접수함

2) 사업 집행주체는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그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함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신청어선의 톤수가 작은 어업인 (동 순위일 경우, 신청어선의 선령이 높은 어업인 우선)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자는 후순위로 함

※ 시·군 자체 실정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 조정·추가 가능

3) 이 경우 필요시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시·군에서 운영·관리하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포기자 발생에 대비한 예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4) 사업 집행주체는 지구별(업종별) 수협을 사업대행자로 지정 시, 다음의 사항을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일괄 수협에 배정하여 수협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할 수 있음

- 사업신청·접수, 상가, 세척, 도장작업 지도 및 확인,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등

라. 사업비의 집행

1) 사업비라 함은 사업자 등록을 필한 조선소에서 어선의 상가대 인양, 세척, 도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보조금은 척당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율에 따라 지원하되, 초과 금액은 사업자가 부담함

2) 사업 집행주체는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완료 보고서에 대하여 관련 서류 및 장비 설치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함

3) 보조금 지급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임장 첨부 시 위임받은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7. 정산보고 및 행정사항

가. 사업비 집행과 정산 및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 추진상황[별지 제2호]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 도와 협의하여 우리 도로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등 사업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나. 본 사업의 시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군에서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다.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신청자</td><td>성 명
(대표자명)</td><td colspan="2"></td><td>생년
월일</td><td></td><td>전화
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8">신청내용</td><td>어 선 명</td><td colspan="2"></td><td>어선번호</td><td colspan="3"></td></tr>
<tr><td>톤 수</td><td colspan="2"></td><td>진 수
연 월 일</td><td colspan="3"></td></tr>
<tr><td>선령</td><td colspan="2"></td><td>어 선
소유기간</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신청사업과 관련된 허가 및 면허</td><td colspan="2">종 류</td><td colspan="5">허가·면허 번호 (허가기관)</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5"></td></tr>
<tr><td>신청항목</td><td colspan="7">상가 / 세척 / 도장</td></tr>
<tr><td rowspan="2">사 업 비
(원)</td><td>계</td><td>도비(18%)</td><td colspan="2">시군비(42%)</td><td colspan="2">자부담(40%)</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착·준공계획</td><td colspan="7"></td></tr>
</table>

상기 본인은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자 선정기관에서 다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어선검사증서(사본) 1부.

○ ○ (시장, 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사업 추진상황(/ 분기)

(단위 : 척, 천원)

구 분		계 획		(/ 분기)집 행		누 계		비 고
		척 수	금 액	척 수	금 액	척 수	금 액	
00 시·군	계							
	5톤미만							
	5톤이상~ 8톤미만							
	8톤이상~ 10톤미만							

[별지 제3호]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1. 시 군 명 :

2.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3. 사업추진실적

○ 사업 추진실적 상세 기재

○

○

4. 기타사항

39 어선(원) 보험료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김상국 주무관 전상록	054-880-7710 054-880-7730 054-880-7732

1. 사업목적

가. 어업인들의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어업경영 안정 도모

나. 해난사고에 대비한 완벽한 재해보상 실시로 신뢰어업 구축

2. 추진방향

가. 연근해어업인이 납입하는 보험료(국비 제외)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경영 안정 도모

나. 연근해어업인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보상 조치

3. 근거법령

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4조(국고의 지원)

나.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4. 시·군별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척, 천원)

시 · 군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 군 비	
합 계	**2,470**	**2,399,790**	**720,000**	**1,679,790**	
포 항 시	1,078	1,071,333	321,400	749,933	
경 주 시	280	264,733	79,420	185,313	
영 덕 군	420	359,723	107,980	251,743	
울 진 군	544	579,633	173,890	405,743	
울 릉 군	148	124,368	37,310	87,058	

5.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도내 연안 시·군에 어선을 등록한 자 중 당해 연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자

나.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다. 지원방법 : 수산정보업무포털 시스템 내 지방비 보조금 계정에 입금(도·시군 별도)

라. 지원기준 : 가입자 순수부담금(정부지원액 및 연체금 제외) 중 어선 톤급별 차등 지원

구분	어 선 원(톤급)				어 선(톤급)		
	10톤 미만	10톤 이상~30톤 미만	30톤 이상~50톤 미만	50톤 이상	10톤 미만	10톤 이상~20톤 미만	20톤 이상
지원기준	42%	25%	20%	10%	28%	20%	10%

마. 제외대상

1) 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2) 최근 2년 이내 보험 관련 보험사기 행위로 형사처벌 받은 자

3)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어업 허가 등을 받아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

5)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6) 「어선법」 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바. 제도개선에 따른 변경사항

1) 지방비 후정산 지원방식에서 선지원 방식으로 개편하여 추진(2021년부터)

〈 당 초 〉		〈 변 경 〉
○ 보험 가입 이후 지방비 교부 ○ 연말 지방비 정산에 따른 환급	➤	○ 보험 가입 시 지방비 선지원 ○ 어업인 자부담금만 납부

2) 수산정보업무포털(int.fips.go.kr) 내 매월 지방비 지원금액 확인

3) 매 분기별, 연초 또는 연말 연납 등 어업인 보험가입에 따른 지방비 청구금액 지급

4) 시군에서는 선정산 방식에 따라 지방비 예산 소진실적을 매분기 파악하고, 1개월 이내 연간 예산의 85% 이상 소진이 예상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방비에 대한 실정보고 실시

6. 추진체계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협조 : 수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지구별·업종별 수협)

나.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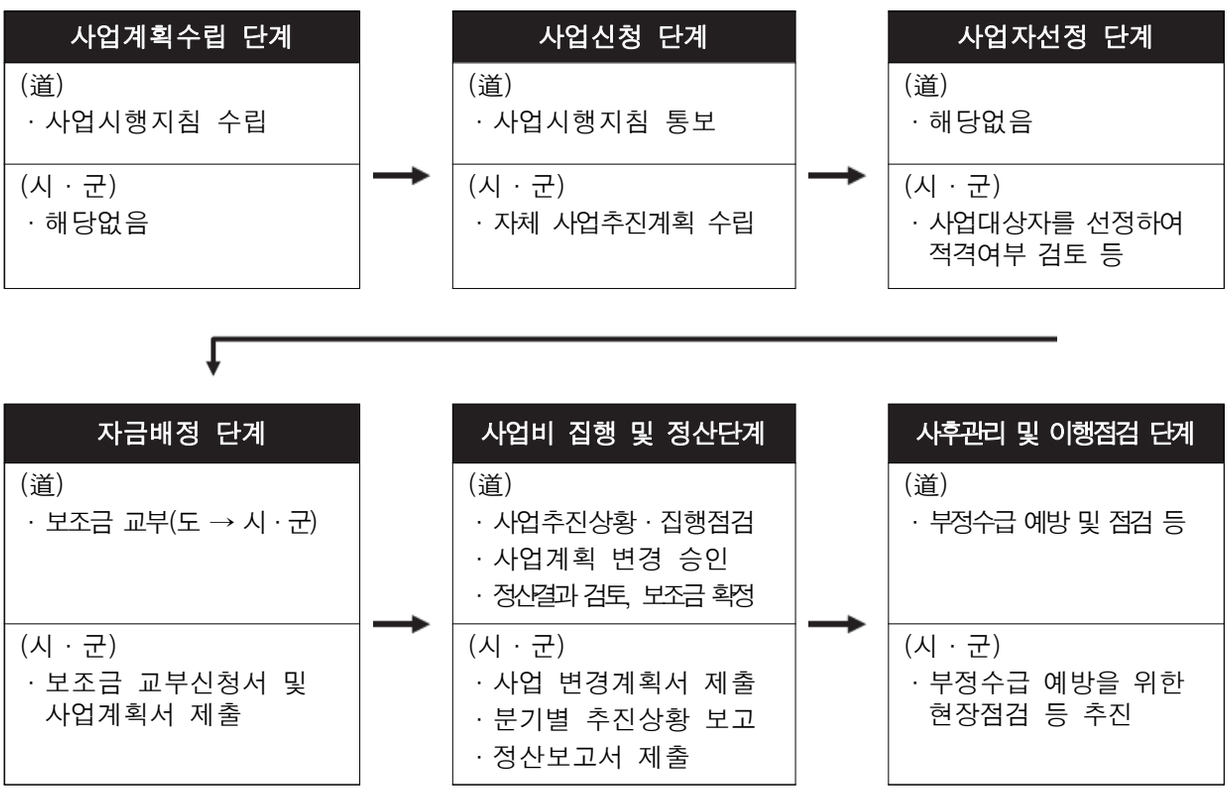

다. 보험료 지급방법

1)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비 중 도비 부담액에 대하여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교부신청 및 자금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사업집행주체는 보험가입자, 사업추진 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3) 수협은 시장·군수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지원계획 안내와 보험가입을 위한 홍보 및 보험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내용에 대하여 교육 실시.
4) 사업집행주체는 수산정보업무포털(int.fips.go.kr)에 게시된 월별 교부신청서 및 정산명세서에 따라 대상자 적격여부, 적정 보험료 산정 등을 확인 후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보조금 송금.

5) 사업집행주체는 보험료 보조금 집행시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지원할 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비 실정보고 등을 통해 조정

6) 시·군은 선지원율에 따른 사업 예산 집행 후 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수협중앙회에 요청하여 보험료 지원율을 조정하여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라. 사업비 정산 및 보고

1) 시장·군수는 보조사업 추진상황[별지 제1호]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2) 사업집행주체는 수협에서 환수한 휴항환급금 및 반납금 등 보관금에 대해 도와 협의하여 다음연도 사업예산으로 재사용할 수 있음.

3)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을 완료·확정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 도지사에게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비 집행과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및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 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지침 및 [별표 제1호], [별표 제2호]의 정책보험 지방비 지원사업 세부절차 및 처리기준에 따라 사업 추진하되, 동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주체가 본 사업 근본 취지를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경북도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시·군에서는 지구별(업종별) 수협, 수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장려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 정책보험 지방비 지원사업 세부 절차(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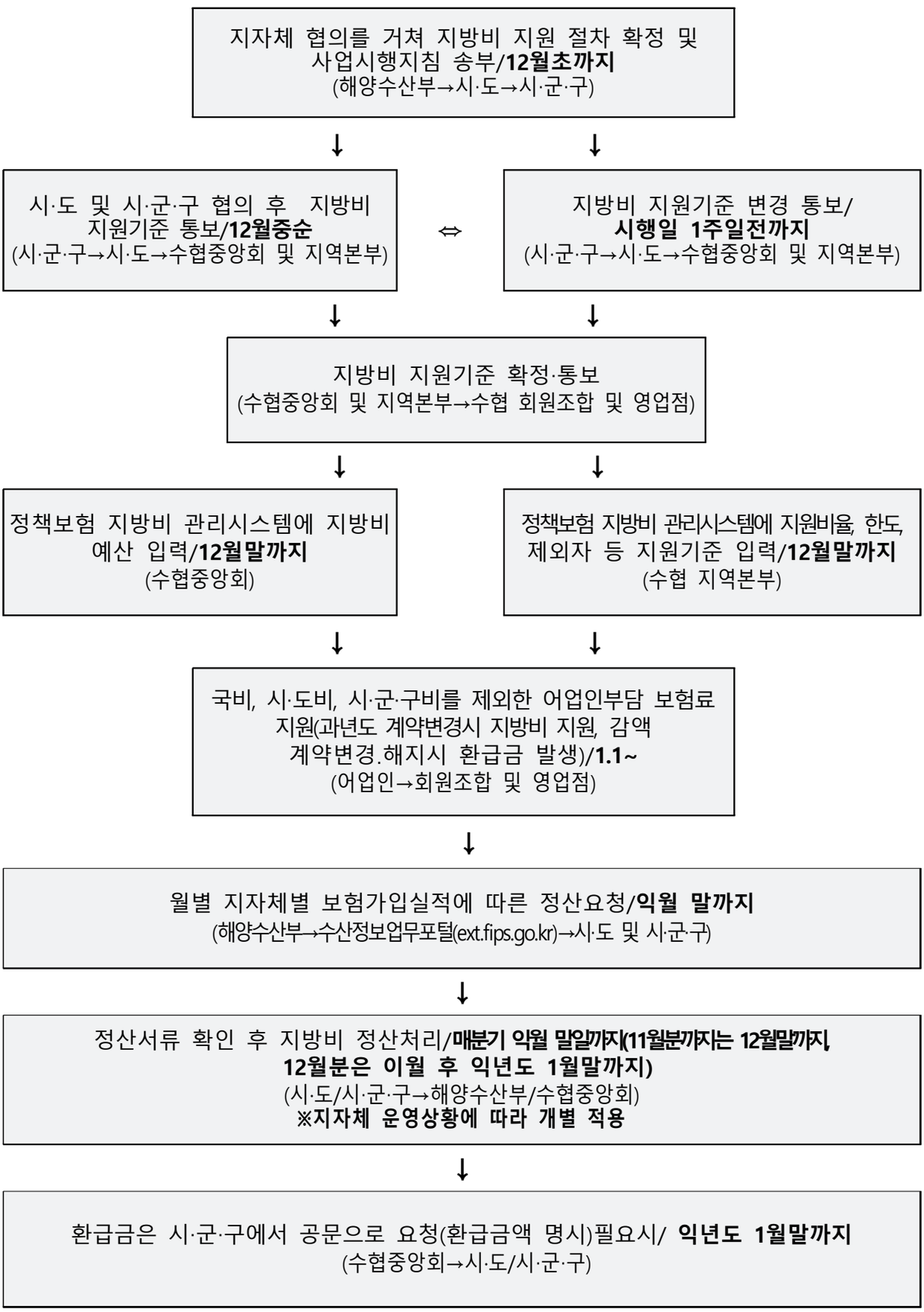

[별표 제2호] 정책보험 지방비 지원 및 처리기준

□ **(지원대상)** 지자체 관내 선적항을 둔「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및 제49조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로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

□ **(지원율)** 지자체는 재정여건 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지원율을 결정하며, 시·도는 시·군·구의 예산 및 지원율, 지원제외자 명단 등 이듬해 지원기준을 확정 후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에 12월 15일까지 통보

○ 지자체는 지방비 지원율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에 시행일 2개월 전까지 통보(어업인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변경은 최대한 자제)

□ **(지원절차)**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국비 및 지자체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자체는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 요청에 따라 지자체 지원보험료 정산

□ **(지원금 청구)**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는 월별 교부청구서와 정산명세서를 익월 20일까지 수산정보통합시스템(www.int.fips.go.kr)에 게시

○ 정산명세서는 지자체 지원보험료, 기정산금액, 미정산금액을 구분표기하며, 지원보험료에 대한 가입 세부 명세를 포함하여 게시

○ 사업도중 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지자체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하지 않고 국고지원과 동일하게 정산금액으로 처리

□ **(지원금 정산)** 지자체는 매분기 익월말까지 수협중앙회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 정산 실시(필요시 월별 정산 가능)

○ 정산 편의를 위해 지원예산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 지원보험료를 초과한 금액 선납 가능(선납에 따른 이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예산)** 지자체는 미지원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과거 보험가입 실적을 바탕으로 연말 최종 가입실적을 예측하여 반영

○ 수협중앙회(지역본부)는 보험가입 증가 등으로 인해 지자체 지원보험료 예산이 부족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속히 통보

○ 지자체는 추가 예산확보 및 차년도 예산으로 정산 또는 지방비 지원중단 여부를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에 시행일 2개월전까지 통보

[별지 제1호]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상황(/ 분기)

(단위 : 척, 명, 천원)

구 분		계 획		집 행 (/ 분기)		집행누계		잔 액		비 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어선원	소계									
	10톤 미만									
	10~30톤									
	30~50톤									
	50톤 이상									
어선	소계									
	10톤 미만									
	10~20톤									
	20톤 이상									

[별지 제2호]

2024년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 지방비 실정보고

(○○시·군)

1. 시 군 명 :

2. 보고사유

○ ○월 기준, 전체 예산 00천원 중 00천원 집행으로 향후 1개월 이내 우리 시·군 지방비 예산의 0% 집행될 것으로 예상됨

○

3. 추진현황

(단위 : 천원)

계 획				실집행실적(누계)			
사업량(명)	예 산			사업량(명)	예 산		
	계	도비(30%	시군비(70%)		계	도비(30%	시군비(70%)

4. 대 책

○

○

* 지방비 선지원을 중단 혹은 지방비 추가확보

5. 요청사항

○ 지방비 추가확보를 위해 도비 000천원 추가 배정을 요청드림

○

*** 지방비 추가확보 요청 시, 시군비 매칭 가능여부도 작성**

[별지 제3호]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1. 시 군 명 :

2.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3. 사업추진실적

○ 사업 추진실적 상세 기재

○

○

4. 기타사항

40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김상국 주무관 전상록	054-880-7710 054-880-7730 054-880-7732

1. 사업목적

가. 어업 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의 안정적 생활 유지를 지원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함

2. 추진방향

가. 어업 작업 중 부상·질병·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확보

3. 근거법령

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나.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4. 시·군별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척, 천원)

시 · 군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 군 비	
합 계	660	70,000	21,000	49,000	
포 항 시	330	36,667	11,000	25,667	
경 주 시	170	20,000	6,000	14,000	
영 덕 군	130	8,333	2,500	5,833	
울 진 군	20	3,333	1,000	2,333	
울 릉 군	10	1,667	500	1,167	

5.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만 15~87세)

나.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다. 지원내용 : 가입자 순수부담금(정부지원액 및 연체금 제외)의 70% 지원

※ 선택가입에 따른 가입자 순수부담금 추가금액 발생 시 가입자 부담으로 하며, 당해 연도 가입자에 한하여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등과 관계없이 소급 적용할 수 있음

라. 지원방법 : 수산정보업무포털 시스템 내 지방비 보조금 계정에 입금(도·시군 별도)

마. 제외대상

○ 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도내 연안 시·군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어업인·어업근로자가 아닌 자 (사업장 등록지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수협 승인을 얻어 가입한 어선원 포함) 단, 산재·어선원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 행위로 형사처벌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어업 허가 등을 받아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

○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바. 제도개선에 따른 변경사항

1) 지방비 후정산 지원방식에서 선지원 방식으로 개편하여 추진(2021년부터)

〈 당 초 〉		〈 변 경 〉
○ 보험 가입 이후 지방비 교부 ○ 연말 지방비 정산에 따른 환급	➤	○ 보험 가입 시 지방비 선지원 ○ 어업인 자부담금만 납부

2) 수산정보업무포털(int.fips.go.kr) 내 매월 지방비 지원금액 확인

3) 매 분기별, 연초 또는 연말 연납 등 어업인 보험가입에 따른 지방비 청구금액 지급

4) 시군에서는 선정산 방식에 따라 지방비 예산 소진실적을 매분기 파악하고, 1개월

이내 연간 예산의 85% 이상 소진이 예상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방비에 대한 실정보고 실시

6. 추진체계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 (협조 : 수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지구별·업종별 수협)

나.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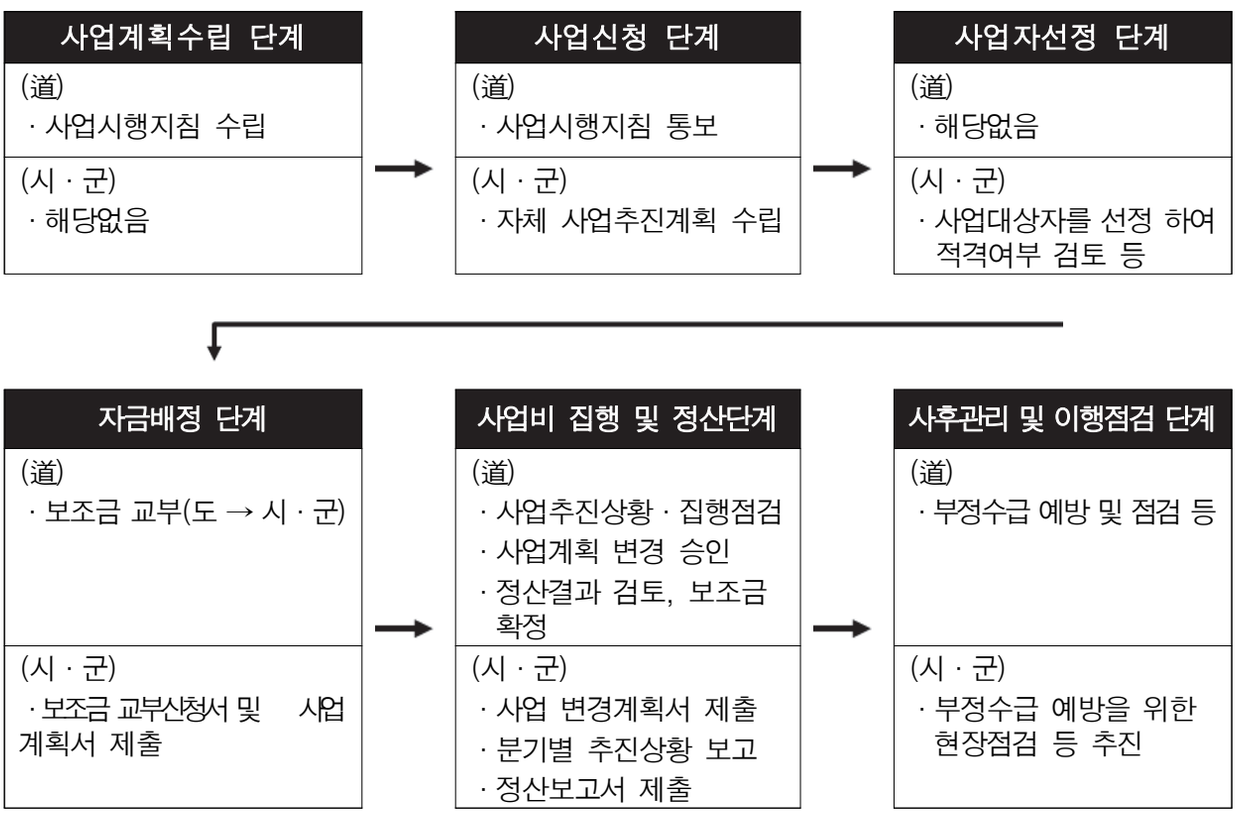

다. 보험료 지급방법

1)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비 중 도비 부담액에 대하여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교부신청 및 자금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사업집행주체는 보험가입자, 사업추진 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3) 수협은 시장·군수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지원계획 안내와 보험가입을 위한 홍보 및 보험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내용에 대하여 교육 실시.
4) 사업집행주체는 수산정보업무포털(int.fips.go.kr)에 게시된 월별 교부신청서 및 정산명세서에 따라 대상자 적격여부, 적정 보험료 산정 등을 확인 후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보조금 송금.

5) 사업집행주체는 보험료 보조금 집행시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지원할 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비 실정보고 등을 통해 조정.

라. 사업비 정산 및 보고

1) 시장·군수는 보조사업 추진상황[별지 제1호]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2) 사업집행주체는 수협에서 환수한 휴항환급금 및 반납금 등 보관금에 대해 도와 협의하여 다음연도 사업예산으로 재사용할 수 있음.
3)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을 완료·확정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 도지사에게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비 집행과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및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 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지침 및 [별표 제1호], [별표 제2호]의 정책보험 지방비 지원사업 세부절차 및 처리기준에 따라 사업 추진하되, 동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주체가 본 사업 근본 취지를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경북도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시·군에서는 지구별(업종별) 수협, 수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장려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 정책보험 지방비 지원사업 세부 절차(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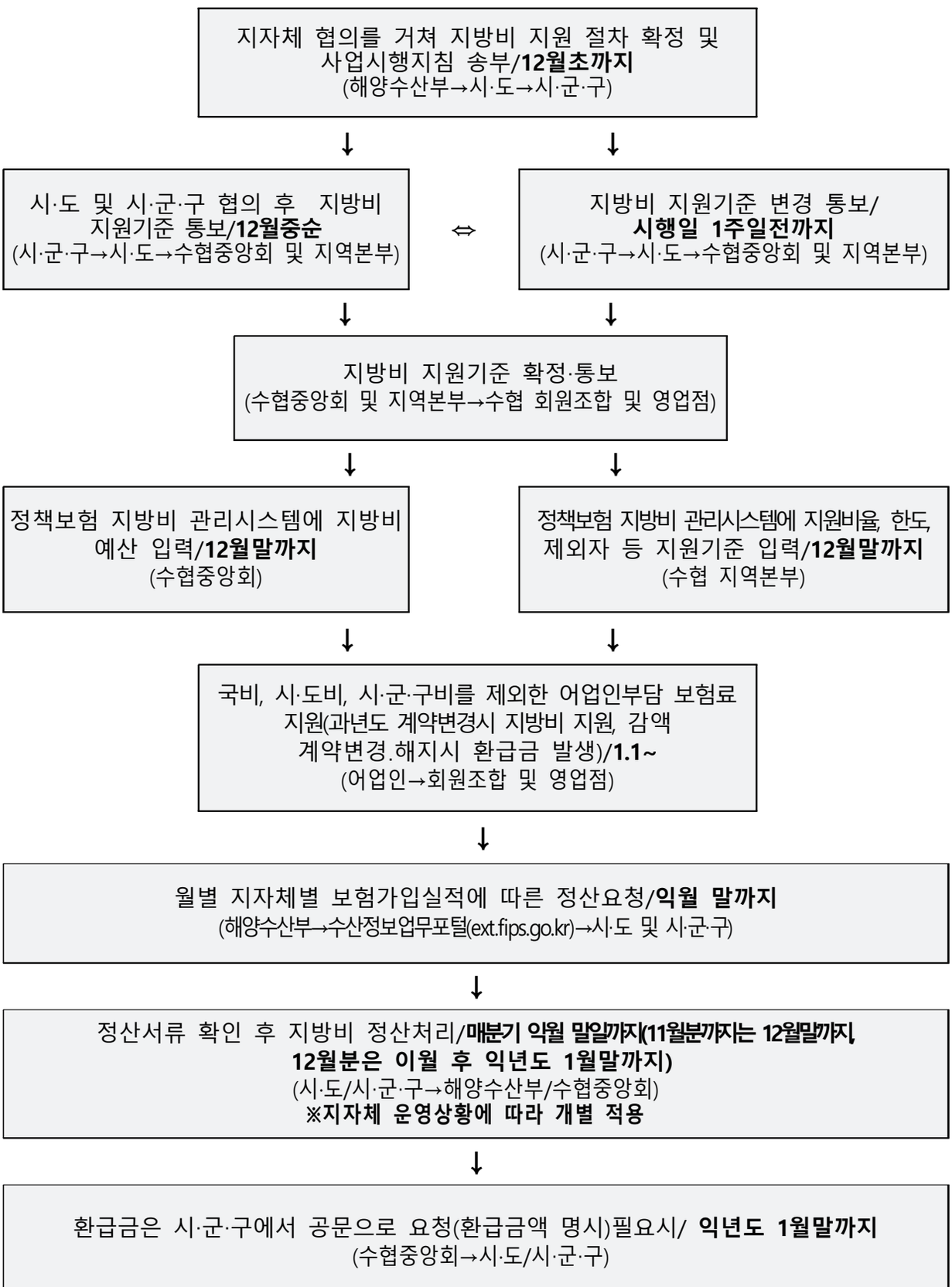

[별표 제2호] 정책보험 지방비 지원 및 처리기준 표준(안)

□ **(지원대상)** 지자체 관내 선적항을 둔「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및 제49조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로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

□ **(지원율)** 지자체는 재정여건 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지원율을 결정하며, 시·도는 시·군·구의 예산 및 지원율, 지원제외자 명단 등 이듬해 지원기준을 확정 후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에 12월 15일까지 통보

○ 지자체는 지방비 지원율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에 시행일 2개월 전까지 통보(어업인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변경은 최대한 자제)

□ **(지원절차)**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국비 및 지자체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자체는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 요청에 따라 지자체 지원보험료 정산

□ **(지원금 청구)**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는 월별 교부청구서와 정산명세서를 익월 20일까지 수산정보통합시스템(www.int.fips.go.kr)에 게시

○ 정산명세서는 지자체 지원보험료, 기정산금액, 미정산금액을 구분표기하며, 지원보험료에 대한 가입 세부 명세를 포함하여 게시

○ 사업도중 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지자체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하지 않고 국고지원과 동일하게 정산금액으로 처리

□ **(지원금 정산)** 지자체는 매분기 익월말까지 수협중앙회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 정산 실시(필요시 월별 정산 가능)

○ 정산 편의를 위해 지원예산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 지원보험료를 초과한 금액 선납 가능(선납에 따른 이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예산)** 지자체는 미지원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과거 보험가입 실적을 바탕으로 연말 최종 가입실적을 예측하여 반영

○ 수협중앙회(지역본부)는 보험가입 증가 등으로 인해 지자체 지원보험료 예산이 부족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속히 통보

○ 지자체는 추가 예산확보 및 차년도 예산으로 정산 또는 지방비 지원중단 여부를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에 시행일 2개월전까지 통보

[별지 제1호]

보조사업 추진상황(　　/　분기)

1. 사　업　명 :
2. 사업집행주체 :
3. 보조　사업자 :
4. 사업추진내용 :
5. 추 진　현 황

(단위 : 명, 천원)

사업계획				집행실적(당분기)				집행실적(누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기타		계	도비	기타		계	도비	기타

6. 문제점 및 애로사항(부진원인 등)

7. 대책 및 금후 추진계획

[별지 제2호]

2024년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지방비 실정보고

(○○시·군)

1. 시 군 명 :

2. 보고사유

○ ○월 기준, 전체 예산 00천원 중 00천원 집행으로 향후 1개월 이내 우리 시·군 지방비 예산의 0% 집행될 것으로 예상됨

○

3. 추진현황

(단위 : 천원)

계 획				실집행실적(누계)			
사업량(명)	예 산			사업량(명)	예 산		
	계	도비(30%	시군비(70%)		계	도비(30%	시군비(70%)

4. 대 책

○

○

* 지방비 선지원을 중단 혹은 지방비 추가확보

5. 요청사항

○ 지방비 추가확보를 위해 도비 000천원 추가 배정을 요청드림

○

*** 지방비 추가확보 요청 시, 시군비 매칭 가능여부도 작성**

[별지 제3호]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1. 시 군 명 :

2.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3. 사업추진실적

○ 사업 추진실적 상세 기재

○

○

4. 기타사항

41 어업용 유류비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김상국 주무관 전상록	054-880-7710 054-880-7730 054-880-7732

1. 사업목적

가.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 및 어업경비 상승 등으로 어업인이 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어업용 유류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2. 추진방향

가. 면세유 사용어선에 대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를 지원 어업경비 부담 경감

나. 민생경제 안정차원에서 도내 전 동력어선을 대상으로 균등 지원

3. 근거법령

가.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나.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4. 시·군별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척, 천원)

시 · 군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 군 비	
합 계	**2,936**	**1,333,333**	**400,000**	**933,333**	
포 항 시	1,275	573,733	172,120	401,613	
경 주 시	396	178,200	53,460	124,740	
영 덕 군	574	258,300	77,490	180,810	
울 진 군	555	249,733	74,920	174,813	
울 릉 군	136	73,367	22,010	51,357	

5.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도내 연안 시·군에 동력어선을 등록한 자

나.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다. 지원내용 : 어업용 면세유(경유, 휘발유)

라. 지원한도

○ (총사업비 기준) 10톤 미만 어선 500천원, 10톤 이상 어선 800천원 이내

※ 선망어업 등 선단을 이루는 어선 및 어장관리선 등은 각 어선별 지원한도 적용

마. 제외대상

○ 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어업 허가 등을 받아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

○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법」 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6. 추진체계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사업대행 가능)

나. 사업비의 집행

1) 어업용 유류비는 어선별 사용실적에 따라 사업 집행주체가 지급함
2) 면세유류 사용실적은 어선소유자의 유류카드 또는 수협의 유류 출고지시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함
3) 시·군과 면세유 공급기관의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해당 어선의 선적항 관할 시·군에서 지원
4) 선적항이 변경된 경우 전입 시·군에서 지원하며, 전출 시·군으로부터 면세유 공급 실적을 제출받아 전출 시·군에서 공급 받지 못한 잔량에 대하여만 공급함
5) 사업 집행주체는 사업의 적절한 추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적정한 시기에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당해 회계연도 말 이전에 잔여 사업비 발생 예상분에 대하여 톤급별 객관적인 조정방안 등을 마련하여 척당지원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6) 사업 집행주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7) 사업 집행주체는 면세유 공급 완료시까지 본 계획에 의거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불법사용자(어업 외 타 용도사용 포함)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7. 정산보고 및 행정사항

가. 사업비 집행과 정산 및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 추진상황[별지 제1호]을 반기별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2호]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 도와 협의하여 우리 도로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등 사업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나. 본 사업의 시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군에서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다.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 추진상황(반기)

(단위 : 척, 천원)

구 분		계 획		집 행		집행누계		잔 액		비 고
		척 수	금 액	척 수	금 액	척 수	금 액	척 수	금 액	
합계	계									
	10톤 미만									
	10톤 이상									
00 수협	계									
	10톤 미만									
	10톤 이상									
00 수협	계									
	10톤 미만									
	10톤 이상									

[별지 제2호]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1. 시 군 명 :

2.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3. 사업추진실적

○ 사업 추진실적 상세 기재

○

○

4. 기타사항

42 해난사고 구조동원어선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김상국 주무관 이수현	054-880-7710 054-880-7730 054-880-7733

1. 사업목적

가. 해난사고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어선에 대한 기본 손실보상으로 구호 활동 장려

나. 사고어선의 신속한 구조·예인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2. 추진방향

가.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 구조를 위해 인근해역 조업어선의 구조 활동 참여 유도를 통한 어선사고 피해 최소화 도모

3. 근거법령

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

나.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경비 지원)

4. 시·군별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척, 천원)

시 · 군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 군 비	자 부 담	
합 계	**111**	**56,667**	**17,000**	**39,667**	**-**	
포 항 시	46	23,333	7,000	16,333	-	
경 주 시	14	7,400	2,220	5,180	-	
영 덕 군	23	11,667	3,500	8,167	-	
울 진 군	19	9,800	2,940	6,860	-	
울 릉 군	9	4,467	1,340	3,127	-	

5. 사업계획

가. 지원대상 : 경상북도 해상에서 발생한 연근해어선 사고 구호 활동에 참여한 어선의 소유자

나. 지원조건 : 보조 100%(도비 30%, 시군비 70%)

다. 지원내용 : 해난구호활동 참여어선의 인건비, 유류비, 물품사용료 등

라. 지원기준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및 [별표 2]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당의 지급기준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

마. 제외대상

○ 구조된 어선의 선주, 선장, 선원 등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한 자

○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 조난된 물건을 가져간 자

6. 추진체계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시행체계

1) 도

가) 시행지침 수립·시달

나) 예산배정

다) 추진상황 점검·확인

라) 정산검토 및 반납 조치

2) 시·군

가) 지원 신청서 접수 및 보조금 지급·정산

나) 사업결과 취합,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반납 조치

다. 사업시행 및 사업비의 집행

1) 해난구호활동에 대한 경비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2) 해난사고 발생 해역의 수색·구조·예인 활동에 참여한 어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난사고 어선의 선적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지원기준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지급하여야 하며, 지원 신청자 및 참여자 본인의 은행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함

7. 정산보고 및 행정사항

가. 사업비 집행과 정산 및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 추진상황[별지 제2호]을 반기별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 도와 협의하여 우리 도로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등 사업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나. 본 사업의 시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군에서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다.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별지 제1호]

해난사고 구조동원 참여자 비용 지원 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신청인
(대표자)</td><td colspan="3">성명</td><td colspan="3">생년월일</td></tr>
<tr><td colspan="3">주소</td><td colspan="3">전화번호</td></tr>
<tr><td rowspan="6">유류비
수급자</td><td>수급자의 성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지급은행 및 계좌번호</td><td colspan="5"></td></tr>
<tr><td>선 명</td><td colspan="2">(톤)</td><td>어선번호
(선 종)</td><td colspan="2"></td></tr>
<tr><td>소 유 자</td><td colspan="2"></td><td>기관마력</td><td colspan="2"></td></tr>
<tr><td>사용연료</td><td colspan="2">[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td><td>유류소모량</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td></tr>
<tr><td rowspan="3">활동
명세</td><td>시간</td><td colspan="5">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td></tr>
<tr><td>활동상세</td><td colspan="5">※ 6하원칙에 의거 상세내용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조치사항</td><td colspan="5">[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td></tr>
<tr><td rowspan="6">참여자
명단
(별첨가능)</td><td>이름</td><td>생년월일</td><td>활동내용</td><td colspan="2">지급은행 및 계좌번호</td><td>참여자
날인</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서명 또는 인)</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서명 또는 인)</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서명 또는 인)</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서명 또는 인)</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7">해난사고 구조동원어선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해난구호 참여 비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7">해난사고 구조동원어선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 신청인이 해난구호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 (인)

00 시장·군수 귀하</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6">1. 신청자 및 참여자 통장사본 1부.
2. 선박의 소유자 및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활동시간을 증비할 수 있는 자료(출·입항신고서 등) 1부.
4. 해난구호활동에 따른 유류소모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td></tr>
</table>

[별지 제2호]

해난사고 구조동원어선 지원사업 추진상황(반기)

(단위 : 척, 천원)

구 분	계 획		(반기)집 행		누 계		비 고
	척 수	금 액	척 수	금 액	척 수	금 액	
00 시·군							

[별지 제3호]

해난사고 구조동원어선 지원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1. 시 군 명 :

2.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3. 사업추진실적

○ 사업 추진실적 상세 기재

○

○

4. 기타사항

43 대게 불법어업 민간 감시선 운영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김상국 주무관 이수현	054-880-7710 054-880-7730 054-880-7733

1. 사업목적

가.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 해역 내 민간 자율감시선을 배치하여 연근해 통발어선의 불법어업 예방 및 대게 자원 보호

2. 추진방향

가.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의 자율적 감시 등 민간주도형 어업질서 확립

나. 민관 합동 불법어업 감시체계 구축

3. 근거법령

가.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나.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4. 시·군별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척, 천원)

시 · 군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174**	**150,000**	**45,000**	**105,000**	
영 덕 군	110	75,000	22,500	52,500	
울 진 군	64	75,000	22,500	52,500	

5.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 대게자망 어업인 및 단체

나.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다. 지원내용 : 자율 민간감시선 운영에 따른 유류비

※ 유류비는 지정된 주유소에서 급유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사업 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경상경비 집행할 수 있음

라. 제외대상

○ 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어업 허가 등을 받아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

○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감척 대상 어선(사업대상자 선정) 또는 「어선법」 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6. 추진체계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비의 집행

1) 보조 사업자는 감시선 운영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시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2) 사업 집행주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7. 정산보고 및 행정사항

가. 사업비 집행과 정산 및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 추진상황[별지 제1호]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2호]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 도와 협의하여 우리 도로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등 사업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나. 본 사업의 시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군에서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다.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별지 제1호]

대게 불법어업 민간 감시선 운영 추진상황(　/　분기)

(단위 : 척, 명, 천원)

구 분	계 획		집 행		집행누계		잔 액		비 고
	물 량 (척/명)	금 액	물 량 (척/명)	금 액	물 량 (척/명)	금 액	물 량 (척/명)	금 액	
합 계									
00수협									
00수협									

[별지 제2호]

대게 불법어업 민간 감시선 운영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1. 시 군 명 :

2.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3. 사업추진실적

○ 사업 추진실적 상세 기재

○

○

4. 기타사항

44 대게어장 환경정비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김상국 주무관 이수현	054-880-7710 054-880-7730 054-880-7733

1. 사업목적

가. 경북 동해안 특산물인 대게의 산란·서식장에 침적되어 있는 폐어망·어구 등 해양쓰레기를 대게 포획·채취 금지기간 동안 수거함으로써 대게자원 보호 및 수산자원 증대 도모

2. 추진방향

가. 대게 산란·서식장에 침적된 폐어망·어구 등의 수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게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구축

나. 대게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을 사업에 참여시켜 사업효과 높이고, 어업인의 연근해어장 환경보호 및 개선의욕 고취

3. 근거법령

가.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나.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 제5조(지원범위)

4. 시·군별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식, 천원)

시 · 군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2	210,000	63,000	147,000	
영 덕 군	1	105,000	31,500	73,500	
울 진 군	1	105,000	31,500	73,500	

5.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나. 지원내용

○ 대게어장 침적폐어망·어구 수거비(어선활동비, 침적폐그물 수거를 위한 마대 및 기타 장비 구입·임차비, 보험료 등 부대경비 등)

○ 폐어망·어구 폐기물 집하장 설치 및 처리비 등

다. 사업구역 : 시·군의 대게 주 서식 해역

○ 사업 집행주체는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 추진 전 어업인단체 등과 협의하여 폐어망·어구가 많이 침적된 해역을 사업구역으로 선정

라. 사 업 량 : 당해 연도 예산액에 맞는 사업량 산정

○ 사업량 산정방법 : 최근 3년간 예산액 대비 수거량의 평균을 산출하여 나온 1톤당 수거비용을 당해 연도 예산에 적용하여 기초사업량 산정하거나 전문업체를 통한 실시설계용역결과를 기초사업량으로 산정하여 추진

마. 사업비 집행기준

○ 활동비(1척당 1일(8시간), 작업인원 2명 기준)

- 3톤 이상 5톤 미만 : 112만원/척
- 5톤 이상 7톤 미만 : 133만원/척
- 7톤 이상 10톤 미만 : 172만원/척

※ 안전작업 및 작업능률을 위해 1척당 2명으로 작업인원을 맞춘 어선만 참여 가능하며,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3톤 미만 어선의 참여는 제한함

※ 인건비 및 유가·물가상승 등으로 활동비를 조정하거나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척당 작업인원을 조정이 필요할 경우, 시·군에서는 사전에 도에 관련내용 보고 및 승인 받아야 함

○ 마대 및 기타장비 등

- 관련업체 2개소 이상에서 견적 받아 가장 저렴한 곳에서 물품구입 및 장비 임차

※ 마대 규격은 사업 집행주체와 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

○ 폐어망·어구 집하장 설치 및 처리

- 폐어망·어구 집하장은 총사업비의 10% 이내 비용으로 설치·보수 등을 할 수 있으며, 폐어망·어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한 허가·신고 등을 득한 업체에 위탁 처리

6. 추진체계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시행자 :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어업인단체장 등

○ 사업 집행주체와 사업시행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사업 집행주체는 지역 여건상 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협, 어업인단체 등에서 사업 추진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다. 시행체계

1) 도

가) 시행지침 수립·시달

나) 예산배정

다) 사업추진상황 점검·확인

라) 사업 정산 검토 및 반납 조치

2) 시·군

가) 세부사업계획 수립·시행

나) 사업량 산정 및 사업시행자 선정, 사무위탁계약 체결

※ 시·군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사업구역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후 사무위탁계약 체결

다) 사업 추진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 사업 착수 전 사업해역 내에 있는 어장·어망 부설 현황을 파악 후 어업인 대상 자진 철거독려 및 홍보, 철거 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함
-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본 사업의 추진 상황을 수시 확인토록 함

라)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마) 사업결과 취합,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반납조치

3) 사업시행자

가)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및 시·군 제출·승인, 사무위탁계약서에 계약된 사항 수행

나) 사업계획 변경 시, 집행주체에게 협의 및 승인 후 사업 추진 등

7. 정산보고 및 행정사항

가. 사업비 집행과 정산 및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 도와 협의하여 우리 도로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등 사업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나. 본 사업의 시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군에서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다.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참고사항〉 어선 활동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계	노무비(2인)	유류비(8시간)	어선사용경비	비고
3톤 이상 5톤 미만	1,121,023	351,000	670,000	100,000	천원단위 절사 ('23년도 기준)
5톤 이상 7톤 미만	1,337,000	351,000	836,000	150,000	
7톤 이상 10톤 미만	1,726,000	351,000	1,145,000	230,000	

○ 노무비 : 2023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선원) 적용(1명 175,538원/일)

○ 유류비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유류공급사업요령 별표1(경유사용어선의 시간·마력당 연료소요량 기준)
- 한국석유공사 전국 자동차경유 리터당 평균금액(1,628원/L, 2023년 11월 기준)
- 톤급별 평균마력 적용(경상북도 등록어선 통계자료 기준)

[별표 제1호]

대게어장 환경정비사업
사무위탁 계약서

20 . . .

“갑” ○○시장·군수 (인)

“을” ○○장 (인)

사무위탁 계약서

□ 사 업 명 : ○○시·군 대게어장 환경정비

□ 계약금액 : 금 원

○○시장·군수(이하"갑"이라 한다)와 ○○장(이하"을"이라 한다)은 대게어장 환경정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동해안 특산물인 대게의 산란·서식장에 침적되어 있는 폐어망·어구 등의 해양쓰레기를 대게 포획·채취 금지기간 동안 수거함으로써 대게자원 보호 및 수산자원 증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무위탁 내용 및 승인) ① 사무위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게어장 내 침적된 폐어망·어구 등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2. 수거된 폐어망·어구 폐기물 집하장 설치 및 처리사업
3.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시행 시에는 "갑"의 승인과 감독 하에 실시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 한다.

다만,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집행계획 수립) "을"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착수 전에 집행일정, 사업내용,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등의 조정) ①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업내용을 달리 할 경우에는 "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물량 등의 변동으로 전체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요청하며, “갑”은 경상북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업무의 검사와 감독)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 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 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 ① “을”은 폐어망·어구 수거를 위해 장비·물품 등 구입·임차하는 경우, 관련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서류, 현장사진 등)를 구비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상황 확인을 위하여 사업 시행지침 [별표 제2호] 작업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을”은 폐어망·어구를 수거 작업 전 활동어선 작업자에게 폐어망·어구에 걸린 대게 등 수산자원을 현장에서 즉시 방류하도록 교육시켜야 하며, 작업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안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을”은 활동어선과 계약 시, 폐어망·어구 수거 작업함에 있어 폐어망·어구에 걸린 수산자원은 현장에서 즉시 방류하고, 이를 위반할 시 활동비용 지급 불가하다는 내용과 수거작업은 2인 1조로 구성되어 실시한다는 내용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 계약하여야 한다.

④ “을”은 수거된 폐어망·어구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적재해 두는 경우에는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부담) ① 사업수행 중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된 때 “갑”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보고하고 가능한 모든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9조(배상책임) ① 사업수행 중 발생한 “을”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을”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및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을”이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귀속) 사업수행을 위하여 “갑”의 사업비로 취득하였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유·무형의 재산은 “갑”의 소유로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물품으로 “갑”의 관리가 곤란한 소모성물품은 제외한다.

제11조(추진상황 보고 등) “을”은 “갑”이 요구하는 경우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별도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시에는 1개월 이내 사업결과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12조(계약해약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할 때
2. “갑”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할 때
3. 기타 사정으로 “갑”, “을”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
4.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5. 계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제13조(해약 등에 따른 정산) “을”은 이 계약이 해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갑”이 “을”에게 지급한 예산에 대하여 지출증빙 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경리구분) “을”은 본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지급) ① “갑”은 “을”이 청구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의 개산급으로 “을”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사업비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갑”이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자료 보존) “을”은 사업에 관계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과업수행 촬영사진 등을 유지·보관하여야 하며, “갑”의 인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규칙 및 정산) ① 이 계약에 의한 회계는 예산회계 관계 법령, 기타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을”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서를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반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해석의 결정) 본 계약의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써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갑”, “을”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며, 다만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경상북도의 결정에 의한다.

제19조(기타사항) 전 사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갑”·“을” 쌍방이 협의·결정한다.

제20조(계약서)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각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시장·군수 (인)

“을” ○○장 (인)

[별표 제2호]

대게어장 환경정비사업 작업일지

○ 작업일자 :

○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 활동어선 작업내용

선 명 (어선번호)	톤 수	작업시간	작업구역 (경위도 표시)	작 업 량	작 업 자		비고
		00:00 ~ 00:00		• 마대 : • 통발 : • 기타 :	선 장	(서명 또는 인)	
					선 원	(서명 또는 인)	
		00:00 ~ 00:00		• 마대 : • 통발 : • 기타 :	선 장	(서명 또는 인)	
					선 원	(서명 또는 인)	
		00:00 ~ 00:00		• 마대 : • 통발 : • 기타 :	선 장	(서명 또는 인)	
					선 원	(서명 또는 인)	
		00:00 ~ 00:00		• 마대 : • 통발 : • 기타 :	선 장	(서명 또는 인)	
					선 원	(서명 또는 인)	

※ 붙임 :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 각 1부.

[별표 제3호]

대게어장 환경정비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1. 시·군명 :

2.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수거량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3. 사업추진실적

○ 사업추진해역

○ 대게어장 환경정비 투입장비 및 구입내용 등 관련 사항 기재

○ 폐어망·어구 수거비용 및 처리비용 구분 기재 등 사업추진결과 기재

4. 기타사항

45 외국인 선원숙소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김상국 주무관 전상록	054-880-7710 054-880-7730 054-880-7732

1. 사업목적

가.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 등 근로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2. 추진방향

가.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 및 숙소 임대료 지원으로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

나. 근로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생산성 향상

3. 근거법령

가.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 의 지원)

나.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4. 시·군별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시 군 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6개소	287,170	50,000	116,667	120,503	
포 항 시	1	80,000	12,000	28,000	40,000	
울 진 군	4	91,760	13,764	32,116	45,880	
울 릉 군	1	115,410	24,236	56,551	34,623	

5. 사업추진계획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로 한다, 다만 지역설정에 따라 지구·업종별수협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나. 지원조건

○ 지 원 율 : (운영비)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임대료)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지원대상 : 국·도비 등을 지원하여 건립한 외국인 선원숙소 및 울릉지역 어선 어업인이 외국인 선원 거주의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

다. 사업내용

○ 외국인선원숙소 운영비 지원
- 냉·난방에 사용되는 유류·전기사용료
- 전기·수도·인터넷 등 사용료
- 기타 외국인선원숙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외국인선원숙소 임대료
- 울릉지역 어선 어업인이 외국인 선원 거주의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 임대 비용

○ 사업시행 요령
- 집행주체는 외국인선원숙소의 합리적인 운영과 에너지 낭비방지 및 절감을 위하여 외국인선원숙소별 거주인원, 면적등을 반영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매월 운영비 내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익월 운영비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운영비의 지원은 고지서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임대료 지원은 계약서 및 외국인선원 거주 유무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매월 지급한다.

6. 보조금 교부결정

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령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보조금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확정(취소, 변경포함)은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7. 사업의 관리

가.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업집행관리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집행 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8. 행정사항

가. 사업비 집행 및 관련법령 준수

○ 사업비 집행과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 법률에 정한 규정에 의한다.

○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비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나. 사업집행주체는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보고 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 및 임대료 지원 추진상황(　/　분기)

(단위 : 명, 천원)

구 분 (수협별)	계 획		집 행		집행누계		잔 액		비 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아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아래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아래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46 외국인선원 도입비용 지원 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 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김상국 주무관 전상록	054-880-7710 054-880-7730 054-880-7732

1. 사업목적

가. 국내 선원의 고령화 및 승선기피로 인해 발생한 부족한 선원수요를 외국인으로 대체
나. 외국인선원 도입 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선원고용 안정 도모

2. 추진방향

가. 선원수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우수한 외국인 선원 고용
나. 외국인 선원 도입비용 일부 지원으로 선원 고용 안정

3. 근거법령

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6조

4. 시·군별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시 군 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기 타	
합 계	1개소	120,000	10,800	25,200	84,000	
포 항 시	1	120,000	10,800	25,200	84,000	

5. 사업추진계획

가. 집행주체 : 시장으로 한다, 다만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위탁수행(수협, 수협자회사 등)을 할 수 있다.

나. 지원조건

○ 지 원 율 : 도비 9%, 시군비 21%, 기타 70%(수협 35% 부담조건)

○ 지원금액 : 1인당 120만원 한도 내

○ 지원대상 : 외국인 선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협 또는 수협 출자법인을 통해 외국인 선원을 도입한 어업인

다. 사업내용

○ 외국인선원 도입에 필요한 비용

– 항공료, 교육비, 건강검진비, 외국인 선원도입에 필요한 기타 비용

6. 보조금 교부결정

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령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보조금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확정(취소, 변경포함)은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7. 사업의 관리

가. 사업집행주체는 도입비용에 대한 증빙서류 검증 및 실비 정산 등 동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확인점검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업집행관리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집행 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8. 행정사항

가. 사업비 집행 및 관련법령 준수

○ 사업비 집행과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률에 정한 규정에 의한다.

○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비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나. 사업집행주체는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보고 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외국인선원 도입비용 지원 사업 추진상황(　/　분기)

(단위 : 명, 천원)

구 분	계 획		집 행		집행누계		잔 액		비 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47 연근해어선 상가유류비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김상국 주무관 전상록	054-880-7710 054-880-7730 054-880-7732

1. 사업목적

가. 도서지역 조선소 부재로 어선의 상가(上架)·수리·도색을 위해 육지로 이동(왕복)시 발생되는 유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도서지역 어업경영 안정 도모

2. 추진방향

가. 어선의 상가(上架)·수리·도색을 위해 울릉군 이외의 항포구로 이동한 어선에 대하여 소요된 유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경비 부담 경감

나. 민생경제 안정차원에서 울릉군 선적어선 중 어선의 상가(上架)·수리·도색을 위해 울릉군 이외의 항포구로 이동한 어선대상으로 지원

3. 근거법령

가.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나.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4. 시·군별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천원)

시·군별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군비	자부담	
울릉군	127,000	22,860	53,340	50,800	

5. 사업추진계획

가. 집행주체 : 울릉군수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 및 어업여건에 따라 지구별 수협장에게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나. 지원대상자 : 울릉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全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고 2024년 어선의 상가(上架)·수리·도색을 위해 울릉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한 어선

다. 지원대상 유류 : 면세유류(경유)

라. 지원조건 및 제외 대상

○ 지원율 : 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지원상한액 : 아래와 같이 연간 1회에 한하여 톤급별로 차등 지원한다.

- 10톤 미만 1,680천원, 10~20톤 미만 2,240천원, 20톤 이상 2,800천원 까지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

1)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어업 허가 등을 받아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

2)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3) 「어선법」 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마. 지원방법

○ 울릉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시 소요되는 유류비는 포항항 기준 톤급별 지원기준에 따라 사업 집행주체가 지급한다.

○ 해당 어선의 상가(上架)·수리·도색을 위해 울릉군 이외의 항포구로 이동한 사실 확인은 어선의 상가 및 수리 확인서류(세금계선서, 견적서 등), 입·출항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다.

6. 보조금 교부결정

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령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보조금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확정(취소, 변경포함)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7. 사업의 관리

가.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울릉군수는 사업 완료시까지 본 계획에 의거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불법 지원대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업집행 관리 상 필요한 세부사항이 있을 시는 사업집행주체(울릉군)가 따로 정할 수 있다.

8. 행정사항

가. 사업비 집행 및 관련법령 준수

○ 사업비 집행과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법률에 정한 규정에 의한다.

○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비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48 조건불리지역 어선 엔진개방검사 비용 지원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김상국 주무관 전상록	054-880-7710 054-880-7730 054-880-7732

1. 사업목적

가. 어업 여건이 열악한 울릉군 어업인의 어선 엔진개방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엔진 노후에 따른 해양선박사고를 예방하고, 어업경영 개선 및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

2. 추진방향

가. 어선법에 따른 어선 엔진 개방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 여건이 열악한 울릉군 어업인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나. 노후 엔진 개선을 통해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안정적 어업활동 지원

3. 근거법령

가.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나.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4. 2023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군비	자부담	
울릉군	36,000	10,800	25,200	0	

5. 사업추진계획

가. 집행주체 : 울릉군수로 한다.

나. 지원대상자 : 울릉군에 어선을 등록하고, 주민등록상 울릉군 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어선법에 따른 당해연도 엔진개방검사 대상 어업인

다. 지원조건 및 제외 대상

○ 지원율 : 도비 30%, 군비 70%

○ 1척 당 지원 상한액 : 아래와 같이 연간 1회에 한하여 톤급별로 차등 지원한다.

- **(10톤 미만)** 어선 엔진 마력당 15천원, **(10톤 이상)** 어선 엔진 마력당 10천원 지원
-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한다.

○ 지원제외 대상

1)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어업 허가 등을 받아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

2)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3)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감척 대상 어선(사업대상자 선정) 또는 「어선법」 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라. 지원방법

○ 울릉군에서는 사업신청자의 엔진개방 검사 대상 여부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하고, 사업신청서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 보조금 지급은 어업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선 엔진개방 검사가 완료된 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확인서(기관개방검사 사실 확인증명서) 및 기관정비 수리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후 지급한다.

6. 보조금 교부결정

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령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확정(취소, 변경포함)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7. 사업의 관리

가.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울릉군수는 사업 완료시까지 본 계획에 따라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불법 지원대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업집행 관리 상 필요한 세부사항이 있을 시는 사업집행주체(울릉군)가 따로 정할 수 있다.

8. 행정사항

가. 사업비 집행 및 관련법령 준수

○ 사업비 집행과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률에 정한 규정에 의한다.

○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비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1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어선 엔진 개방검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자</td><td>단 체
등의 명칭</td><td colspan="5"></td></tr>
<tr><td>성 명
(대표자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전 화
번 호</td><td>( )</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6">신청내용</td><td>사 업 명</td><td colspan="5"></td></tr>
<tr><td>어선명</td><td colspan="2"></td><td colspan="3">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td></tr>
<tr><td>총톤수
(마 력)</td><td colspan="2"></td><td>종 류</td><td colspan="2">허가번호(허가기관)</td></tr>
<tr><td>어선번호</td><td colspan="2"></td><td rowspan="2"></td><td colspan="2" rowspan="2"></td></tr>
<tr><td>선적항</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 업 비
(천원)</td><td>계</td><td>도 비(30%)</td><td>군비(70%)</td><td colspan="2">비 고</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사업내용별 규모
(품명, 규격 등)</td><td colspan="5">○
○</td></tr>
</table>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제2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어선 엔진 개방검사비용 지원사업 상·하반기 보고서

☐ 사업개요 (연간 계획)

○ 사업비/사업량 :

☐ 누적실적(상·하반기)

○ 지원대상 : 척

○ 지원척수 : 척(지원대상 대비 %)

○ 지원금액 : 천원

☐ 상·하반기 사업비 집행상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도비	군비	보조금 교부 결정일	보조금 교부일	보조금 지급(입금)일	사업공정 (예산액 기준)	문제점 (부진원인) 및 대책
예산액								
반기 실집행액								
누적 실집행액								

○ 반기중 지원대상/지원척수 : 척, 명/ 척

○ 반기중 지원금액 : 천원

☐ 금후 추진계획

○

49 어선 폐선 처리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김상국 주무관 이수현	054-880-7710 054-880-7730 054-880-7733

1. 사업목적

가. 어선 폐기비용 지원으로 어업인의 방치어선 폐선을 유도

나. 항포구를 이용하는 어선의 계류지를 확보하고 어항환경 개선에 기여

2. 추진방향

가. 어선의 폐선으로 항포구 환경 개선

나. 폐기비용의 지원을 통하여 어업인의 부담 경감

3. 근거법령

가. 어촌·어항법 제49조(사업비 지원)

4. 시·군별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척, 천원)

시 · 군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 군 비	자 부 담	
합 계	**45**	**300,000**	**45,000**	**105,000**	**150,000**	
포 항 시	30	200,000	30,000	70,000	100,000	
영 덕 군	15	100,000	15,000	35,000	50,000	

5.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도내 연안 시·군에 어선을 등록한 자

나. 지원조건 : 보조 50%(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다. 지원내용 : 폐어선 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라. 지원한도 : 톤당 1,200천원(어선등록원부상 톤수)

※ 시군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마. 제외대상

○ 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어업 허가 등을 받아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

○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6. 추진체계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시행체계

1) 도

가) 시행지침 수립·시달

나) 예산배정

다) 추진상황 점검·확인

라) 정산검토 및 반납 조치

2) 시·군

가)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나) 사업자 선정 및 확정(변경)

다) 보조금 교부결정

라) 사업추진 지도감독 및 관리

마)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바) 사업결과 취합,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반납 조치

다. 사업자 선정 및 시행방법

1) 사업 집행주체는 사업신청공고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를 제출받아 접수함

2) 사업 집행주체는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그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 후 사업자를 선정함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신청어선의 톤수가 작은 어업인 (동 순위일 경우, 신청어선의 선령이 높은 어업인 우선)

※ 시·군 자체 실정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 조정·추가 가능

3) 이 경우 필요시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시·군에서 운영·관리하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포기자 발생에 대비한 예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라. 사업비의 집행

1) 사업비는 선박해체업에 등록한 업체(조선소 등)에서 어선 폐선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보조금은 톤급별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율에 따라 지원하되, 초과되는 금액은 사업자가 부담함
2) 보조사업자(폐어선의 소유자)는 동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함.
3) 보조사업자는 공급자(폐선업체)와 사전 계약 시 폐선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보조금 교부 신청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4) 보조사업자는 공급자(폐선업체)로부터 폐선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 등 관련 서류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폐선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5)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자가 폐선처리 시 어선법 및 폐선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폐선 처리 후 관할 어선등록지에서 어선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함
6)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완료 보고서, 관련서류 검토 및 폐선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7) 보조금 지급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임장 첨부 시 위임 받은 자에게 지급이 가능함

7. 정산보고 및 행정사항

가. 사업비 집행과 정산 및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 추진상황[별지 제2호]을 반기별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 도와 협의하여 우리 도로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등 사업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나. 본 사업의 시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군에서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다. 사업 집행주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어선 폐선 처리지원 사업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신청자</td><td>성 명
(대표자명)</td><td></td><td>생년
월일</td><td></td><td>전화
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6">신청내용</td><td rowspan="2">어 선 명</td><td rowspan="2"></td><td>어선번호</td><td colspan="2"></td></tr>
<tr><td>톤 수</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신청사업과 관련된 허가 및 면허</td><td>종 류</td><td colspan="4">허가·면허 번호 (허가기관)</td></tr>
<tr><td></td><td colspan="4"></td></tr>
<tr><td>상세 신청내용</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사 업 비
(원)</td><td>계</td><td>도비(15%)</td><td>시군비(35%)</td><td>자부담(50%)</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착·준공계획</td><td colspan="5"></td></tr>
</table>

상기 본인은 어선 폐선 처리지원 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자 선정기관에서 다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어선검사증서(사본) 1부.

○ ○ (시장, 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어선 폐선 처리지원 사업 추진상황(반기)

(단위 : 척, 천원)

구 분	계 획		(반기)집 행		누 계		비 고
	척 수	금 액	척 수	금 액	척 수	금 액	
00 시·군							

[별지 제3호]

어선 폐선 처리지원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1. 시 군 명 :

2.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3. 사업추진실적

○ 사업 추진실적 상세 기재

○

○

4. 기타사항

50 다목적인양기 설치

▶ 이 내역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김상국 주무관 정성욱	054-880-7710 054-880-7730 054-880-7731

1. 사업목적

○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 어획물 인양 등에 활용하여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생활기반계정사업의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3조(예산의 이월),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3. 시·군별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시 군 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5대	635,000	508,000	127,000	-	
포 항 시	2	240,000	192,000	48,000	-	
경 주 시	1	160,000	128,000	32,000	-	
영 덕 군	1	75,000	60,000	15,000	-	
울 진 군	1	160,000	128,000	32,000		

4. 집행주체 : 시장, 군수로 한다.

5. 지원대상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및 소형어선이 이용하는 항·포구

6.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지원조건 : 도비 80%, 시군비 20%

○ 지원내용 : 다목적인양기(소형어선인양기)시설 설치(전기인입 등 부대시설 포함) 및 정비(보수·보강)

○ 지원제외 대상사업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어업기반정비사업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구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유되는 사업은 사업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등

7.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시군은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사업타당성, 시급성, 타법·타 사업 관련성,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 시군은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및 심의회 등을 거쳐 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구에서 승인하되, 도가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도가 승인함

* 중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 · 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비율 이상의 변경 등

8.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보조금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확정(취소, 변경포함)은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9.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 및 시군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2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준용하며,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을 통해 따로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동 규정 제52조2항 [별표7]의 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 시군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리규정 등에 따라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하여 선량하게 유지관리토록 함

○ 시군은 관리감독자로서 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하여도 동 규정에 따름

10. 행정사항

○ 시군은 분기별 추진상황을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도에 제출(익월 10일까지)

○ 시군은 사업정산보고를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에 제출

○ 동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주체가 본 사업의 근본 취지를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다목적인양기설치사업 추진실적 보고(◯분기)

1. 추진실적

사업명	주요사업내용	일정		사업비 집행률(%)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대책 및 건의사항
		착공일	준공 예정일	계획	실적		
00사업							

2.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000년 계획			집행실적(합계)			당분기(◯분기)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00사업									

51 지방어항 시설(시·군)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 당 기 관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전 화 번 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김상국 주무관 최문현	054-880-7710 054-880-7730 054-880-7734

1. 사업목적

○ 어선안전수용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 어획물 양육·유통 원활 도모로 어업인 소득증대

○ 어촌 정주생활 및 지역사회발전 기반조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어선의 안전성을 우선 고려하여 개발 및 보수·보강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어항에 우선 투자

○ 수산세력 및 이용도가 높은 항 우선개발

3.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 제49조(사업비 지원)

4.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투자대상 어항

– 어촌·어항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어항으로,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개발계획수립 협의 및 고시된 어항

○ 사업대상 시설 : 방파제, 물양장 등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가목에 의한 기본시설

○ 지원조건 : 도비 50%, 시·군비 50%

※ 울릉군(도서지역) : 도비 70%, 군비 30%

○ 사업시행체계

시·군	→	도	→	시·군
• 보조금 예산신청		• 예산확보 • 예산배정, 통보		• 사업계획 수립 및 협의 • 공사시행

나. 시·군별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6	3,000,000	1,500,000	1,500,000	
포 항 시	3	900,000	450,000	450,000	
경 주 시	2	1,400,000	700,000	700,000	
영 덕 군	0	0	0	0	
울 진 군	1	700,000	350,000	350,000	
울 릉 군	0	0	0	0	

< 추진체계 >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도 : 해양수산과

○ 시·군 : 수산정책과(포항시), 해양수산과(경주시, 영덕·울진·울릉군)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 어선의 안전성을 우선 고려하여 개발 및 보수·보강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어항에 우선 투자

※ 권고사항 : 가급적 완공위주 집중투자

–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가급적 당해 예산연도 내 집행

○ 사업계획 협의

– 항별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비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조금의 교부신청

– 시장·군수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이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교부결정

–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확인하고 적정할 경우 교부결정 통지

○ 사업비 송금요청 및 송금

– 교부 결정된 보조금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집행일정을 감안 사업비를 송금요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확보된 자금 내에서 송금

○ 조사·설계

– 자료조사 : 설계자는 설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8조에 의한 현황, 재료, 지세조사 및 측량, 기타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단, 이미 조사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설계도서 작성

•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조달청가격정보지 또는 기획재정부 등록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물가 조사가격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조사된 자료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내용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여건과 변경된 관련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와 협의 후 당해 구조물의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적정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 및 심사자 : 사업계획서 작성, 설계도서 작성 및 심사 등은 아래 사업순기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완료 후 도지사 심사를 받아야 하며, 단, 공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사업집행순기

- 사업계획 수립 및 협의 : 1/4분기
- 보조금교부결정 : 1/4분기
- 설계서 작성 및 심사 : 2/4분기
- 공사착공 및 시행 : 2/4 ~ 4/4분기

○ 사업관리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사집행 및 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건설공사 시행·관리 규정」 및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라.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공사 착공 후 선급금 지급 및 기성금·준공금 적기 지불 등 사업비 조기 집행을 위해 적의 조치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됨.

<행정사항>

가. 보 고

○ 시장·군수는 다음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 고 명	보고 기한	보고 서식
투자사업 추진상황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업종료, 회계연도 종료 시	[별지 제2호 서식]

나. 기 타

○ 시장·군수는 이 지침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투자사업 추진상황보고(/ 분기)

□ 사 업 명 :

(단위 : 천원)

시군별	어항명	사업내용	예산액(금회계획)			집행실적(누계)						일정		당해 연도 사업공정(%)			부진원인 및 문제점	대책 및 건의사항
						원인행위기준			최종집행기관 자금 지출기준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착공일	준공일(예정일)	계획	실적	대비		
합계																		

주1』 예산집행실적의 원인행위기준은 계약체결 금액을 말하고, 최종집행기관 자금지출기준은 최종발주기관에서 자금을 지출(선금, 계약금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주2』 부진사업(계획대비 90% 미만)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해결방안을 기술한다.

주3』 전년도 이월사업 또한 사업명(사업연도)을 분리 표기하여 작성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1. 작성년월일 :

2. 시·군　명 :

(단위 : 원)

사업명	어항명	사업 내용	예산액(금회계획)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일정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착공일	준공일(예정일)	
	합 계																

주1』 전년도 이월사업 또한 사업명(사업연도)을 분리 표기하여 작성하여야 함.

52 소규모어항 시설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 당 기 관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전 화 번 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김상국 주무관 최문현	054-880-7710 054-880-7730 054-880-7734

1. 사업목적

○ 어선안전수용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 어획물 양육·유통 원활 도모로 어업인 소득증대

○ 어촌 정주생활 및 지역사회발전 기반조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어선의 안전성을 우선 고려하여 개발 및 보수·보강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어항에 우선 투자

○ 수산세력 및 이용도가 높은 항 우선개발

3.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 제49조(사업비 지원)

4.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투자대상어항

– 어촌·어항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으로,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개발계획수립 협의 및 고시가 완료된 어항

- 기타 소규모어항

○ 사업대상시설 : 방파제, 물양장 등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가목에 의한 기본시설

○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 울릉군(도서지역) : 도비 50%, 군비 50%

○ 사업시행체계

시·군	→	도	→	시·군
• 보조금 예산신청		• 예산확보 • 예산배정, 통보		• 사업계획 수립 및 협의 • 공사시행

나. 시·군별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18	5,170,000	1,550,000	3,620,000	
포 항 시	12	2,570,000	770,000	1,800,000	
경 주 시	1	300,000	90,000	210,000	
영 덕 군	3	1,500,000	450,000	1,050,000	
울 진 군	2	800,000	240,000	560,000	
울 릉 군	-	-	-	-	

< 추진체계 >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도 : 해양수산과

○ 시·군 : 수산정책과(포항시), 해양수산과(경주시, 영덕·울진·울릉군)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 어선의 안전성을 우선 고려하여 개발 및 보수·보강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어항에 우선 투자

※ 권고사항 : 가급적 완공위주 집중투자

-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가급적 당해 예산연도 내 집행

○ 사업계획 협의

- 소규모항의 항별 사업비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조금의 교부신청

- 시장·군수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이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교부결정

-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확인하고 적정할 경우 교부결정 통지

○ 사업비 송금요청 및 송금

- 교부 결정된 보조금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집행일정을 감안 사업비 송금요청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확보된 자금 내에서 송금

○ 조사·설계

- 자료조사 : 설계자는 설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제8조에 의한 현황, 재료, 지세조사 및 측량, 기타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단, 이미 조사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설계도서 작성

  •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조달청가격정보지 또는 기획재정부 등록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물가 조사가격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조사된 자료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내용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여건과 변경된 관련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구조물의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한 적정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순기

- 사업계획 수립 및 협의 : 1/4분기
- 설계서 작성 및 심사 : 2/4분기
- 공사착공 및 시행 : 2/4 ~ 4/4분기

○ 사업관리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사집행 및 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건설공사 시행·관리 규정」 및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라.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공사 착공 후 선급금 지급 및 기성금·준공금 적기 지불 등 사업비 조기 집행을 위해 적의 조치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됨.

< 행정사항 >

가. 보 고

○ 시장·군수는 다음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 고 명	보고 기한	보고 서식
투자사업 추진상황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업종료, 회계연도 종료 시	[별지 제2호 서식]

나. 기 타

○ 시장·군수는 이 지침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투자사업 추진상황보고(/ 분기)

□ 사 업 명 :

(단위 : 천원)

시군별	어항명	사업 내용	예 산 액 (금회계획)			집 행 실 적(누 계)						일 정		당해 연도 사업공정 (%)			부진원인 및 문제점	대책 및 건의사항
						원인행위기준			최종집행기관 자금 지출기준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착공일	준공일 (예정일)	계획	실적	대비		
합계																		

주1』 예산집행실적의 원인행위기준은 계약체결 금액을 말하고, 최종집행기관 자금지출기준은 최종발주기관에서 자금을 지출(선금, 계약금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주2』 부진사업(계획대비 90% 미만)에 대하여는 근복적인 부진원인과 해결방안을 기술한다.

주3』 전년도 이월사업 또한 사업명(사업연도)을 분리 표기하여 작성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1. 작성년월일 :

2. 시·군　명 :

(단위 : 원)

사업명	어항명	사업 내용	예 산 액 (금회계획)			집 행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일 정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착공일	준공일 (예정일)	
	합 계																

주1』 전년도 이월사업 또한 사업명(사업연도)을 분리 표기하여 작성하여야 함.

53 지방어항 안전시설 및 유지관리 지원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수산과	과 장 문성준 사무관 김상국 주무관 최문현	054-880-7710 054-880-7730 054-880-7734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어항 내 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로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보호

○ 어항의 준설 등 유지보수로 어업인 어업활동 편의 및 소득증대 기여

2.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 제49조(사업비 지원)

3. 시·군별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5	670,000	200,000	470,000	
포 항 시	1	300,000	89,000	211,000	
경 주 시	1	100,000	30,000	70,000	
영 덕 군	1	100,000	30,000	70,000	
울 진 군	1	100,000	30,000	70,000	
울 릉 군	1	70,000	21,000	49,000	

Ⅱ. 사업시행

1.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2. 지원 대상 및 용도

○ 지방어항 유지관리사업(안전시설·장비, 준설, 어항시설 보수 등)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가 필요 시 어촌정주어항·마을공동어항 등 소규모어항에도 사용할 수 있음.

※ 어항시설 보수 : 물양장·비가림막 보수 및 기타 어항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원형태

○ 어항안전시설 및 유지관리 : 도비 30%, 시군비 70%

4. 사업 시행

○ 사업계획 수립

– 안전시설 설치 등은 사업시행에 따른 수혜도, 안전사고 발생, 주민 건의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조사·설계

– 자료조사 : 설계자는 설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현황, 재료, 지세조사 및 측량, 기타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단, 이미 조사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설 계

•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조달청가격정보지 또는 기획재정부 등록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물가 조사가격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구조물의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한 적정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

– 공사집행 및 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건설공사 시행·관리 규정」 및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보 고

– 시장·군수는 다음과 같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 고 명	보고 기한	보고 서식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	사업종료, 회계연도 종료 시	별지 2호 및 별지 3호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시·군에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실적을 평가

○ 예산집행실적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 차등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군

○ 시장·군수는 안전시설(난간대, 방파제 차량통제장치, 안전표지판, 인명구조시설, 방범용 CCTV 등) 또는 어항유지관리(항내준설, 노후 정박시설 교체, 어항주변청소 등)사업계획을 수립

2. 예산 및 자금배정단계

시·군

○ 시장·군수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이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도

○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확인하고 적정할 경우 교부결정 통지

3.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상황 점검 》

도

○ 도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시설의 적정여부,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 조기추진 및 견실시공 도모

《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

사업비 정산(시·군)

○ 당해 연도 정산보고 : 당해 연도에 도비지원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익년도 2월말 까지 교부신청 서식에 의하여 정산보고(시·군 → 도)

○ 보조된 사업비는 교부조건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사후관리 책임자(시·군)

○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해 시설관리자로서의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 군수는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4. 성과측정단계

○ 시설의 수혜로 항내 안전사고 예방, 어업인 만족도 등을 측정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수혜자의 수, 안전사고 발생, 주민건의 등 건수 대비 현지여건과 사업효과를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비 배정 시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 ○ 사업 계획서

□ 사업개요

사 업 명	○ ○ 사업
위 치	시·군 읍·면 리(항)
사 업 비	백만원(도비 , 시·군비)
사업개요	난간 L = ○ ○m
기대효과	어선 척 안전수용

□ 위 치 도

□ 현장전경

[별지 제2호 서식]

어항 안전시설 및 유지관리사업 정산서

1. 보조금 정산 신청 현황

(단위 : 원)

보 조 사업자	교부결정 및 수령액			집행액			잔액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2.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내용	

3. 현장사진

사진		사진	
공사전		공사후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1. 작성년월일 :
2. 시·군　명 :

(단위 : 원)

사업명	장소	사업 내용	예 산 액 (금회계획)			집 행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일 정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착공일	준공일 (예정일)	
	합 계																

주1』 전년도 이월사업 또한 사업명(사업연도)을 분리 표기하여 작성하여야 함.

독도해양정책과

01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독도해양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 화 번 호
경상북도	독도해양정책과	과 장 김명심 사무관 한정수 주무관 김현아	054-880-7750 054-880-7761 054-880-7764

1. 목 적

○ 바닷가의 해양쓰레기를 수거를 통한 연안환경 보전

2. 추진방침

○ 풍랑, 태풍 및 행락철 연안 방문객 증가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 깨끗한 경북 이미지를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3.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4. 사업추진계획

가. 집행주체 : 포항 · 경주 시장, 울릉군수

나. 지원조건 : 도비 30%, 시비 70%

다. 지원내용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라. 사업대상 : 포항시, 경주시, 울릉군

5. 2024년 시군별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550,000	165,000	385,000		
포항시	350,000	105,000	245,000		
경주시	150,000	45,000	105,000		
울릉군	50,000	15,000	35,000		

6.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 정산

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변경),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 관련 법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함.

나. 시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장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7. 사업비 집행

가. 사업비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 관련 법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시행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사업 시행]

- ㅇ 사업집행주체는 바닷가 등의 수중침적·부유쓰레기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의 폐기물해양수거업체 또는 어장관리법 제17조에 의거 등록한 어장정화·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에 의거 선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ㅇ 사업집행주체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군, 읍면동에서 직접 집행(인력고용 등)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적격업체와의 도급계약, 사무위탁, 용역 계약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 ㅇ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 ㅇ 사업집행주체는 조류 등 해양의 특수성에 의하여 수거대상 쓰레기가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발생시 집행주체가 지역별 사업비를 조정, 집행하되 실적보고 시 동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ㅇ 해양쓰레기 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처리는 항만(어항 포함)의 운영 및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비 집행기준]

○ 직접 집행하는 경우 : 인건비, 보험료, 수거용품 구입비, 장비임차료, 위탁 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등

- 위탁수수료는 수거된 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위탁을 말함

○ 도급 집행하는 경우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사무위탁 집행하는 경우 : 위탁수수료 등

○ 용역계약 집행하는 경우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8. 사후관리

가.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행정사항

가. 시장 군수는 이 지침의 기본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에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시장은 사업추진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계획서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위 치	
사 업 비	백만원(도비 , 시군비)
사 업 량	
사업내용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2025년 이후	비 고
계					
도 비					
시 군 비					

□ 추진일정표

추 진 내 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해양쓰레기 수거												

□ 기대효과

○

[별지 제2호 서식]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완료 보고서

1. 사업 개요

가. 위　　치 :

나. 사업내용 :

다. 수 거 량 :

2.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원)

보 조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도 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3. 사업 세부 집행내역

월 별	수거량(톤)	금 액(원)	내 용	비 고

4. 사진 대지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1. 작 성 년 월 일 :
2. 지 자 체 명 :
3. 사 업 명 :
4. 착수·완료일 :

(단위 : 원)

사업 위치	사업 내용	예 산 액 (금회계획)			집 행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이자발생액 (도비)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주1』 전년도 이월사업 또한 사업명(사업연도)을 분리 표기하여 작성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추진상황(　/　분기)

(단위 : 톤, 천원)

월 별	집 행				집행누계				집행잔액			비 고
	수거량	금 액			수거량	금 액			금 액			
		계	도 비	시 비		계	도 비	시 비	계	도 비	시 비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2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독도해양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 화 번 호
경상북도	독도해양정책과	과 장 김명심 사무관 한정수 주무관 김현아	054-880-7750 054-880-7761 054-880-7764

1. 목 적

○ 어업인이 조업활동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항포구로 가져왔을 때 이를 일정 금액으로 수매하여 해양 재투기를 방지하고 해양 정화 비용 절감 도모

2. 추진방침

○ 어업인에 대한 해양환경 보전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해양환경 보호 의식 제고

3.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사업)

4. 2024년 시군별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900,000	450,000	450,000		
포항시	200,000	100,000	100,000		
경주시	200,000	100,000	100,000		
영덕군	200,000	100,000	100,000		
울진군	300,000	150,000	150,000		

5.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어업인이 조업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의 수매, 처리

○ 지원대상 : 보조금사업 신청 지방자치단체

6.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처리에 드는 비용

– 수매비, 처리수수료,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7.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도비 50%, 시·군비 50%

○ 지원한도액 : 당해 연도 지자체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8. 사업추진 계획

가. 사업 계획의 수립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 수요조사, 사업비 배분기준 및 집행계획, 사업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 : 수협장(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 사업집행주체와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사업집행주체는 지역 여건상 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협에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수협장)는 현장종사자를 지정하고 현장종사자로 하여금 [별표 제1호]에 따른 현장종사자 지정 및 업무수행요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다. 사업비의 집행기준

○ 수매대상

– 수산업법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한 어선(강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해역에서는 내수면 어업허가·신고 받은 어선을 포함한다)이 해상에서 조업 중 발생 하거나 인양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통발어구, 폐스티로폼, 기타 해양폐기물 등

– 다만, 조업중 인양된 어패류 및 오니(뻘), 어선에서 발생한 생활·음식 쓰레기, 와이어로프, 기관수리품 등은 제외한다.

○ 매입대금 지급기준

구 분	폐어구·폐로프	통발어구	폐스티로폼 등
산정기준	마대당	개수당	kg당
수매대금	· 40Ｌ – 4천원 · 100Ｌ – 10천원 · 200Ｌ – 20천원	· 근해장어통발 150원 · 연안(근해)통발 250원	250원
계약방법	마대 수량	통발 수량	중량 계근

* 단, 위탁사업자인 수협과 수혜대상인 어업인의 의견에 따라 폐어구·폐로프 마대의 경우 용량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수매대금은 100원/L로 동일)

○ 지급방법

– 쓰레기 수매시 해당 어업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어선 입출항 확인대장을 작성 기재하고 서명토록 함

– 수매대금은 어선입출항 확인대장과 수협의 어선입출항 확인서류를 대조한 후 어업인 통장으로 입금

○ 종사자 인건비 및 운반장비

구 분	수협전담요원	작업인력	추가인력
인원(명)	1	1	2인이내
인건비(만원)	50/월	201(월/인)	7(일/인)
운반장비	트럭, 손수레 등		

– **단, 민간인력 인건비 지급 시 당해년도 최저임금을 우선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대 20%까지 증액하여 지급 가능**

* 2024년 최저임금기준 시급 9,860원 / 일급 78,880원 / 월급 2,060,740원

* 최대 지급액(20%증액) 시급 11,830원/ 일급 94,660원 / 월급 2,472,890원

– 운반장비 비용 등 집행기준 : 유류비 등 운반장비 직접경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집행가능

라. 수매 쓰레기의 처리

○ 사업시행자(수협)가 수매한 해양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한 허가·신고 등을 득한 업체에 위탁(재활용 업체 우선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 집하장의 설치 및 운영・관리

○ 해양쓰레기집하장은 지자체에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하장의 경미한 보수·보강은 사업비(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9. 보조사업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반환기한을 경과한 기간 이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함.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 도와 협의하여 우리 도로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함.

-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함.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10.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1.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군이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제1호]

현장종사자 지정 및 업무수행요령

가. 수매관련 제반사항 관장 및 감독 : 수협장

나. 종사자 지명

ㅇ 수협장은 책임자(수매사업소장) 및 필요시 현장 종사자 등 관계자 지명·역할 부여 및 복무감독

ㅇ 관계자는 사업진행사항을 수협장에게 보고

다. 현장종사자 업무수행요령

ㅇ 수질오염, 악취, 소음 등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ㅇ 상부지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 및 결과보고

ㅇ 분쟁 또는 민원 발생시, 장애요인 발생으로 사업수행 지연 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보고

ㅇ 인계인수 시 전·후임자의 연서로 인수인계서를 작성보고

ㅇ 임무가 완료된 때에는 관련서류 일체를 수협에 반납 제출

ㅇ 당해 작업과 관련된 지침서 등 관계서류를 숙지

라. 유의사항

ㅇ 임의로 수매조건, 수매대상, 수매금지쓰레기 등 지침과 상이한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음

ㅇ 사업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수협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

마. 수매금지 쓰레기에 대한 조치

ㅇ 수매금지쓰레기 투입 및 분리수거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침과 상이한 경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협장에게 보고하고 수매금지 조치

[별지 제1호 서식]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사무위탁계약서

2024. 1.

“갑”　　○○○시장·군수　　(인)

“을”　　○○○수협장　　(인)

사무위탁계약서

□ 건　　명 :

□ 계약금액 : 금　　원정(₩　　)(부가세 포함)

○○시장·군수(이하“갑”이라 한다)와 ○○수협장(이하“을”이라 한다)은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데 있어 수협에 사업을 위탁시행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무위탁 내용 및 승인) ① 사무 위탁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업중 인양된 폐어망·폐어구·폐스티로폼 등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2. 기타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필요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시행시에는 “갑”의 승인과 감독하에 실시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4년　월　일까지 한다.

다만,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을”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집행계획 수립) “을”은 제2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착수 전에 집행일정, 사업내용,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등의 조정) ①제2조제1항각호의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업내용을 달리 할 경우에는 “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물량 등의 변동으로 전체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요청하며, “갑”은 경상북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업무의 검사와 감독)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량 확인 등) ①수매한 물량은 “을”이 작성한 수매대장·계근증명서 및 처리증명서로 확인한다.

②수매된 해양쓰레기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적재해 두는 경우에는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부담) ①사업수행 중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된 때 “갑”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갑”에게 보고하고 가능한 모든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9조(배상책임) ①사업수행 중 발생한 “을”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을”의 구성원(수협직원) 및 피고용인(수협에서 채용한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및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을”이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귀속) 사업수행을 위하여 “갑”의 사업비로 취득하였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유·무형의 재산은 “갑”의 소유로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물품으로 “갑”의 관리가 곤란한 소모성물품은 제외한다.

제11조(공정보고 등) “을”은 사업추진실적(월별)에 대한 공정보고서를 별도 서식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사업 완료시에는 15일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12조(계약해약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할 때
2. “갑”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할 때
3. 기타 사정으로 “갑”, “을”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
4.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5. 계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제13조(해약 등에 따른 정산) “을”은 이 계약이 해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갑”이 “을”에게 지급한 예산에 대하여 지출증빙 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경리구분) “을”은 본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지급) ①“갑”은 “을”이 청구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의 개산급으로 “을”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을”이 제1항의 사업비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갑”이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자료 보존) “을”은 사업에 관계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과업수행 촬영사진 등을 유지·보관하여야 하며, “갑”의 인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규칙 및 정산) ① 이 계약에 의한 회계는 예산회계 관계 법령, 기타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다.

②“을”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서를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반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해석의 결정) 본 계약의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써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갑”, “을”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며, 다만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경상북도의 결정에 의한다.

제19조(기타사항) 전 사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갑”·“을” 쌍방이 협의·결정한다.

제20조(계약서)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각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갑” ○○시장·군수 (인)

“을” ○○수협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어선입·출항 확인대장

ㅇ 확인일자 : 2024년 월 일

출항일	조업구역	수 량 (매수)	수 령 자				비 고
			선 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40ℓ 개 100ℓ 개 200ℓ 개 폐스티로폼 등 kg 근해장어통발 개 연안(근해)통발 개					
		40ℓ 개 100ℓ 개 200ℓ 개 폐스티로폼 등 kg 근해장어통발 개 연안(근해)통발 개					
		40ℓ 개 100ℓ 개 200ℓ 개 폐스티로폼 등 kg 근해장어통발 개 연안(근해)통발 개					
		40ℓ 개 100ℓ 개 200ℓ 개 폐스티로폼 등 kg 근해장어통발 개 연안(근해)통발 개					
		40ℓ 개 100ℓ 개 200ℓ 개 폐스티로폼 등 kg 근해장어통발 개 연안(근해)통발 개					

[별지 제3호 서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시·군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물량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		

해양레저관광과

01 어촌 체험마을 육성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레저관광과	과 장 김도순 사무관 박원상 주무관 김현재	054-880-7770 054-880-7791 054-880-7793

1. 목 적

가. 어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으로 어촌마을 체험객 증가

나. 어촌체험마을 육성으로 어촌 유휴노동력의 고용기회 확대와 어업 외 소득증대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어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체험객 유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보강 및 물품 구입 지원

3. 근거법령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도농교류법)제6조

4. 2024년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3개 시·군	6	137,500	33,000	77,000	27,500	
포 항 시	1	23,000	5,500	12,900	4,600	
경 주 시	1	23,000	5,500	12,900	4,600	
울 진 군	4	91,500	22,000	51,200	18,300	

5.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지구 :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다. 사업내용 : 어촌체험마을 운영 및 체험객 유치를 위한 시설 보강, 체험장 및 안내센터 정비, 입간판 설치, 체험도구·장비·도구 구입, 홍보물 제작, 체험행사 등 체험마을 육성과 관련된 사업

라. 지원제외사업

(1) 체험마을육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사업

(예)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마을 환경정비사업 등

(2) 체험마을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지원

(예) 전기료, 전화료, 유류대, 주변 또는 숙박시설 청소 인건비 등

단, 숙박시설 방역 및 청결을 위한 소모성 경비는 총 지원금의 20%이내 사용가능 (방역용품 및 침구류 외피구입)

마. 지원조건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6. 사업시행

가. 사업장소 : 어촌체험마을

나. 시행방법 : 시장·군수는 어촌체험마을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조사한 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험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한다.

다. 시행절차

(1) 마을에서 시행

- 예산배정 : 도 → 시·군 → 마을
- 사업시행 : 마을(마을 회의록 작성)
- 정산보고 : 마을 → 시·군 → 도

(2) 시·군에서 시행 : 마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군에서 직접 시행

7. 보조금 교부결정

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사업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비라 함은 실시설계 용역비, 시설비, 재료비, 물품구입비, 행사비, 사후관리비 등 체험마을 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나. 사업집행 주체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 등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에 따라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등을 작성한다.

다. 사업비 집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과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한다.

9. 사후관리

가. 기간 경과에 따라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업지구에 대하여 시·군비를 확보하여 보수·보강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는 이 지침의 기본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0. 행정사항

가. 보고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별지 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정산서를 제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1. 작성년월일 :

2. 시·군 명 :

(단위 : 원)

사업명	장소	사업 내용	예산액 (금회계획)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일정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착공일	준공일 (예정일)	
	합 계																				

주1』 전년도 이월사업 또한 사업명(사업연도)을 분리 표기하여 작성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어촌체험마을 육성사업 정산서

1. 보조금 정산 신청 현황

(단위 : 원)

보 조 사업자	교부결정 및 수령액			집 행 액			잔 액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2.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내용	

3. 현장사진

사진		사진	
공사전		공사후	

02 어촌 전통문화 계승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상 북 도	해양레저관광과	과 장 김도순 사무관 박원상 주무관 김현재	054-880-7770 054-880-7791 054-880-7793

1. 목 적

가. 어촌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무형문화제(앉은 줄다리기, 별신굿, 풍어제 등) 지원으로 어촌의 안전과 풍어 기원

2. 추진방향

가. 동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오는 전설 및 무형문화의 지속적 보존 대책의 일환으로 무형문화 계승 발전방안 모색

3. 근거법령

가.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 제6조

4. 2024년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4개 시·군	17	125,000	30,000	70,000	25,000	
포 항 시	7	41,000	9,840	22,960	8,200	
경 주 시	2	20,000	4,800	11,200	4,000	
영 덕 군	4	32,000	7,680	17,920	6,400	
울 진 군	4	32,000	7,680	17,920	6,400	

5.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지구 :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다. 사업내용 : 앉은 줄다리기 및 지역 문화행사(풍어제, 별신굿 등) 등

라. 지원조건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6. 사업시행

가. 사업장소 : 시·군, 어촌계 및 지구별 수협

나. 시행방법 : 시장·군수는 어촌 전통문화 개최 실태를 조사한 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어촌 전통문화 개최 지역에 사업을 지원한다. 수협·어촌계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 시행절차

(1) 수협·어촌계에서 시행

- 예산배정 : 도 → 시·군 → 수협·어촌계
- 사업시행 : 수협·어촌계(어촌계 회의록 작성)
- 정산보고 : 수협·어촌계 → 시·군 → 도

(2) 수협, 시·군에서 시행 : 어촌계 의견을 반영하여 시·군에서 직접 시행

※ 시장·군수는 위 시행방법 외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시행할 수 있음.

7. 보조금 교부결정

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사업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이 지침에 의한 어촌 전통문화 계승지원 사업은 지역적인 어촌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나. 지원율에 의한 지원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군비와 자부담을 추가할 수 있다.

다.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군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9. 사업의 관리

가.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0. 행정사항

가. 보고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별지 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정산서를 제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1. 작성년월일 :

2. 시·군 명 :

(단위 : 원)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 내용	예산액 (금회계획)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일정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착공일	준공일 (예정일)	
	합 계																

주1』 전년도 이월사업 또한 사업명(사업연도)을 분리 표기하여 작성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어촌 전통문화 계승 지원사업 정산서

1. 보조금 정산 신청 현황

(단위 : 원)

보 조 사업자	교부결정 및 수령액			집 행 액			잔 액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2.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내용	

3. 현장사진

사진	사진
행사사진	행사사진